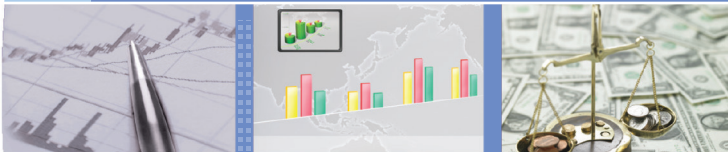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4년 제1호



2024. 7.

제1부

OECD의 “Tax Policy Reforms 2023”

I 거시 경제 동향(Macroeconomic background) / 3

II 세수 동향(Tax revenue context) / 7

III 최근 조세 정책의 변화(Tax policy reforms) / 11

1.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11
2. 법인세 및 기타 법인세	29
3.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42
4. 환경세	50
5. 재산세	60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 동향

I 북미 / 67

- 1. 미국 67
 - 가. 청정수소생산세액공제 지침(안) 발표 67
 - 나. 디지털자산 보고 관련 과도적(transitional) 지침 발표 68
 - 다. ‘간략 안내문 이니셔티브(Simple Notice Initiative)’ 진행상황 발표 69
 - 라. 에너지세액공제 신청 관련 지침 발표 70
 - 마. 2025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 발표 72
 - 바. IRA에 따라 시행한 신고지원서비스 성과 발표 74
 - 사.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규정 발표 75
 - 아. 자발적 탄소시장(VCM) 원칙 및 성명 발표 76
- 2. 캐나다 77
 - 가. 탄소 리베이트 인상 77
 - 나.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79
 - 다. 2024 회계연도 「예산시행법」 No.1 발의 80
 - 라. 「2023년 가을경제보고서시행법」에 따라 사업소득세 제정 81

II 유럽 / 83

- 1. 영국 83
 - 가. 에너지 저감형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 발표 83
 - 나. 2024년 봄 예산안 발표 84
 - 다. 시각효과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감면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86
 - 라. 필라2 추가세액 등록 관련 실무지침 발간 86

2. 아일랜드	87
가. 납기연장 조세채무 이자율 0%로 인하	87
나. 아웃바운드 지급에 대한 방어적 조치에 관한 지침 발표	88
다. 광물유류세, 천연가스세, 고체연료탄소세 인상	89
3. 스위스	90
가. 국외 원격근무자의 소득세 과세를 위한 초안 채택	90
나.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91
4. 프랑스	92
가. 녹색산업 투자 세액공제 시행	92
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제재 도입 및 국제환급지원규정 개정	93
5. 벨기에	94
가.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개정	94
6. 룩셈부르크	95
가. 임시 부가가치세율 적용 종료 발표	95
나. 「세법 개정안」 발표	96
7. 독일	98
가. 제4차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법률초안 발표	98
나. 법인세법 개정안(Growth Opportunities Bill) 의회 최종승인	99
8. 포르투갈	101
가. 단기 임대 목적 부동산 대상 특별부담금 부과 조례 마련	101
나. 2024년 법인 지방세 세율 발표	101
다. 소득세율 인하 및 신규 세금 감면 제도 도입 제안	102
9. 스웨덴	103
가. 담배 및 니코틴에 대한 세금 조정안 제안	103
10. 노르웨이	104
가. 2024년 예산 수정안 발표	104
나. 해외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공제 변경 제안	105

11. 덴마크	106
가. 2025년 경유세 인상안 발표	106
나. OECD 행정지침에 따라 「최저한세법」 개정 제안	107
다. 산업 전반에 통일된 CO ₂ 세 채택	108
12. 핀란드	109
가. 2025~2028년 재정정책 합의 및 세금 인상안 발표	109
나. 소규모 기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시행 지침 법안 국회 제출	110
다. 미술품 등의 부가가치세율 개정 등에 관한 법률에 서명	110
13. 네덜란드	111
가. 2024년 세금 변경 사항 발표	111
나. 외국인 근로자 세금혜택제도에 대한 급여세 개정 법령 발표	116
다. Box3 과세 정비 법안 개정안 및 2023년 최종 간주수익률 발표	117
라. 국가별 공개 보고(EU Public CbCR) 지침에 관한 시행령 공포	119
마. 세금인상 철회 및 이자공제 규정 완화 선언문 발표	120
14. 그리스	121
가. 기후회복세(Climate Resilience Tax) 시행	121
15. 오스트리아	123
가. 2024년 세법 개정안(Abgabenänderungsgesetz 2024) 발표	123
16. 스페인	123
가. 횡재세 연장 등 세금조치 발표	123
나. DAC7 채택	125
다.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시행 법안 승인	126
17. 이탈리아	127
가. 에너지 절약기업의 투자금액 세액공제 인상	127
나. 단순화된 물류구역(ZLS)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도입	128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130

1. 일본	130
가. 2024년 세금 개혁 법률 및 규정 공포	130
2. 중국	131
가. 중국 내 상장회사 스톡옵션 행사 관련 개인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	131
3. 홍콩	132
가. 홍콩 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거래 이익 세율 5% 제안	132
4. 싱가포르	133
가. 2024년 예산안 발표	133
5. 인도	135
가. 미납 세금 납부 면제 발표	135
나. 전기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승인	136
6. 인도네시아	137
가. 전기 자동차 판매에 대한 VAT 인센티브 확대	137
7. 뉴질랜드	138
가. OECD 이전가격 접근법 미채택 결정	138
나. 도박세, GST 및 소득세 관련 규정 일부 개정	138
다. 2024년 외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펀드 공시 면제 규정 발표	139
라. 농업 분야 배출권 거래제 참여 철회	140
마. 2024년 예산안 관련 과세 조치 왕실 승인	141
8. 호주	143
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변경	143
나. 복리후생세 행정 관련 변경사항 발표	144
다. 2024/25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145

IV 국제기구

1. OECD 148

가. 필라1 Amount A 관련 성명서 발표 및 필라2 행정지침 발간 148

나. 글로벌최저한세 및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 보고서 발간 149

다. 필라1 Amount B 보고서 발표 149

라. BEPS Action 6 제6차 상호검토 결과보고서 발표 150

마. 「필라2 통합 주석서 및 사례」 발간 151

바. 「2024 조세협력 진행보고서」 발간 152

제1부

OECD의 “Tax Policy Reforms 2023”

〈표 1-III-1〉 소득세 세율 변화	15
〈표 1-III-2〉 개인 소득 과세 기반 변화	23
〈표 1-III-3〉 개인 자본소득의 과세 기반 변화(2021, 2022년)	26
〈표 1-III-4〉 사회보장기여금 요율 개편(2021, 2022년)	28
〈표 1-III-5〉 사회보장기여금 과세 기반 개편 현황(2021, 2022년)	29
〈표 1-III-6〉 법인세율 변화(2021, 2022년)	32
〈표 1-III-7〉 법인세 과세 기반 변화	34
〈표 1-III-8〉 에너지 및 식품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변경(2022년 6~12월)	45
〈표 1-III-9〉 에너지 사용세 변경 국가	56
〈표 1-III-10〉 각국의 재산세 정책 변화	62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 동향

〈표 2-I-1〉 온실가스배출량별 청정수소생산세액공제 68

〈표 2-I-2〉 환급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에너지세액공제 내역 71

〈표 2-I-3〉 2024~2025 지역별 탄소 리베이트 78

〈표 2-II-1〉 룩셈부르크 최소 순자산세 개정안 97

〈표 2-II-2〉 2023~2024년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13

〈표 2-II-3〉 네덜란드 소규모 투자공제(kleinschaligheidsinvesteringsaftrek) 114

〈표 2-II-4〉 네덜란드 상속세 및 증여세율 115

〈표 2-II-5〉 그리스 기후회복세 부과액 122

〈표 2-II-6〉 이탈리아 에너지절약기업 세액공제율 128

〈표 2-III-1〉 부동산 변동가액을 반영한 싱가포르의 재산세 과세표준 134

〈표 2-III-2〉 뉴질랜드 개인소득세 소득 구간 변경안 142

〈표 2-III-3〉 호주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변경안 144

〈표 2-III-4〉 메디케어 부담금 완화 대상 소득 기준액 변경 146

제1부

OECD의 “Tax Policy Reforms 2023”

[그림 1-I-1] 각국의 실질 GDP 성장률	3
[그림 1-I-2] 분기별 물가상승률 변동 추이(2015~2022년)	4
[그림 1-I-3] OECD 가입국의 실업률(2019, 2022년)	5
[그림 1-I-4] 2022년 각국의 재정 수지	6
[그림 1-II-1] 소득 분류에 따른 국가별 조세부담률 변화 추이(1990~2021년)	8
[그림 1-II-2] 각국의 세입 구조(2020년)	9
[그림 1-II-3] OECD 가입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 변화 값(2020/2021)	10
[그림 1-III-1] 전체 세수 대비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세수 비중(2020)	12
[그림 1-III-2] 각국의 총세입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2000, 2015, 2020년)	31
[그림 1-III-3] 총세입 대비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인한 세입 비율	42
[그림 1-III-4] 부문별 평균 유효 탄소 가격 및 온실가스 배출량(2018~2021년)	51
[그림 1-III-5] 총세수 대비 재산세 수입 비율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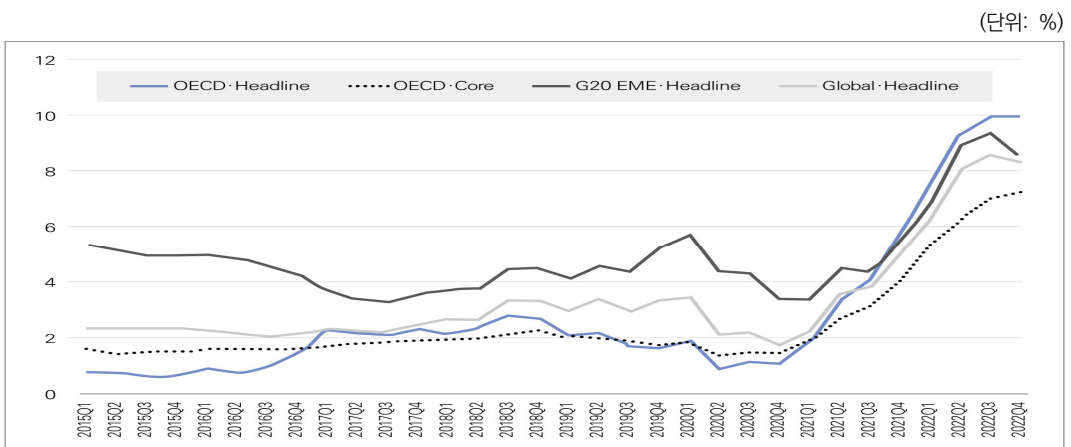
제1부

OECD의 “Tax Policy Reforms 2023”



- ▣ 2022년 4/4분기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물가지수¹⁾는 각각 9.9%와 7.2%로, 2022년에도 크게 상승하였음
 - ▶ 물가는 주로 팬데믹 관련 봉쇄 조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이미 상승세를 보여줌
 - 운송 비용과 내구재 수요 급증과 같은 일부 물가 상승 요인은 진정되고 있으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2년 유럽 도매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값에 비해 약 7배 인상됨
 - ▶ 에너지와 식료품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는 하나, 인플레이션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져 근원 물가지수 또한 크게 상승함
 - 2022년 말까지 미국과 유로 지역, 그리고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된 품목의 60% 이상의 물가상승률이 4%를 상회함
 - ▶ 급격한 물가 상승은 2022년 초부터 신속하게 개별 국가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반영됨
 - 2022년 말에는 일부 국가에서 주택 가격 및 투자 수준이 하락하고 대출 금리는 상승하였으며, 주요 국가에서 은행 신용 기준이 강화되는 등 긴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초기 징후가 나타남

[그림 1-1-2] 분기별 물가상승률 변동 추이(201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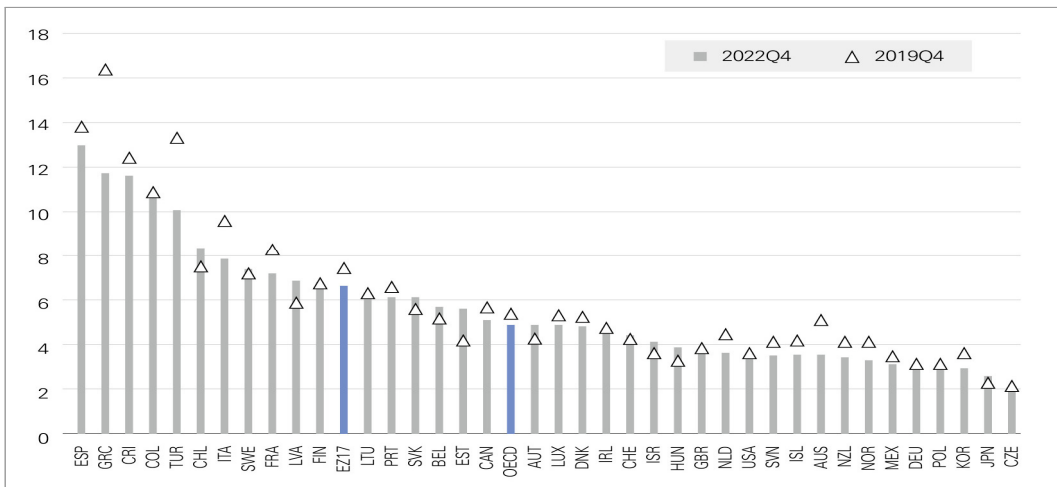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Figure 1.2. Inflation rates, p. 10

1) 식품 및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를 의미함

- ▣ 낮은 실업률과 높은 구인율, 그리고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명목임금은 증가했으나, 임금의 증가세가 물가 상승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많은 OECD 국가에서 실질임금과 가계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2022년 OECD 평균 실업률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4.9%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1인당 가계 총실질 가치분 소득은 2.3% 감소함
 - ▶ 그러나 가계가 저축률을 낮춰 소득 증가의 약세를 상쇄함으로써 가계 소비는 4.3%가 증가함

[그림 1-1-3] OECD 가입국의 실업률(2019, 2022년)

(단위: %)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Figure 1.4. Unemployment rates in OECD countries,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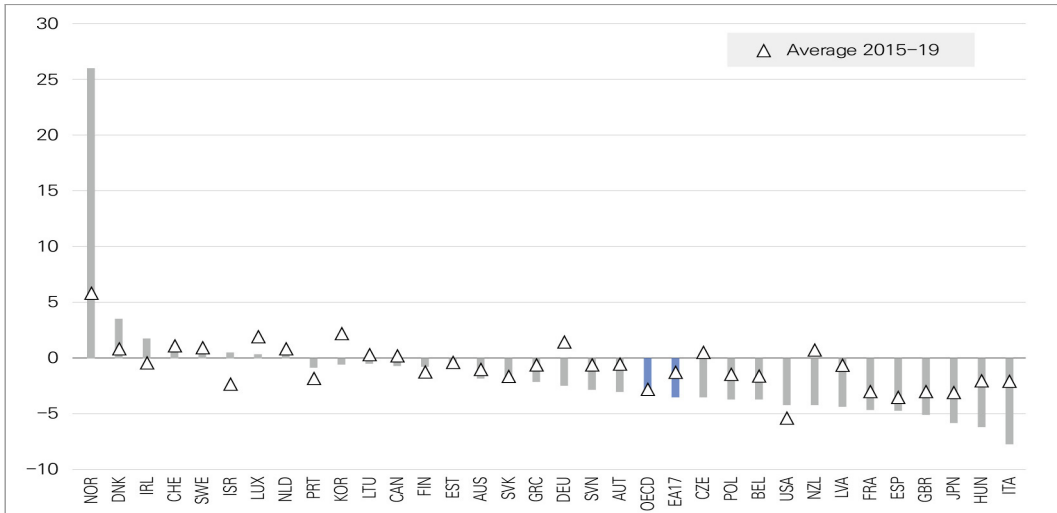
- ▣ 코로나19 및 전쟁 기간에 이어진 정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재정 대응으로 인해 정부 지출은 급증하고 세입이 감소하면서 차입금과 공공부채가 급격히 증가함
 - ▶ 2022년 다수의 국가에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고자 함
 - OECD 가입국의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관련 평균 지원액은 GDP 대비 약 0.8% 수준이었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2%를 상회하기도 함
 - ▶ 2022년 OECD 가입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평균 113.8% 수준에 달함

-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저금리 부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재정 적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팬데믹 이전에 근접한 GDP의 3.6% 수준으로 축소된 바 있음

[그림 1-1-4] 2022년 각국의 재정 수지

(단위: %)



주: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스위스의 2022년 재정수지는 추정치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Figure 1.5. Budget balance,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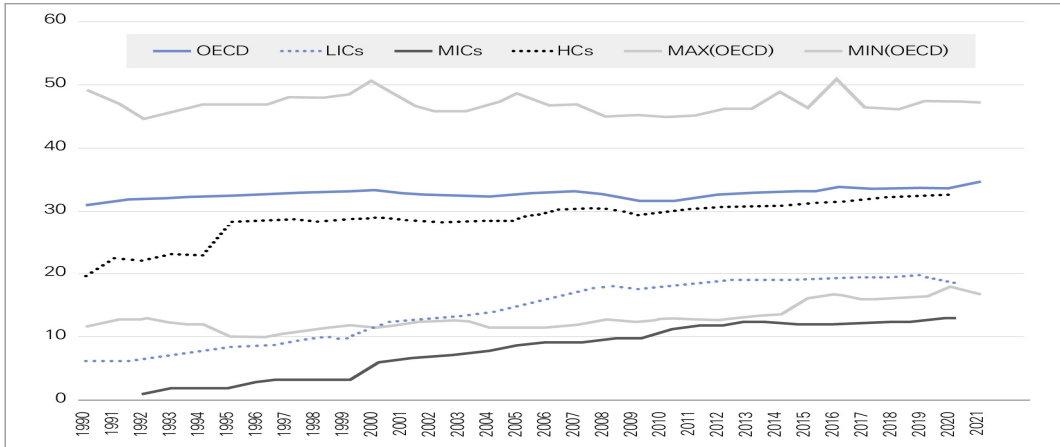
II 세수 동향(Tax revenue trends)

1 세수 동향

- ▣ 세수의 절댓값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나, GDP 대비 세수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지난 30년간 차츰 OECD 평균값에 근접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고소득 국가(HIC)는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중위소득 국가(MIC) 및 저소득 국가(LIC)의 조세부담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임
 - ▶ 2021년 OECD 가입국의 조세부담률은 2020년 대비 0.6%p 증가한 34.1%로, 199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임
 - 2021년에는 OECD 가입국 36개국 중 24개국에서 조세부담률이 증가했으며, 11개국은 감소, 1개국은 기존 비율을 유지함
 -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3.4%p 상승한 노르웨이로, 법인세 수입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됨
 - 이외에도 칠레가 2.8%p,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에서도 2%p 이상의 증가율이 관찰됨
 - 반면 헝가리는 조세부담률이 2.1%p 하락하였으며 캐나다, 아이슬란드, 멕시코, 튀르키예도 1%p 이상의 감소폭을 보여줌

[그림 1-II-1] 소득 분류에 따른 국가별 조세부담률 변화 추이(1990~2021년)

(단위: %)



주: 각 그룹에 포함된 국가 수는 연도에 따라 변화함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Figure 2.1. Trends in tax-to-GDP ratios, p. 17

2 세입 구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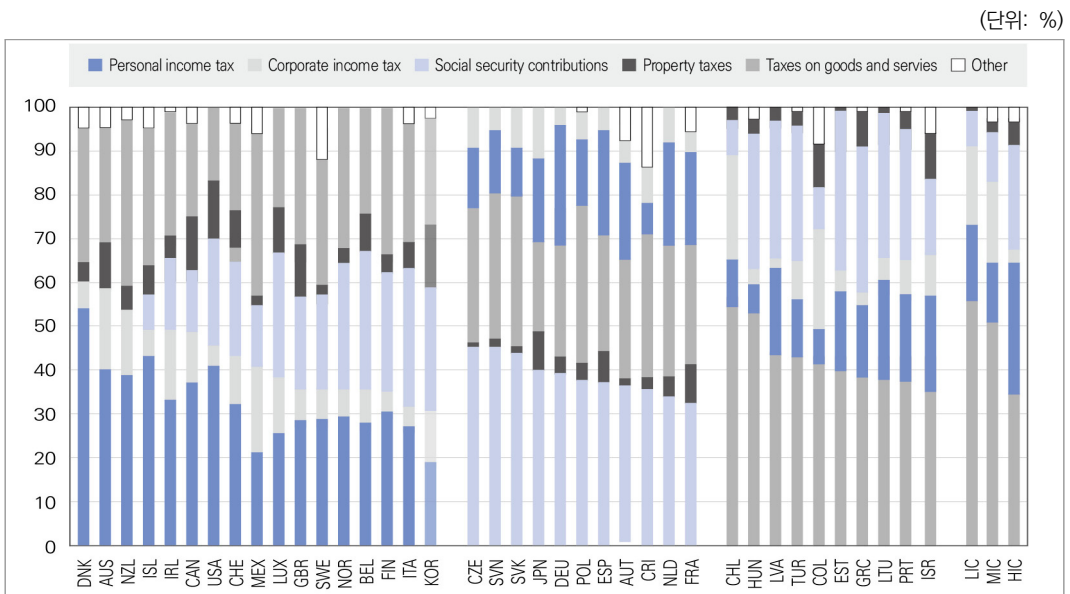
▣ OECD 가입국의 세입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 추세에 있음

- ▶ 1990년대 전체 세수의 약 27.5%를 차지했던 소득세 수입은 2020년 평균 24.1%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 이후 7.5%에서 11.2% 사이를 오가던 법인세 수입은 2020년 전체 세수의 9%를 차지함
- ▶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비중은 1990년 23%에서 2020년 26.6%로 증가하였으며,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세수는 34.5%에서 32.1%로 감소함
- ▶ 재산세와 급여세는 세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세의 경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세수의 약 5.5% 수준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 2020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17개국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는 소득세 세수가, 11개국은 사회보장기여금 세수가, 10개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는 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해당 세수에서는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 국가에 비해 더 높음

▶ 2021년 역시 이러한 세입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25개국 중 18개국에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가 부담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그림 1-11-2] 각국의 세입 구조(2020년)



주: 각 세목은 OECD 세금 분류에 따라 소득세(1100), 법인세(1200), 사회보장기여금(2000), 재산세(4000),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세금(5000)의 코드값을 사용하며, 기타 세금은 표기된 5개 세목 이외의 세수에 대해 모든 정부 수준의 세수를 합산함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Figure 2.2. Tax structures, p. 18

▣ 2021년 OECD 가입국의 주요 세목별 GDP 대비 세수 비중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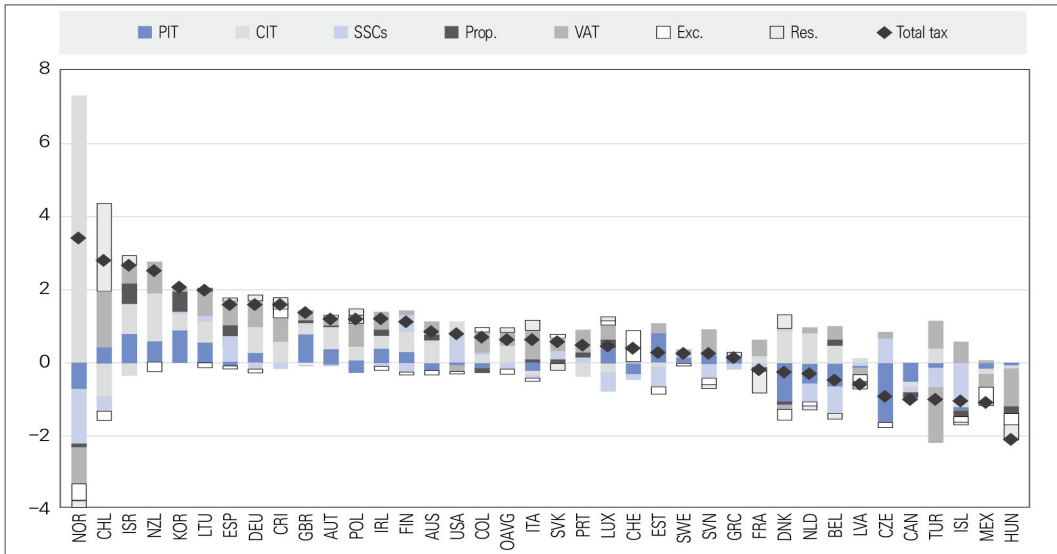
▶ 2021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중 3분의 2에서 법인세 부담률이 증가하였으며, 9개 국가는 감소하고 4개 국가는 변동이 없었음

-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전년도 이례적으로 감소했던 석유 시추와 관련한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면서 2020년 3.6% 감소에서 2021년 7.3%로 반등함

- 그 외 11개 국가는 0.5%p 이상 법인세 부담률이 증가함
- ▶ 소득세의 경우 17개국은 GDP 대비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14개국은 감소하였으며, 7개국은 변동이 없었음
- ▶ 팬데믹 2년차인 2021년에는 소비가 반등함에 따라 30개국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증가하였으며, 3개국은 감소하고 3개국은 변동이 없었음
 -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증가한 30개국 중 7개국은 증가율이 0.5%p를 초과함
- ▶ 사회보장 부담률은 8개국이 증가하고 13개국은 감소했으며, 13개국은 변동이 없었음
 - 비중이 감소한 국가 중 감소 폭이 0.5%p보다 큰 국가는 5개국이었음
- ▶ 재산세의 경우, 11개국은 GDP 대비 수입 비중이 증가했고, 13개국은 감소했으며, 13개국은 변동이 없었음
 - 변동이 있었던 24개 국가 중 0.3%p를 초과하는 변화를 보여준 국가는 단 2개 국가 임

[그림 1-II-3] OECD 가입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 변화 값(2020/2021)

(단위: %)



주: 1. 2021년 데이터는 예비 데이터이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2019/2020 변화 값을 사용함
 2. 일본과 그리스는 관련 값이 존재하지 않아 제외함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Figure 2.3. Decomposition of change in OECD tax-to-GDP ratios by tax category, p. 19

III

최근 조세 정책의 변화(Tax policy re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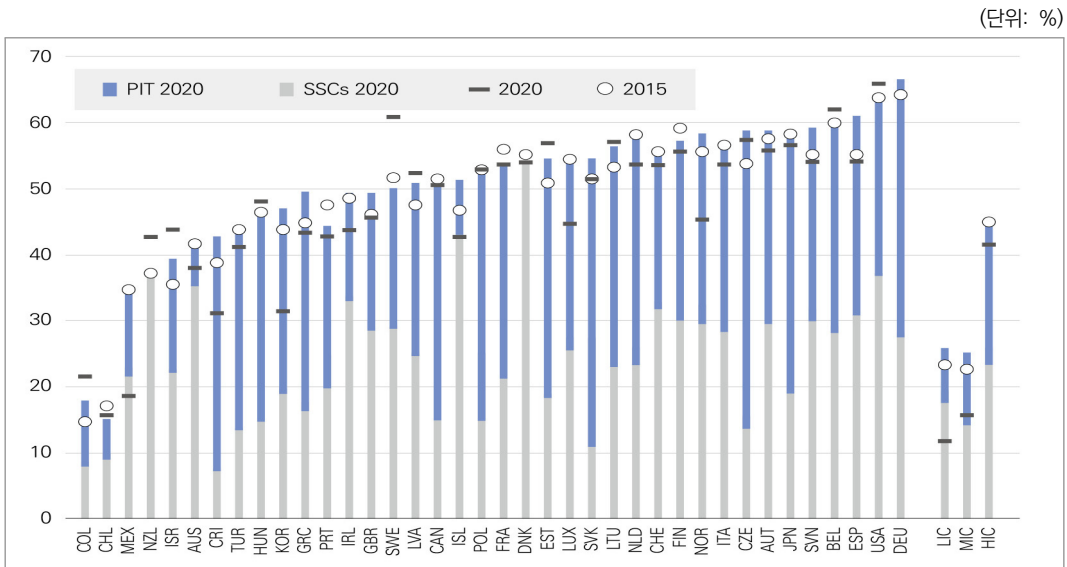
1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 2022년에는 OECD 가입국들 사이에서 조세 형평성과 경제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과 관련한 개혁들이 추진된 바 있음
 - ▶ 주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처하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자영업자 및 비법인 사업체에 대한 지원 조치는 2021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음
 - ▶ 일부 국가에서는 조세 누진성을 유지하고 재정 비용을 낮추며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취하기도 함
- ▣ 각 국가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축소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과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향의 조치가 이루어짐
 - ▶ 다수의 국가에서 생활비 인상에 대응하는 가계 경제를 지원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관련 소득공제 및 근로장려금, 자녀 세액공제 등을 확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축소하고자 함
 - ▶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투자 및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한 자영업 및 비법인 사업체의 조세 부담을 낮추는 과세표준 축소 조치가 시행되기도 함
 - ▶ 세수의 확보와 개인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소득세 최고세율과 자본소득 관련 세율을 인상하는 움직임 또한 존재하였음
 - ▶ 사회보장제도과 관련한 개혁은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조치를 강조하기도 하는 등 소득세 개혁에 비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

가 주요 세원으로서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 대부분의 OECD 가입국과 고소득 국가에서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중요한 세원을 형성하는 반면,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서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2020년 OECD 가입국의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각각 24%와 28%로, 두 세목의 합이 전체 세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 그러나 저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에서는 소득세 세수 비중이 각각 평균 17%와 14%를 차지하고,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총세수의 8%와 11%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III-1] 전체 세수 대비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세수 비중(2020년)



주: OECD 세금 분류에 따라 소득세(1100), 사회보장기여금(2000) 값을 사용하였으며, 세수는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징수한 세금의 합계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Figure 3.1. Revenues from person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IT & SSC revenues as a percentage of total tax revenues, p. 23

- ▣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가 간 보여지는 비중 차이는 여전히 큰 편임

- ▶ 2020년 기준으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호주에서는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나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는 10% 미만으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격차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균등한 수준으로 부과되기보다는, 둘 중 한쪽에 더 많이 의존하여 나타난 결과임
 - 동유럽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이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이러한 감소 추세에 앞서 2015년 이전 15년간은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바 있음
- ▣ 고소득 국가의 경우 총세수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 그 값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 2020년부터 20년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총세수 점유율의 증가세는 저소득 국가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소득 국가와는 여전히 큰 비중 차를 보이고 있음
 - 고소득 국가, 중위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의 총세수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비중은 각각 24%, 11%, 8%임
 - ▶ OECD 가입국 내에서는 38개국 중 28개국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점유율이 20% 이상이며 체코, 일본,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서는 40%에 이르고 있음

나 물가 상승과 근로소득 관련 조세 부담의 영향

- ▣ 2022년의 급격한 물가 상승은 재정 끌림(drag) 효과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 명목임금 상승률이 2022년 OECD 가입국 평균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함
 - ▶ OECD 가입국 중 23개 국가에서 소득세 납세자의 평균 과세 구간이 상향 이동하여 평균 세율 또한 높아짐

- 소득세 과세 구간 및 공제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명목 임금만 인상되면서, 적용되는 과표 구간과 세율이 상향 이동하여 구매력 손실이 야기되기도 하였음

- ▶ 다만 11개국은 면세 및 공제의 증가 또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소로 인해 평균 과세 구간이 하향 이동하기도 하였으며, 4개국은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함
- ▶ 평균 과세구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미국(2.2%p)이었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튀르키예(-2.66%p)로 보고됨

다 소득세 관련 조세 누진성 강화

- ▣ 4개의 고소득 국가와 1개의 중위소득 국가에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시행하거나 발표함
 - ▶ 슬로베니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원상복귀하여, 2023년부터 50%의 최고세율로 5%p 인상함
 - ▶ 노르웨이는 2023년 1월부터 0.1%p 인상된 17.5%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됨
 - ▶ 인도네시아는 추가 과세 구간을 도입하여 2022년부터 최소 세율을 30%에서 35%로 인상함
 - ▶ 싱가포르²⁾는 2개의 소득세 최고 과세 구간을 추가하고 최고 구간인 100만싱가포르달러(약 USD 70만)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4%로 인상함
 - 또한 두 번째로 추가된 최고 구간인 50만싱가포르달러²⁾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3%의 세율을 부과함
- ▣ 5개 고소득 국가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의 납세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비최고 구간의 소득세 세율 인하를 시행하기도 함
 - ▶ 노르웨이는 1, 2단계 과세 구간에 부과되는 세율을 0.1%p, 포르투갈은 2단계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2%p 인하함

2)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원임

- ▶ 폴란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단계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17%에서 12%로 인하하고, 중산층에 대한 감면을 폐지함
 - ▶ 네덜란드는 2023년부터 1단계 소득(고용 및 주택 소유 관련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36.93%로 0.11%p 인하함
 - ▶ 아일랜드는 6만유로³⁾ 미만이고 의료카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감면 요율 적용을 연장함
 - ▶ 모리셔스는 2단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추가하여 중산층의 과세 부담을 완화함
- ▣ 일부 국가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비최고 구간의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기도 함
- ▶ 노르웨이에서는 3단계 및 4단계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0.1%p 인상함
 - ▶ 네덜란드는 2023년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계산 시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을 반영하던 옵션을 폐지하여 세제를 단순화함
 - 또한 26.9%의 정률 과세되던 사업 소유주 소득(box 2 tax)에 대해 2024년부터 67,000유로⁴⁾ 이상의 소득에 최고 31%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2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함
 - ▶ 체코는 2023년 적격 자영업자가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정액제 납부 제도의 납부액을 인상함

〈표 1-III-1〉 소득세 세율 변화				
구분	세율 인상		세율 인하	
	2021년	2022년 이후	2021년	2022년 이후
최고 과세구간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	캐나다
비최고 과세구간	-	체코,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캐나다, 모리셔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Table 3.1. Changes to personal income tax rates, p. 24

3)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894만원임

4)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933만원임

라 지속적인 과세 기반 축소 추세

- ▣ 2022년 과세표준 관련 개혁을 시행한 국가에서 도입한 정책 중 63개는 과세 기반 축소, 11개는 과세 기반 확대와 관련됨

 - ▶ 과세 기반 축소와 관련한 정책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녀부양가정, 자영업자 및 비법인 사업체의 생활비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함
 - ▶ 소득세 부담 완화 조치는 부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및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혁신적이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 또는 자영업자와 비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 ▶ 이 밖에도 주택 경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세 구제 조치가 사용되기도 함

- ▣ 여러 국가에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기본공제액(basic allowance)을 인상하고 소득세 부담 완화 조치를 확대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공제 인상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낮아지기도 함

 - ▶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기본공제를 각각 25%, 36%, 11% 인상함
 - ▶ 독일은 2022년 1월부터 기본공제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4%p 인상안을 도입하였으며, 2023년에는 5%p, 2024년에는 6%p의 추가 인상을 법제화함
 - 또한 표준공제(standard tax allowance)를 2022년 1,200유로⁵⁾로 20% 인상하고, 2023년에는 30유로⁶⁾를 추가로 인상하는 안을 입법함
 - ▶ 에스토니아는 기본공제를 7,848유로⁷⁾로 약 31% 인상하고 14,400유로⁸⁾에서 25,200유로⁹⁾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 스페인도 기본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수정하여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 기준을 19,747유로¹⁰⁾로 약 17% 인상함

5)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6만 7천원임
 6)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만 4천원임
 7)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63만원임
 8)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34만원임
 9)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36만원임
 10)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09만원임

- ▶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인적공제액을 9만트리니다드토바고달러¹¹⁾로 7% 인상함
 - ▶ 네덜란드는 고용 세액공제 한도를 18%로 인상하고, 기본 세액공제를 근로소득(box 1)에서 자본소득(box 2, 3)까지 확대함
 - ▶ 아일랜드는 인적 세액공제를 4% 인상하였으며, 나미비아는 2023년 세액공제액을 15만나미비아달러¹²⁾로 4배 가까이 인상함
- ▣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일회성 조정 또는 자동 지수 반영 메커니즘 등을 통해 과세 기준선을 조정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과세 구간 상향 이동을 방지하기도 함
- ▶ OECD 국가 중 절반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으로 소득세를 조정하는 반면, 20개 국은 정부가 재량에 따라 조정함
 - ▶ 오스트리아는 2023년 1월부터 자동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최고 소득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기준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함
 - ▶ 독일은 2023년 과세연도에 최고 소득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기준액을 7.2% 인상하고, 연대 할증료 면제 한도 역시 3% 인상함
 - ▶ 아일랜드는 1인 소득자의 과표 구간을 9%, 소득이 하나인 종합소득 신고자의 구간을 7% 인상함
 - 이와 함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기본 사회보장기여금의 두 번째 과표 구간에 대한 상한액을 인상함
 - ▶ 대한민국은 7개 소득세 과표 구간 중 1, 2구간의 상한액을 각각 1,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높은 물가 상승에 가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소득세 관련 임시 조치를 도입한 국가 역시 존재함
- ▶ 호주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일시적 세액공제 외에도 과세 소득 12만 6,000 호주달러¹³⁾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 일회성 생활비 공제 420호주달러¹⁴⁾를 제공함

11)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71만원임

12)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16만원임

13)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332만원임

14)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만원임

- ▶ 오스트리아는 1만 8,200유로¹⁵⁾에서 2만 4,500유로¹⁶⁾ 사이의 경상 소득에 대해 해당 구간의 세금이 0으로 환원되는, 500유로¹⁷⁾의 일회성 인플레이션 세액공제를 적용함
 - 또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대 3,000유로¹⁸⁾의 인플레이션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는 임시 소득세 구제 조치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면제함
 - ▶ 독일은 2022년 과세연도에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 비법인 사업체 소유주, 연금 수급자에게 300유로¹⁹⁾의 일회성 공제를 제공함
- ▣ 다수의 국가에서 에너지 및 연료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세 정책들을 도입하였으며, 주로 통근 비용에 폭넓은 세제 혜택을 제공함
- ▶ 룩셈부르크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근로자, 자영업자,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에너지 세액공제를 도입함
 - ▶ 독일은 2022년 과세연도의 통근비 공제액을 20km 초과 주행 시 1km당 0.38유로²⁰⁾로 9% 인상했고, 스웨덴 역시 통근비 공제액을 10km당 25크로나²¹⁾로 35% 인상함
 - ▶ 오스트리아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통근자에 대한 거리별 세액공제액을 2유로²²⁾에서 8유로²³⁾로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통근자에 대한 일시 공제액도 50% 인상함
- ▣ 여러 국가에서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 관련 조치를 확대함
- ▶ 독일은 2022년 1월부터 아동 1인당 공제액을 2% 인상하였으며, 2023년에는 5%, 2024년에는 4% 인상함
 -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최대 3명의 자녀에 대한 아동 공제액 역시 인상함

15)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74만원임
 16)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74만원임
 17)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4천원임
 18)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5만원임
 19)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만 5천원임
 20)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4원임
 21)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55원임
 22)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66원임
 23)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2천원임

- ▶ 룩셈부르크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특별비용 공제액을 10% 인상하였으며, 슬로베니아는 2023년부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공제액을 7.5% 인상함
 - ▶ 포르투갈은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1인당 300유로²⁴⁾로 인상하였으며, 이스라엘은 6~12세 자녀 1인당 2,676세켈²⁵⁾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함
 - ▶ 크로아티아는 2022년 12월부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60% 인상했으며, 불가리아는 2022/2023 과세연도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제를 한시적으로 33% 인상함
 - ▶ 프랑스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에 적용되는 50% 세액공제의 최대 한도를 3,500 유로²⁶⁾로 52% 인상함
- ▣ 부양 자녀의 교육 및 훈련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관련 조치가 도입되기도 함
- ▶ 독일은 2023년 자녀 1인당 공제 가능한 교육비를 1,200유로²⁷⁾로 30% 인상함
 - ▶ 모리셔스는 2022년 5월 전업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교육비에 대한 공제액을 2배 이상 늘려 20만모리셔스루피²⁸⁾로 인상함
 - ▶ 아르헨티나는 2022년 12월부터 연간 기본공제의 40% 한도 내에서 24세 미만의 부양 자녀에 대한 교육 공제를 도입함
- ▣ 일부 국가에서는 미혼모 및 미혼부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함
- ▶ 룩셈부르크는 연소득 (6만유로²⁹⁾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최대 세액공제액을 2,505유로³⁰⁾로 67% 인상함
 - ▶ 독일은 2023년부터 한부모 가정의 공제액을 4,260유로³¹⁾로 6% 인상함
 - ▶ 스페인은 출산 세액공제 대상자를 출산 당시 실업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회보장기관에 등록된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여성으로 확대함

24)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만 5천원임

25)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6만원임

26)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19만원임

27)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8만원임

28)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7만원임

29)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906만원임

30)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2만원임

31)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32만원임

- ▣ 다음의 6개 국가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 미국은 퇴직 저축 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몇 가지 개혁안을 도입함
 - 의무 인출 연령 상향 조정, 연령 기준 도달 후 적립할 수 있는 한도 상향 및 지수화, 특정 조건에서 긴급 자금 인출 허용 등 퇴직 저축 플랜 내용을 일부 변경함
 - 또한 특정 퇴직 연금 납입금에 대한 환급 불가 세액공제를 납세자의 IRA 계좌에 예치하는 연방 매칭 기부금 제도로 전환함
 - ▶ 핀란드와 스웨덴은 노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각각 60세와 65세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공제액을 인상함
 - ▶ 아일랜드는 노인인 친척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간병인 세액공제액을 6% 인상함
 - ▶ 캐나다는 다세대 거주를 장려하고, 노인을 위한 주택 기능 개선을 위한 리노베이션 세액 공제를 도입함

- ▣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개혁이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대부분 특정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 이탈리아는 기업가 및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15%의 정액 대체세 제도(substitute flat tax)의 최대 수입 한도를 8만 5,000유로³²⁾로 31% 인상함
 - 또한 2023년 과세연도부터는 정액 증분세(incremental flat tax)를 도입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함
 - ▶ 아르헨티나는 자영업자, 신규 전문직 및 기업가에 대한 연간 공제액을 2배 이상 늘리고, 루마니아는 2022년 영세 기업에 대한 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함

- ▣ 투자를 장려하고 숙련된 전문가를 유치하며, 젊은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근로소득세 개혁이 이루어짐

 - ▶ 스페인은 신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고, 투자 금액 한도 또한 6만유로³³⁾에서 10만유로³⁴⁾로 인상함

32)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616만원임

33)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905만원임

- ▶ 슬로베니아는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과 관련한 부문에 대한 투자 비용의 40%를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
 - ▶ 튀니지는 녹색, 청색 및 순환 경제 분야의 R&D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기존의 2배인 40만튀니지디나르³⁵⁾로 인상하고, 비법인 기업체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R&D 비용에 대해 50%의 추가 공제를 도입함
 - ▶ 모리셔스는 최소 10만모리셔스루피³⁶⁾ 투자 시 투자 자본의 50%를 엔젤투자공제³⁷⁾로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함
 - ▶ 스페인은 2023년 조세 우대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과세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직원의 스톡옵션 면세 한도를 5만유로³⁸⁾로 3배 이상 인상함
 - ▶ 이탈리아는 연간 최대 8만유로³⁹⁾의 생산성 및 품질 관련 보험료(예: 보너스 또는 이익 공유 프로그램)에 부과되는 대체세를 10%에서 5%로 인하함
 - ▶ 캐나다는 건설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특정 출장 및 재배치 비용에 대해 최대 4,000캐나다달러⁴⁰⁾를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
- ▣ 청년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함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속적인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고용세 관련 인센티브를 50% 인상함
 - ▶ 포르투갈은 26세 미만 근로자가 첫 5년간 받을 수 있는 부분 소득 면제액을 인상함
 - ▶ 슬로베니아는 29세 미만의 개인이 수령하는 고용 소득에 대해 1,300유로⁴¹⁾의 소득 공제를 적용함
 - ▶ 루마니아는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의 26세 미만 개인에게 최저 총급여의 15%에 달하는 추가적인 개인소득 공제를 도입함

34)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873만원임

35)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507만원임

36)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8만원임

37)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세금 공제

38)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22만원임

39)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874만원임

40)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3만원임

41)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5만원임

- ▣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는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도 함

 - ▶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를 4% 인상하였으며, 룩셈부르크는 사회적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단계적 도입 및 폐지 구간을 20% 상향 조정함
 - ▶ 대한민국은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한도를 10% 인상하고, 재산 보유 기준을 2억 4,000만원으로 20% 상향 조정하여 근로소득 세액공제 대상자를 확대함

- ▣ 캐나다와 아일랜드는 주택의 경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득세 조치를 활용하기도 함

 - ▶ 캐나다는 첫 주택 구입자의 세금 공제를 기존의 2배인 1만캐나다달러⁴²⁾로 인상함
 - 비과세 ‘첫 주택 저축 계좌’를 도입하여 첫 주택 예비 구매자에게 최대 4만캐나다달러⁴³⁾까지 불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본 계좌에서 첫 주택 구매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투자 소득 등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음
 - ▶ 아일랜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 부동산 임차인에게 500유로⁴⁴⁾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 완화 조치를 시행함
 - 이와 함께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3만유로⁴⁵⁾까지 소득세 및 이자 보유세를 환급해 주는 ‘Help to Buy’ 제도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함

- ▣ 환경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세 조치를 도입한 국가도 존재함

 - ▶ 미국은 2022년 8월 녹색 전환 및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 및 세제 개혁 패키지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도입함
 - ▶ 스웨덴은 2023년 1월부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전지 시스템과 같은 녹색 기술 설치 비용에 대해 공제하는 ‘녹색 공제’를 확대함
 - 또한 직장 내 복리 혜택 중 전기 자동차 충전에 대한 과세 혜택을 확대함
 - ▶ 체코는 저공해 법인 차량의 개인 사용 복리 혜택에 대한 과세 완화 조치를 확대함

42)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2만원임

43)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4천원임

44)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만원임

45)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58만원임

- ▶ 독일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면세 제도를 도입함
- ▶ 포르투갈은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대 1,000유로⁴⁶⁾까지 소득세를 면제함

〈표 1-III-2〉 개인 소득 과세 기반 변화

구분	과세 기반 확대		과세 기반 축소	
	2021년	2022년 이후	2021년	2022년 이후
기본공제, 세액공제, 과세 구간 관련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우루과이	콜롬비아, 대한민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브라질, 체코, 핀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알바니아, 캐나다, 독일,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대한민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나미비아,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자영업자 및 비법인 사업체 관련	-	체코,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멕시코,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대한민국, 루마니아
고용 관련	벨기에, 스웨덴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대한민국	캐나다,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모리셔스,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튀니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저소득자 관련 조치 및 근로장려금, 직장 내 복리혜택 관련	-	-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부양자 관련	-	-	벨기에, 불가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캐나다, 스위스, 체코, 독일,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모리셔스, 폴란드, 포르투갈

46) 2024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4만원임

구분	과세 기반 확대		과세 기반 축소	
	2021년	2022년 이후	2021년	2022년 이후
노인 및 장애인 관련	-	-	에스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핀란드, 대한민국, 몰타, 스웨덴, 미국
기타 비용 및 공제 관련	-	벨기에, 캐나다, 칠레, 스페인, 노르웨이	-	바베이도스,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체코, 미국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Table 3.2. Changes to personal income tax bases, p. 25

마 소득세 과세 기반 확대

- ▣ 일부 관할권에서는 세수 증대와 누진성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 기반(base)을 확대함
 - ▶ 콜롬비아는 소득세 면세 구간을 기존 1억 2,200만콜롬비아페소⁴⁷⁾에서 3,300콜롬비아 페소⁴⁸⁾로 4배 가까이 축소함
 - ▶ 노르웨이는 3, 4, 5 구간에 대한 과세기준을 낮추고 연금공제를 2% 줄임
 - ▶ 벨기에는 2주택 이상에 대해 연방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슬로베니아는 2023년부터 자영업자를 위한 정액 소득세의 소득한계를 낮춤
 - ▶ 네덜란드는 여러 차례 소득세 개정안을 발표함
 - 2025년 1월부터 합산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 자영업자 세금공제를 2023년 6,310유로⁴⁹⁾에서 2027년 900유로⁵⁰⁾로 낮출 계획임
 - 2023년부터 스타트업 경영자의 과세대상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47)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4,013만 9천원임

48)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1,085만 7천원임

49)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935만 5천원임

50)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133만 4천원임

바 자본소득

- ▣ 자본소득을 개정한 대부분 관할권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자본소득 과세 기반을 확대하여 자본소득의 세부담을 높임
 - ▶ 콜롬비아는 2023년부터 거주자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 누진 소득세를 적용하며 비거주자가 받는 배당금의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할 예정임
 - ▶ 네덜란드는 저축 및 투자 소득의 세율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p씩 인상하는 법안을 입법화함
 - ▶ 노르웨이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조정계수를 인상하여 주주 소득과 임금 간의 한계 세율 차이를 줄임
 - ▶ 스페인은 20만유로⁵¹⁾에서 30만유로⁵²⁾ 사이의 저축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27%로 인상하고 30만유로 이상의 저축 소득에 28%의 세율을 새로 도입할 예정임
 - ▶ 루마니아는 국내 법인과 비거주자 간에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함
 - ▶ 슬로베니아는 자본 이득이 비과세되는 최소 보유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함
 - 다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2023년부터 이자, 배당금 등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27.5%에서 25%로 인하함

- ▣ 노르웨이 등 여러 관할권에서는 자본소득의 과세 기반을 확대함
 - ▶ 노르웨이는 2023년부터 청년 주택 저축에 적용되는 세금 공제를 예치 주택 금액의 20%에서 10%로 줄이는 법률을 제정함
 - ▶ 캐나다는 2023년부터 ‘플립(flipped)’ 부동산 판매⁵³⁾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사업 소득으로 과세함

51)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2억 9,647만원임

52)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4억 4,475만원임

53) ‘flipped property’란 판매 전 365일 미만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캐나다는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한 후 단기간 내 재판매를 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함(CRA, Residential Property Flipping Rule, 2023. 3. 2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federal-government-budgets/residential-property-flipping-rule.html>, 검색일자: 2024. 8. 26.)

- ▶ 칠레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포함하여 여러 세제 혜택을 제한함
 - 또한 상장 기업, 뮤추얼 펀드 및 투자 펀드(이전에는 특정 조건하에 세금 면제)의 주식에 10%의 자본 이득세를 도입함
 - ▶ 튀니지는 여러 자본 이득세 면제의 적용을 폐지하거나 제한함
 - 최대 1만튀니지디나르⁵⁴⁾의 자본 이득세 면제를 폐지함
 - 특정 유형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면제를 제한함
- ▣ 독일 등 일부 관할권에서는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본소득의 과세 기반을 축소함
- ▶ 독일은 저축 공제를 25%로 인상함
 - ▶ 일본은 일본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NISA)에 대한 기여 한도를 인상하고 2024년부터 NISA에서 파생된 자본 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면제 한도를 인상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주식 양도 차익을 설립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양도 차익에 대해 면제함
 - ▶ 네덜란드는 2023년, 저축 및 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 면제 한도를 약 13% 인상함
 - ▶ 페루는 2023년, 특정 조건하에 리마 증권거래소(LSE)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2023년 12월까지 면제하는 법률⁵⁵⁾을 연장할 예정임

〈표 1-III-3〉 개인 자본소득의 과세 기반 변화(2021, 2022년)

구분	과세 기반 확대		과세 기반 축소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배당 및 이자 소득 /주식 및 채권 투자	-	-	불가리아, 벨기에	일본, 슬로베니아
자본 이득	뉴질랜드, 헝가리, 나이지리아	오스트리아, 칠레, 튀니지	몰타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페루, 슬로베니아
연금 및 저축 계좌 세제 혜택	-	칠레, 캐나다	-	-
종업원 주식 취득 공제	영국	노르웨이	-	독일, 일본, 네덜란드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Table 3.4. Changes to personal capital income tax bases, p. 32

54)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436만원임

55) 2015년에 제정됨

사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 ▣ 사회보장제도(SSC)의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을 위해 SSC 개혁이 이루어짐
 - ▶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개선을 위해 효율 인상 및 기반 확대 조치가 이루어짐
 - 독일은 법정 실업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함
 - 일본은 고용보험에 대한 고용주 및 직원 SSC를 0.3%에서 0.4%로 인상함
 - 멕시코는 2023년, 고용주의 SSC를 인상하고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라트비아는 2023년과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원에 대한 최소 SSC 지급액을 인상함
 - 벨기에는 단기 고용계약의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해⁵⁶⁾ 임시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 SSC 제도를 도입함
 - ▶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SSC 효율 인하 등 SSC 지원 정책을 시행함
 - 오스트리아는 2023년, ‘가족부담평등기금(Family Burden Equalization Fund)’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을 3.7%로 0.2%p 인하함
 - 프랑스는 20 ~ 250명 고용 기업의 초과근무에 대한 고용주 사회보험료 감면을 연장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감면함
 - 이탈리아는 2022년, 한시적으로 고용주 사회보험 효율을 인하함
 - 스위스는 2011년에 도입했던 1%의 연대 부담금을 폐지함
 - 루마니아는 농업 및 식품 산업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하고 건강보험료 면제를 도입함
 - 아르헨티나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고용주 SSC 감면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고 특정 사회,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의 신규 채용자에 대한 고용주 사회보장세를 100% 감면하는 ‘일자리 연결(Bridge to Employment)’ 프로그램을 도입함
 - 튀니지는 2023~2025년 과세연도 동안 직원 SSC 효율을 1%에서 0.5%로 인하함

56) 벨기에는 연속 근무일수에 따라 기여금이 증가함

〈표 1-III-4〉 사회보장기여금 요율 개편 (2021, 2022년)

구분	요율 인상		요율 인하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고용주 부담분		독일, 일본, 라트비아 ¹⁾ , 멕시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튀니지
고용인 부담분		벨기에, 독일,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¹⁾ , 루마니아
자영업자				프랑스

주: 1) 라트비아와 이탈리아는 일시적인 조치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Table 3.5. Changes to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rates, p. 33

▣ SSC 과세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은 이전 연도에 비해 감소함

▶ 슬로바키아와 스페인은 기반 확대 조치를 시행함

- 슬로바키아는 2023년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 사회보험 기여금을 도입함
- 스페인은 자영업자 사회보장 제도를 근로자와 더 가깝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자영업자를 위한 누진적 사회보장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고소득자의 기여금을 늘리고 저소득자의 기여금을 줄임

▶ 미국 등은 농업 및 식품 가공과 같은 특정 부문의 고용을 지원하거나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 축소 조치가 이루어짐

- 미국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에 적용되는 SSC 기반 축소 조치를 도입함
- 슬로바키아는 노동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식품 가공 및 관광 부문에 고용된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SSC 수당(allowance)을 도입함
- 스웨덴은 R&D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대한 SSC 감면을 확대하고 무료 주차 등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특정 현물 혜택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연장함
- 이스라엘은 고용주가 납부해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20%(특정 부문의 경우 15%)를 폐지함

〈표 1-III-5〉 사회보장기여금 과세 기반 개편 현황 (2021, 2022년)

구분	과세 기반 확대		과세 기반 축소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고용주 부담분	불가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슬로바키아, 스웨덴, 미국
고용인 부담분	불가리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우루과이 ¹⁾	이스라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자영업자	-	불가리아, 스페인	-	-

주: 1) 우루과이는 일시적인 조치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Table 3.6. Changes to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payroll tax bases, p. 34

2 법인세 및 기타 법인세

▣ 지난 20년간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지난 8년간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개혁은 세율 변경보다는 과세 기반을 축소하는 조치가 선호되고 있음

- ▶ 현재 법인세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임
- ▶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할 국가들은 법인세 개혁을 하는 이유로 세수 증대와 투자 장려를 위함이라 응답함
 -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동안 급증한 재정 지출을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 개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적자를 억제하고자 노력함
- ▶ 많은 관할권에서 법인세제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 혁신 기술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일반적임
 - 고소득 국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을 자주 활용함
 - 많은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관련 세율 인하 및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함
 - 에너지 비용 상승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음

- ▶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와 탄소 배출량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관할권이 많아지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있음
- ▶ 많은 관할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이익을 창출한 기업에 횡재세(windfall tax), 부담금(levy), 기타 세금 조치를 시행함
- ▶ BEPS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법인세 회피로부터 법인세 과세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
 - 많은 관할권에서 Pillar 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Pillar 1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임
 - Action 5, 6, 13, 14의 이행도 진행 중임

가 법인세(CIT)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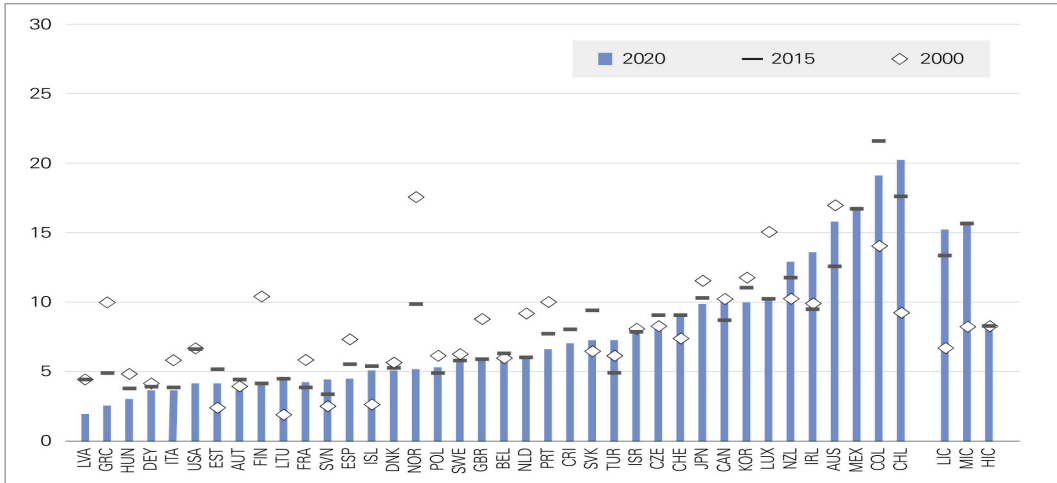
- ▣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14개 관할권의 총세입 중 법인세 수입 비율과 GDP 중 법인세 수입 비율은 증가함⁵⁷⁾
 - ▶ 관할권의 총세입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2000년 12.6%에서 2020년 15.1%로 증가하고 GDP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2000년 2.6%에서 2020년 3.0%로 증가함
 - ▶ 총세입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음
 - 법인세율, 법인세 과세 기반의 폭, 기업이 법인화된 정도, 경기주기의 단계, 법인세 시스템의 순환성 정도, 법인세 외의 다른 세금 의존도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임⁵⁸⁾
 -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와 저소득(LIC) 및 중소득(MIC) 국가에서 법인세 수입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임

57) OECD 법인세 통계 데이터베이스(OECD's Corporate Tax Statistics database)

58) 총세입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라트비아가 2.3%로 매우 낮은 데 반하여, 칠레는 24.3%에 이르는 등 국가마다 편차가 큼

[그림 1-III-2] 각국의 총세입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2000, 2015, 2020년)

(단위: %)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Figure 3.2. Corporate income tax revenues, p. 36

나 ▶ 수십 년간의 하향 조정으로 안정화된 법인세율

1) 일반적인 법인세율

- ▣ 114개 관할권의 통합 법인세율은 2000년 28%에서 2022년 20%로 감소함
 - ▶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하락해 온 법인세율은 2022년에 안정세를 보임
 - 2015년⁵⁹⁾ 이후 처음으로 관할권에서 법인세율 인하보다 인상을 발표하거나 입법화한 사례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은 사상 최저 수준임
 - ▶ 2022년 남아공 등 3개의 관할권에서 세율 인하를 발표함
 - 남아공은 2023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28%에서 27%로 인하한다고 발표함
 - 한국은 법인세 각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1%p 인하함
 - 프랑스는 2년에 걸쳐 국가 생산세(Contribu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함

59) Tax Reform 보고서 발간 첫 해

- ▶ 네덜란드 등 4개의 관할권에서 세율 인상안을 발표함
 - 네덜란드는 2023년 초부터 최저 법인세율을 15%에서 19%로 인상하는 한편, 최고 세율의 과세 기준을 거의 절반인 20만유로⁶⁰⁾로 확대함
- ▣ 많은 관할권에서 2022년부터 횡재세 등 새로운 법인세 또는 부과금을 시행하고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 콜롬비아는 법인세 기반을 개혁하기 위해 여러 면세 조항을 폐지하고 특정 납세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국내 기업은 7.5%에서 10%로, 외국 기업은 10%에서 20%로), 거주 기업에 대한 15%의 최저한세 신설 등 다양하게 법인 세제를 개편함
 - ▶ 아랍에미리트는 2023년 중반부터 9%의 세율로 일반화된 법인세를 도입하는 역사적인 세제개편을 발표함

〈표 1-III-6〉 법인세율 변화(2021, 2022년)

구분	세율 인상		세율 인하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일반 법인세율	인도네시아, ²⁾ 튀르키예	벨기에, 스위스, 콜롬비아, 네덜란드	캐나다, ³⁾ 스위스, 콜롬비아, 프랑스, 스웨덴	프랑스, ¹⁾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소기업 법인세율	-	-	브루나이, 캐나다, ³⁾ 카보베르데, 헝가리	캐나다, ³⁾ 스웨덴, 콜롬비아
특허박스/IP 세율	-	-	이탈리아	-

주: 1) 2년 동안 50만 유로 이상의 이익을 내는 회사에 적용하는 '기업가치에 대한 기여금'의 폐지도 포함
 2)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일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함
 3) 2021년 발표한 캐나다의 법인세율 인하는 무공해 기술제조 이익에 적용되고 2021년 이후와 2029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은 15%에서 7.5%로,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율은 9%에서 4.5%로 인하함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Table 3.7. Changes in corporate income tax rates, p. 38

60)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2억 9,663만원임

2)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 스페인과 콜롬비아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함

- ▶ 스페인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순 매출액 100만 유로⁶¹⁾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3%로 인하함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25%에서 15%로 인하함
- ▶ 콜롬비아는 과세적용소득(UVT)⁶²⁾이 10만(89만 3,000달러⁶³⁾콜롬비아페소 미만의 매출에 적용되는 추정세 제도(presumptive tax regime)의 세율을 인하함
 - 최저 세율은 2.0%에서 1.6%로, 최고 세율은 14.5%에서 8.3%로 인하함

3) 기타 사업세

▣ 상당수 관할권에서 횡재세, 부과금 또는 기타 조치를 도입함

- ▶ 일부 관할권에서는 전기 및 화석 연료 부문과 금융 및 제약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 부과금 또는 기타 조치를 적용함

▣ 캐나다 등 일부 관할권에서는 2022년에 금융 부문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거나 인상함

- ▶ 금융 부문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징수되며 다양한 과세 기준에 적용될 수 있음
 - 캐나다는 소득이 1억캐나다달러⁶⁴⁾ 이상인 은행 및 생명보험 그룹에 대해 영구적으로 세율을 1.5%p 인상하여 2022년 4월부터 해당 기관의 연방 법인세율은 15%에서 16.5%로 인상됨
 - 콜롬비아는 금융 기관에 대한 기존 추가 세율에 2027년까지 2%p 인상하여 실효 법인세율을 40%로 인상하고 과세 대상을 보험사와 증권 중개인까지 확대함
 - 케냐는 비거주자가 얻은 금융 파생상품 수익에 대해 15%의 세율을 도입함

61)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14억 8,224만원임

62) 콜롬비아 조세시스템은 UVT라는 단위를 활용하고 있음(『KOTRA 해외시장뉴스』, 「콜롬비아, 대대적인 세금제도 개편」, 2016. 11. 21.,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00&pNttSn=155433, 검색일자: 2024. 7. 29.)

63)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11억 8,224만원임

64)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981억 5,300만원임

4)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 ▣ 수년간의 추세처럼 관할권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과세 기반을 수정하는 것을 선호함
 - ▶ ‘Tax Reform 2023’ 설문조사에 응답한 관할권 중 2022년 지식재산권에 적용되는 세율을 변경한 곳은 한 곳도 없음
 - ▶ 9개의 IP 제도가 BEPS Action 5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2022년에 검토됨
 - 카보베르데, 홍콩, 자메이카, 북마케도니아는 수정된 버전에서 무해한 것으로 확인됨
 - 알바니아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됨
 - 아르메니아는 수정 과정에 있고 온두라스, 파키스탄은 폐지됨

다 법인세제 혜택 확대

- ▣ 많은 관할권에서는 투자 촉진, 혁신, 지속 가능한 친환경제도 등을 위해 법인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실효 법인세율을 낮추는 데에 기여함

〈표 1-III-7〉 법인세 과세 기반 변화

구분	과세 기반 확대		과세 기반 축소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감가상각 및 일반 투자 인센티브	나이지리아	벨기에, 베냉, 콜롬비아, 북마케도니아,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모리셔스, 폴란드	앙골라, 캐나다, 체코, 독일,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케냐, 모리셔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환경 관련 조세 지원	-	-	캐나다,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앙골라, 캐나다, 체코, 포르투갈, 미국
R&D 및 특허 박스 조세 지원	-	-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모리셔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영국, 일본, 한국, 포르투갈, 튀니지

구분	과세 기반 확대		과세 기반 축소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2021년	2022년 혹은 그 이후
중소기업 조세 지원	-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앙골라, 베냉, 캐나다, 독일, 모리셔스, 폴란드, 포르투갈,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기타 조세 지원	뉴질랜드	칠레, 케냐, 노르웨이, 미국	-	앙골라,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케냐, 라트비아, (뉴질랜드), 폴란드,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랑스, 헝가리	한국
이자비용 공제	-	벨기에	이탈리아	-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Table 3.9. Changes to corporate tax bases, p. 42

1) 자본비용 공제 및 일반 세제 혜택

- ▣ 독일 등 많은 관할권에서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본비용의 공제를 활용하고 이전 팬데믹 관련 구제 조치를 연장함
 - ▶ 독일은 동산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충당금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함
 - ▶ 덴마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한 투자 공제 한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함
 - ▶ 체코는 일부 자산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가속상각을 연장함
 - ▶ 영국은 1년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를 늘려 팬데믹 관련 한시적 조치를 영구화함
 - ▶ 핀란드는 고정자산에 대한 일시적 가속상각을 2024년과 2025년까지 연장함
 - ▶ 이탈리아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세금공제를 시행함
 - ▶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새로운 기계, 생산 라인 및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5만달러⁶⁵⁾ 한도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자 결제 제공업체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발표함

65)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6,619만원임

- ▶ 모리셔스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사업을 시작하는 자유항(Freeport) 운영자 또는 개발자로 등록된 기업에 8년간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함
- ▶ 앙골라는 2년에서 8년 동안 민간 투자에 대한 법인세율을 20%에서 80%까지 한시적 인하(프로젝트 소재지에 따라 다름)하고 프로젝트 가속화 등 기업을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함

▣ 반면, 벨기에 등 여러 관할권에서는 특혜 제도와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폐지함

- ▶ 벨기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한시적 최저한세 강화’를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법인세 과세 기반을 확대함
- ▶ 베냉은 매출액이 10억프랑⁶⁶⁾을 초과하는 신규 기업과 비거주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함
- ▶ 칠레는 대기업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폐지함
- ▶ 콜롬비아는 2022년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법인세 인센티브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폐지함
 - 2024년부터는 콜롬비아의 자유무역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소득으로 제한됨

2) 연구 개발 및 혁신 관련 세제 혜택

- ▣ 핀란드 등 많은 관할권에서 연구 개발(R&D) 및 혁신에 대한 새로운 세제 혜택 도입, 기존 세제 혜택 확대, 유효 기간 연장을 통해 지원을 강화함
 - ▶ 핀란드, 포르투갈, 튀니지는 R&D 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함
 - 핀란드는 새로운 R&D 지출 공제를 도입함
 - 포르투갈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함
 - 튀니지는 R&D 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려 40만튀니지디나르⁶⁷⁾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 영국은 2023년 4월부터 R&D 세액공제율을 13%에서 20%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66)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22억 6,072만원임

67)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1억 7,451만원임

- ▶ 캐나다의 여러 주(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 서스캐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한도 또는 기간을 연장함
 - ▶ 일본은 혁신 및 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R&D 세액공제율을 지출 수준에 따라 20%에서 30%로 변경하고(기존 단일 25% 세율) 혁신, 창업, 공동 연구 및 인수합병 촉진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함
- ▣ R&D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OECD 국가의 수는 2000년 20개국에서 2022년 33개국으로 증가함
- ▶ 새로운 R&D 세제 혜택의 도입과 기존 R&D 세제 혜택의 증가에 따라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 내재적 한계 R&D 세제 보조금이 눈에 띄게 증가함
 -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세제지원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의 내재 보조금이 더 크고 대기업의 R&D 지출에 대한 내재 보조금 비율은 국가와 연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음
 - 2022년 한계 투자에 대한 R&D 세제 혜택에 관하여,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수익성 있는 대기업에 관대한 편임
 - 반면,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은 수익성 있는 중소기업에 가장 유리한 지원을 하고 있음

3) 중소기업 과세기준 변경

- ▣ 독일 등 많은 관할권은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법인 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함
 - 최대 4,500유로⁶⁸⁾(2021년과 2022년)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고 최대 3,000유로⁶⁹⁾(2023년)의 인플레이션 보험료를 면제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세금 손실 공제액을 1,000만유로⁷⁰⁾로 인상함

68)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667만원임

69)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445만원임

70)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148억 440만원임

- ▶ 폴란드는 2022년과 2023년에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 법인세 납부액을 영구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함
- ▶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서스캐처원주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를 한시적으로 연장함
- ▶ 포르투갈은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17% 법인세를 인하 범위를 중소 자본 기업까지 확대함
- ▶ 우루과이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승인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함
- ▶ 모리셔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을 구매한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강화함

4) 이월결손금 규정 및 이중과세 방지 제도

- ▣ 소수의 관할국은 이월결손금 공제 조항을 변경함
 - ▶ 포르투갈은 2023년부터 결손금 공제에 적용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공제 한도를 과세 대상 이익의 70%에서 65%로 축소한다고 발표함
 - 단, 이월결손금은 이익과 무기한 상계할 수 있음
 - ▶ 남아공은 2022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과세소득의 80%로 함
 - ▶ 한국은 이월결손금 최대 한도를 연간 사업소득의 60%에서 80%로 늘림
- ▣ 한국은 외국 자회사의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정함
 -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신 2023년부터는 외국 자회사 배당소득의 95%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 ▶ 또한 2023년부터는 외국 기업의 한국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함

5) 환경 관련 세제 혜택

- ▣ 미국과 캐나다는 2022년, 저공해 기술 및 생산 방식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환경 관련 세제 혜택을 대폭 변경함
 - ▶ 미국은 2022~2031년 동안 약 3,910억달러⁷¹⁾ 규모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발표함
 - 예산의 약 3분의 2가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55%가 기업 공제 및 인센티브)임
 - 탄소 제로 발전 및 적격 에너지 저장 기술의 적격 투자에 대해 6%의 청정 전기 투자세액공제(2022~2031년 509억달러⁷²⁾)를 제공함
 - 태양 및 풍력 에너지용 부품, 배터리 부품, 중요 광물, 인버터의 국내 제조에 대해 기술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생산세액공제인 첨단 제조업 생산공제를 제공함(2022~2031년 306억달러⁷³⁾)
 - ▶ 캐나다는 저공해 기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조치를 발표함
 - 연방정부는 무공해 기술 제조업체에 대한 50% 감면 세율을 공간 난방 또는 온수 난방에 사용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제조까지 확대함⁷⁴⁾
 - 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청정 수소 생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급 가능한 투자 세액 공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2022년부터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특정 발전 시스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고정식 전기 저장 시스템, 특정 저탄소 열 장비, 비도로 무공해 차량 및 관련 충전 또는 급유 장비 등 청정 기술의 자본 지출에 대해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제안함
- ▣ 각국 정부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환경 관련 인센티브는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
 - ▶ 체코는 2022년,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소의 감가상각 규정을 수정하여 감가상각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함

71)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516조 8,238억원임

72)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67조 2,796억 2,000만원임

73)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40조 4,501억 4,000만원임

74)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일반 기업 및 소기업 CIT 세율에 적용됨

- ▶ 포르투갈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용에 대해 자율세율 감면을 도입함
- ▶ 앙골라는 재생 에너지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35% 감면 (결과적으로 16.25%의 세율)을 허용하고 양도소득세율 60% 감면 혜택도 제공함
- ▶ 한국은 2023년부터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가속상각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함

라 국제조세

1) Two - Pillar Solution의 진전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회원들은 2021년 10월, Two-Pillar Solution에 합의함

- ▶ Pillar 1에 따라 다국적 기업⁷⁵⁾의 2,000억달러 이상의 이익이 관할권으로 재할당되고 일상적인 마케팅 및 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 가격 책정 규칙이 간소화됨
 - 연간 120억⁷⁶⁾~250억⁷⁷⁾달러⁷⁸⁾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됨
 - 2022년에 Pillar 1의 구성 요소에 대한 공개 협의가 이루어졌고 기술 작업은 진행 중이며 2023년에 새로운 다자간 협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Pillar 2에 따라 15%로 설정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고 낮은 명목 세율로 과세되는 LIC 및 MIC의 지급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함
 - 연간 1,410억⁷⁹⁾~2,600억⁸⁰⁾달러의 이익을 낼 것으로 추산됨
 - GloBE 규칙에 대해 합의된 행정 지침이 발표된 후 구현 프레임워크가 마무리되었고 여기에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및 과징금 감면(Penalty Relief)과 GloBE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및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에 대한 공개 협의도 포함됨

75) 약 100곳

76)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15조 8,652억원임

77)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33조 525억원임

78) 2017~2021년 기간 평균

79)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186조 3,879억원임

80) 2024년 8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343조 6,940억원임

2) 광범위해진 BEPS 프로그램

- ▣ 2022년에는 BEPS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짐
 - ▶ OECD/G20은 2015년 10월, 이익을 저세율 또는 비과세 관할권으로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세금 계획 전략을 해결하기 위한 15가지 Action이 포함된 BEPS 패키지를 발표함
 - ▶ 조세 조약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도구(MLI) 조항은 약 890개의 조세 협정에 대해 발효되고 있음
 - 2023년 3월 현재 100개 관할권이 MLI에 서명했고 그중 80개 관할권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기탁함
 - MLI에는 혼성불일치 해소(Action 2), 조약남용 방지(Action 6), 고정사업장 회피방지(Action 7), 상호 합의 절차(MAP)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분쟁해결 조치(Action 14)가 포함됨

- ▣ 이전가격 문서화(Action 13)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CbCR)의 자동 교환이 증가함
 - ▶ Action 13은 다국적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해당 관할권에서 CbCR을 제출하여 매출, 이익, 직원 및 운영되는 각 관할권에 지불한 세금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 최종 모회사가 거주하는 국가의 세무 당국은 이 데이터를 다른 관할권의 세무 당국과 교환함
 - ▶ 2021년 2,700개에서 2022년 10월 현재 3,300개가 넘는 양자 교환 관계가 활성화되었고 점점 더 많은 관할권에서 CbCR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 상호 합의 절차(MAP)를 다루는 Action 14도 상당한 진전을 보임
 - ▶ Action 14는 조세 조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포괄적 이행체계는 이중과세 분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MAP 통계에 대한 추가 데이터 포인트 보고를 위해 당사국간심사평가방법(Peer Review Assessment Methodology)에 동의함
 - ▶ 사전 가격 책정 협정 프로그램은 2024년부터 연간 통계로 보고되고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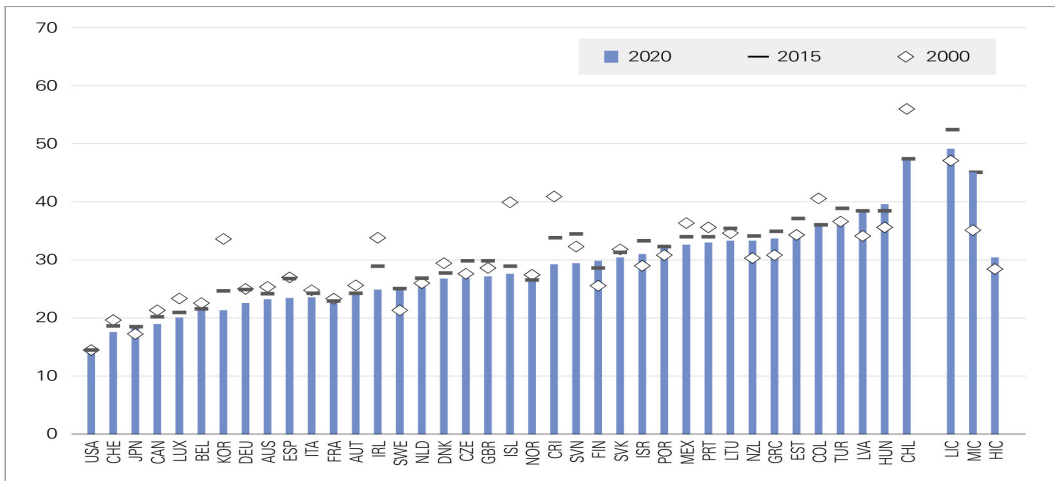
3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가 세수 및 동향

-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은 특히 저소득(Low - Income Countries, LICs) 및 중간 소득(Middle - Income Countries, MICs) 국가에서 여전히 주요 수입원임
 - ▶ 2020년 OECD 평균 기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 총세수의 32.1%를 차지했지만 저소득,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각각 총세수의 56%와 51%를 차지함
 - ▶ 또한 2020년도 전체 세수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적으로 6년 연속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 1-III-3] 총세입 대비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인한 세입 비율

(단위: %)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p. 50

- ▣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주요 세금으로, 2020년 OECD 국가 총세수의 20.2%를 차지하여 각국의 주요 세금 재원임
 - ▶ 부가가치세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인 물품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약 3배에 해당함

- ▶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 174개 관할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수리남과 팔라우는 2023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라이베리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함

나 부가가치세 동향

1) 다목적 부가가치세 인하 추세

- ▣ 가격 인상 억제, 생활 안정, 저탄소 경제 전환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인하 정책을 발표함
 - ▶ 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연장하였음
 - 해당 조치는 에너지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예산 지원 중 하나로 시행됨
 - ▶ 특정 부문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하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식품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이용함
 - 또한 생활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 및 기타 기본 품목에 대한 부가세율을 인하함
 - ▶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주로 유럽의 고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일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도 이러한 품목에 대한 부가세율을 인하하고 품목 수를 늘림
 - ▶ 많은 국가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부가세 제도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전기차 및 수소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및 인하가 적용되고 있음
- ▣ 중·고소득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 소비 품목인 여성 위생용품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계속해서 낮추거나 면제함
 - ▶ 2022년 기준, 10년 전보다 여성 위생용품 등 기본 소비 품목에 더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추세이며 주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함

- ▶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여성 위생용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5%, 4%로 인하했고, 북마케도니아는 18%에서 5%로 인하함
 - ▶ 이탈리아는 어린이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고 스페인은 비의료용 피임약에도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함
 - ▶ 바베이도스, 아일랜드, 나미비아는 모두 여성 위생용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면제하였으며 바베이도스와 아일랜드는 기타 건강 제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 2022년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인쇄 및 전자 매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균등화하고 업계 지원을 위해 2016년 이후부터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였음
- ▶ 아일랜드는 전자 및 인쇄 신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에스토니아는 전자 및 인쇄 출판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5%로 인하하였음
- ▣ 소비 및 고용 장려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 숙박, 레스토랑, 문화 및 스포츠 활동 관련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함
- ▶ 포르투갈은 예술, 문화 기관 및 행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6%로 인하했으며, 리투아니아는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던 9% 부가가치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 ▶ 슬로바키아공화국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10% 감면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앙골라는 호텔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함
 - ▶ 튀르키예는 주거용 부동산, 농업 관개용 전기, 위생 및 청소 제품에 적용되는 표준 부가가치세 세율을 18%에서 8%로 인하함
- ▣ 2022년 3월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역사적으로 최고치에 달함에 따라 중산층 및 고소득 국가는 특정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춤
- ▶ 스페인은 기본 식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4%에서 0%로 낮춤
 - ▶ 불가리아도 빵과 밀가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함
 - ▶ 폴란드는 2022년 2월 1일부터 기본 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 튀르키예는 식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8%에서 1%로 낮춤

- ▶ 크로아티아는 2022년 4월부터 식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부가가치세율 25%에서 가장 높게는 13% 세율을 적용하거나 가장 낮게는 5%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인하 적용함
- ▶ 북마케도니아는 2022년 3월 중순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기본 식료품⁸¹⁾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 이후 기본 식료품은 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고급 식료품⁸²⁾은 10%인 높은 세율을 적용함
- ▶ 페루도 2022년 5월부터 일부 식료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면제함
- ▶ 크로아티아와 폴란드는 비료 등 농업용 소모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낮춰 농업 부문을 지원함

〈표 1-III-8〉 에너지 및 식품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변경(2022년 6~12월)

	천연가스	전기	지역 난방	기타 연료	식품 및 농업
상한 (또는 단일) 경감 세율	불가리아(9%) 독일(7%) 네덜란드(9%) 슬로베니아(9.5%)	네덜란드(9%) 북마케도니아(10%) 슬로베니아(9.5%)	불가리아(9%) 독일(7%) 슬로베니아(9.5%)	폴란드(8%), 슬로베니아 (9.5%)	-
더 낮은 하위 감면 세율	벨기에(6%) 스페인(5%) 크로아티아(5%) 아일랜드(9%) 이탈리아(5%) 우크라이나(7%)	벨기에(6%) 스페인(5%) 핀란드(10%) 아일랜드(9%) 폴란드(5%) 북마케도니아(5%)	크로아티아(5%) 폴란드(5%)	스페인(5%) 크로아티아(5%) 우크라이나(7%)	스페인(5%) 크로아티아(5%) 튀르키예(1%)
0%	폴란드	-	-	핀란드	불가리아 스페인 폴란드
면제	-	-	-	-	북마케도니아 페루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p. 52

81) 북마케도니아에서 VAT 0% 적용되는 기본 식료품이란 빵, 버터, 설탕, 밀가루, 해바라기유, 우유, 정육, 달걀, 쌀을 의미함

82) 고급 식료품이란 특정 수입식품, 고급 와인, 트러플, 철갑상어알 등과 같이 희귀하거나 특별히 가공된 식료품을 의미함

2)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정

-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부문이나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낮추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 환경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낮추는 정책 추진이 몇 년 동안 새로운 추세이며, 많은 국가에서 관련 부가가치세 정책 개혁을 언급하고 있음
 - ▶ 2022년 전기 및 수소 자동차 및 관련 충전 장비와 저탄소 국내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제품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감면 세율을 적용함

- ▣ 다수의 국가에서 태양광, 친환경 연료 등 주거용 에너지 발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감면함

 - ▶ 독일과 네덜란드는 태양광 패널 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대해 0% 세율을 적용함
 - ▶ 벨기에와 포르투갈은 태양광 패널, 태양열 온수기와 열펌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년 반 동안 일시적으로 6%로 인하함
 - ▶ 포르투갈은 바이오매스 연료와 자전거에 대해 감면 부가가치세율 6%를 적용함
 -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2년 4월 초부터 열펌프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하는 한편, 화석 연료 연소 시스템에 대한 주 판매세를 12%로 인상함
 - ▶ 바베이도스와 자메이카는 2022년 4월부터 주거용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배터리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 2022년 저·중·고소득 국가 모두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차량 판매에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함

 - ▶ 아이슬란드는 2023년 말까지 면제 대상 자동차 수 제한을 없애 전기 및 수소 자동차에 대한 세금 면제를 확대함
 - ▶ 베냉은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오토바이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하고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여 전기 및 하이브리드 오토바이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유지함
 - ▶ 바베이도스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모든 전기 자동차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튀니지는 또한 2022년 2월부터 배출가스 없는 중고 차량 판매에 대해 5년간 지방 판매세 면제 정책을 도입함
- ▶ 튀니지는 2022년에 전기 자동차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한 데 이어 충전 장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인하하겠다고 발표함
- ▶ 노르웨이는 구매 가격이 5만 2,080달러⁸³⁾를 초과하는 전기 자동차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결정함

3)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시스템

- ▣ 온라인 서비스 및 디지털 제품의 국제 무역 증가는 부가가치세 설계 및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할국은 관련 법을 개정하는 추세임
 - ▶ OECD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략적 디지털 부가가치세 정책 설계, 구현, 운영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과 함께 제공되는 지역별 디지털 부가가치세 도구(toolkit)를 통해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함
 - ▶ 80개 이상의 국가가 국제 디지털 무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조세개혁을 시행하며, 그중 다수 국가가 규정 준수 및 세수입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어, 나머지 국가들 또한 규범을 제정하는 등 조세개혁 정책을 고려하고 있음
 - ▶ 각 국가는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저가 상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해 노력 중임
 - ▶ 최근까지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가 상품 수입에 대해 최소기준면제(De minimis exemption)를 적용했지만,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소매업체 매출 감소와 불공정 경쟁이 증가하여 이러한 면제 적용이 어려워짐
- ▣ 2022년 37개 OECD 국가는 공급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외국 공급업체 또는 공급 촉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온라인 등록을 위한 체계(mechanism)를 구현함
 - ▶ 베냉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징수하는 법을 제정

83) 2024년 7월 29일 환율 기준 약 7,194만원

4)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대

- ▣ 2022년도 대부분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추세와는 다르게 일부 국가는 세수 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기반 확대 조치를 보고함

 - ▶ 베냉, 칠레, 케냐는 부가가치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전에 면제된 여러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부과
 - ▶ 베냉은 수입 쌀에 4%의 부가가치세율을 부과하고 국내 물 및 전기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했으며, 케냐는 액화석유가스 및 비료 공급에 8%의 부가가치세를 적용
 - ▶ 칠레는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하고 교육, 대중교통, 교육 서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 뉴질랜드는 저축 및 주식 상품에 대한 세무 처리를 조정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GST) 면제를 도입했으며, 튀르키예는 특정 건설 공급품과 R&D 및 혁신 활동을 위한 특정 공급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 우크라이나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단지의 성장 장려를 목표로 디아시티(Diia City)⁸⁴ 거주자에게 IT 산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 단지 참가자가 재활용을 위해 수입한 장비나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 일부 국가는 세수를 늘리고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해 2022년에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함

 - ▶ 루마니아는 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 호텔 숙박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에 인하여 5%로 적용되던 세율을 9%로 인상하여 적용할 것을 발표함
 - ▶ 몰디브는 관광 부문에 대한 GST 세율을 표준 VAT 세율의 두 배인 12%에서 16%로 인상함
 - ▶ 스웨덴은 특정 수리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6%에서 12%로 인상함
 - ▶ 튀르키예는 요트, 보트, 크루즈 선박 판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에서 18%로 인상함

84) 디아시티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을 중앙, 동유럽의 IT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함

- ▶ 루마니아는 설탕이나 가당 무알코올 음료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9%에서 19%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다 소비세 동향

- ▣ 소비세(Excise Taxes)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고 일부 불건전한 소비의 억제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활용하고 있음
 - ▶ 다수의 국가는 2022년에 비(非)에너지 소비세를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했으며, 2021년 대비 더 많은 국가에서 소비세를 변경했지만, 개혁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 연례 세금 정책 개혁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의 4분의 1 이상이 담배와 주류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했으며, 일부 국가는 가당 음료에 대한 세금을 도입 또는 폐지했다고 보고함
 - ▶ 보고된 변경 조치 대부분은 담배 과세에 대한 물가 조정이었지만, 다수의 국가는 담배와 전자담배 등 대체 담배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개혁 도입을 시도하기도 함
 - ▶ 회원국 5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가 담배와 담배 대체품에 대한 소비세를 조정하였으며, 이런 상품에 대한 높은 세금 부담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함임
 - ▶ 지난 20년 동안 소비세는 고소득 국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었지만,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 잡음
 - ▶ 소비세를 가장 많이 인상한 국가는 불가리아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담배 세율을 평균 50%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
- ▣ 2022년에 회원국 약 10분의 1의 관할권에서 주류와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가 변경됨
 - ▶ 콜롬비아는 처음으로 가당 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했고, 바베이도스와 네덜란드는 각각 세율을 두 배와 세 배로 인상함
 - ▶ 콜롬비아는 2023년 11월부터 소금이나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2025년까지 2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 이스라엘의 새 정부는 선거 후 2022년에 도입된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하

겠다고 발표했으며, 소비세를 가장 크게 인상한 국가는 모리셔스(+10%)와 슬로바키아(증류주에 대해 +30%)임

- ▶ 캐나다는 100% 국내 생산 포도주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폐지하고 부피 기준 알코올 0.5% 이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취급과 같도록 저알코올 맥주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함
- ▶ 포르투갈은 저도수 알코올 음료에 적용되는 유효 세율을 낮추고 그리스는 2020 EU 지침에 따라 가정 생산 과일 기반 증류주에 대한 소비 세율을 하향 조정함

- ▣ 일부 중간소득 국가는 세수 증대를 위해 담배 외 다른 상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함
 - ▶ 아르헨티나는 수입 사치품과 일부 서비스에 대해 30%의 세금을 도입함
 - ▶ 케냐는 특정 플라스틱, 초콜릿, 화장품 및 미용 제품, 과일 주스, 수입 설탕과 감자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함

4

환경세(Environmentally related services)

가 환경 관련 세금 및 기후 행동

- ▣ OECD 연구에 따르면, 확보된 최근 데이터인 2021년도에 탄소 감축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 캐나다, 중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로운 탄소 가격 책정 체계가 도입되면서 가격이 책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은 2018년 32%에서 2021년 40% 이상으로 증가함
- ▣ 2021년에도 평균 순유효탄소가격(Net ECR)은 부문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료 소비세가 우세한 도로 운송 부문에서 유효탄소가격(Net ECR)이 가장 높았음
 - ▶ OECD는 순유효탄소가격(Net ECRs, NET Effective Carbon Rates)⁸⁵⁾을 계산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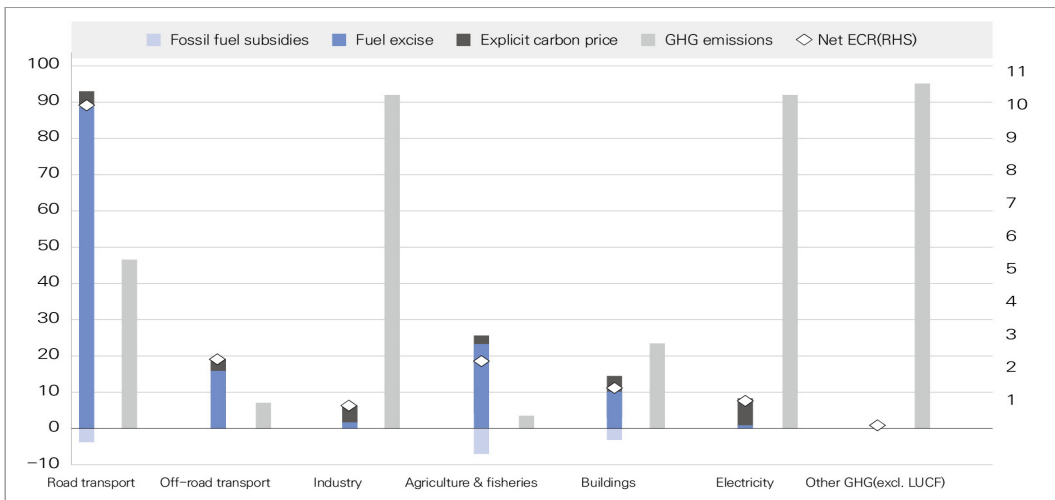
85) 순유효탄소가격(Net ECRs, NET Effective Carbon Rates)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80%를 배출하는 71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료 소비세, 탄소세 및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가격의 양(+)의 탄소 가격과 화

2022년에 새로운 주요 탄소 가격 체계가 없고 대형 배출업체의 연료 소비세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양의 가격 배출 비중은 2021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함

- 2023년 유효탄소가격(Net ECR) 정보는 2024년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

- ▶ 산업 및 전력 부문의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순유효탄소가격(Net ECR)이 낮은 것은 배출권 거래제 또는 탄소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며, 다수의 국가에서 이러한 배출량 가격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
- ▣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s, ETS)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예: 연방 배출권 거래제 및 퀘벡의 배출권 거래제), 중국, 유럽연합, 스위스, 미국의 배출권 가격은 상승함
- ▶ 8개국에서 탄소 세율 인상, 연료 소비세의 광범위한 인하, 가격 상한제에 따른 화석 연료 보조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 실질 기준 평균 순유효탄소가격(Net ECR)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 도로 운송 부문의 순유효탄소가격(Net ECR)의 하락은 전기 및 산업 부문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

[그림 1-III-4] 부문별 평균 유효 탄소 가격 및 온실가스 배출량(2018~2021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p. 58

석 연료 보조금의 음(-)의 탄소 가격을 추정하여 계산함

나 에너지 사용 세금

- ▣ 글로벌 에너지 가격상승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2년에 에너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한 후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여러 차례 걸친 인하 세율 적용 기간의 연장이 일반적인 추세였음

 - ▶ 전년도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관할국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상승을 배경으로 에너지 세금을 인하함
 - ▶ 각국 정부가 수행한 에너지세 인하 정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가별 노출도와 소비자 가격에 대한 전가, 팬데믹 이후의 재정 여력, 법정 한도, 수반되는 정책 수단(이전, 보조금, 가격 상한 등), 정치·경제적 고려 사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됨
 - ▶ 대부분은 3~6개월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높은 에너지 가격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면서 연장되었음
 - ▶ 대부분 기존 탄소 가격 체계를 보유한 소수의 고소득 국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해서 탄소 가격을 개혁함

- ▣ 에너지 세금의 일시적 인하는 특히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노출된 고소득 유럽 국가에서 가장 빈번하였으며 이스라엘, 한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우크라이나에서도 유사 조치가 도입됨

 - ▶ 독일과 이탈리아는 일부 연료에 대한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하여 대부분 소비세를 약 30% 인하함
 - ▶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는 천연가스(에스토니아의 경우 디젤)에 대한 관세를 각각 약 80%와 20%까지 일시적으로 인하함
 - ▶ 이스라엘은 석탄에 대한 세금을 일시적으로 없애고 경유와 휘발유 세율을 약 15% 인하함
 - ▶ 2021년 말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세금을 20% 인하한 한국은 해당 조치의 기간을 연장하고 세율을 2022년 6월까지 30%, 2023년 8월까지 37%로 추가 인하함(2023년에는 휘발유 더 인하된 25% 세율 적용 예정임)
 - ▶ 뉴질랜드는 휘발유 및 도로 사용자 요금을 약 20% 인하함

- ▶ 노르웨이는 연료에 대한 도로 사용세를 인하하고 광유에 대한 세금을 폐지함
 - ▶ 포르투갈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던 부분 환급을 휘발유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세금 세원 근거를 축소함
 - ▶ 스웨덴은 휘발유와 경유 세금을 각각 약 15%와 20% 인하했고 불가리아는 2025년 중반까지 LPG, 천연가스, 전기 소비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함
 - ▶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까지 오랜 기간 유류세를 영세율로 부과했다가 9월에 다시 인하된 세율로 재적용함
- ▣ 저탄소 경제로 빠른 전환을 위해 탄소 배출권 사용이 증가함
- ▶ 2022년에 고소득 국가 중 3개국⁸⁶⁾이 새로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함
 - 오스트리아는 2022년 CO₂ 톤당 30유로⁸⁶⁾에서 시작하여 2025년까지 55유로⁸⁷⁾를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를 포괄하는 국가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도입함
 - 덴마크는 모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더 높고 균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탄소세를 발표함
 - ▶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은 2030년까지 CO₂ 톤당 100유로⁸⁸⁾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
 - ▶ 안도라는 탄화수소에 대해 명목세율 30유로⁸⁹⁾의 환경세(Green Tax)를 도입함
 - ▶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상승을 이유로 탄소세 도입을 연기함
- ▣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3년 10월 1일부로 과도기적 단계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⁹⁰⁾ 시행을 승인함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 집약

86) 2024년 8월 2일 기준 환율 약 4만 4,500원

87) 2024년 8월 2일 기준 환율 약 8만 1,600원

88) 2024년 8월 2일 기준 환율 약 14만 8,000원

89) 2024년 8월 2일 기준 환율 약 4만 4,500원

9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경을 통과해 수입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 관세의 일종임

적이고 탄소 누출 위험이 높은 특정 상품과 일부 투입물의 수입에 우선 적용될 예정임

- ▶ 2026년부터 2034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점진적, 단계적 도입은 현행 EU ETS(유럽위원회)에 따른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와 병행하여 이루어질 예정임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비(非)EU 국가들이 국내 탄소 가격 책정 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탄소 요금의 지리적 불균형을 줄일 수 있음

- ▶ EU는 ‘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도로 운송, 건물 및 기존 시스템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특정 산업 부문의 연료 배출을 다루는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도(ETS)의 시행을 승인함

- ▶ 또한 새로운 사회기후기금을 도입하여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취약 가구를 위한 일시적인 직접 소득 지원, 도로 운송 및 건물 부문 배출을 줄여 취약 가구 소기업 및 운송 사용자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지원 조치 및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임

▣ 2022년 9개 국가에서 탄소세를 인상했으며, 국가의 친환경 전환 및 탄소 중립 계획 지원을 위해 향후 예정된 세율 인상⁹¹⁾ 및 제도 조건을 발표함

- ▶ 캐나다는 탄소 가격을 2022년 CO₂ 톤당 50캐나다달러⁹²⁾ 25%로, 2023년 65캐나다달러⁹³⁾ 30%로 인상했고, 아일랜드는 41유로⁹⁴⁾로 22%, 노르웨이는 761크로네⁹⁵⁾로 21%, 남아공은 2022년 144랜드⁹⁶⁾로 7% 인상함
- ▶ 덴마크는 탄소 가격을 순 물가지수와 연동해 인상했고, 싱가포르는 2024년부터 탄소세를 25싱가포르달러⁹⁷⁾로 4배 인상한다고 발표함

91)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가 탄소세 인상을 발표하고 중간소득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크라이나도 탄소세를 인상함

92) 2024년 7월 31일 환율 기준 약 4만 9,800원

93) 2024년 7월 31일 환율 기준 약 6만 4,800원

94) 2024년 8월 5일 환율 기준 약 6만 1,400원

95) 2024년 8월 2일 환율 기준 약 9만 5,600원

96) 2024년 8월 2일 환율 기준 약 1만 800원

97) 2024년 8월 5일 환율 기준 약 2만 5,800원

- ▶ 콜롬비아도 탄소세 부과 대상에 석탄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석탄에 적용되는 세율을 2025년 2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 ▶ 스웨덴은 기존에 적용하던 탄소세를 제거하여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가 적용되는 열 및 발전소용 연료 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발전용 연료와 같게 조정함
 - ▶ 영국은 전기 요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8년 동안 탄소 가격 지원율을 동결함
- ▣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소비에 대한 세금을 인하함
- ▶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는 전력 소비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함
 - ▶ 독일은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세금 환급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함
- ▣ 소수의 국가에서는 주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
- ▶ 덴마크는 탄소 및 화석 연료 에너지 세율을 인상함
 - ▶ 포르투갈은 2022년 초에 에너지 소비 세율을 인상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영국은 전기와 가스에 적용되는 기후변화부담금(CCL)을 동결하고 2025년까지 가스에 대한 기후변화부담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전기 기후변화부담금은 동결하기로 함
 - ▶ 미국 뉴저지는 연료 소비세를 약 8% 인상함
 - ▶ 탄소세와 연료에 대한 에너지 세율을 인상하는 개혁을 이행한 일부 국가는 에너지 세금 감면을 통한 구제책을 마련하기도 함

〈표 1-III-9〉 에너지 사용세 변경 국가

구분	세율 인상 및 과세 기준 확대		세율 인하 및 과세 기준 축소	
	2021년	2022년 및 이후	2021년	2022년 및 이후
연료, 일부 분야	-	-	-	-
농업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	스웨덴
난방(Heating)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운송(Transport)	핀란드, 영국	-	체코,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연료, 모든 분야	알바니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저지섬, 포르투갈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소세	안도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도라,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	영국, 스웨덴
전기 소비	스웨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네덜란드
VAT/GST (부가가치세)	-	-	-	이탈리아, 폴란드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p. 61

다 전기차 세금 인센티브 동향

- ▣ OECD 고소득 국가에서는 새로운 전기 자동차 세제 혜택 도입이 둔화하였지만,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점점 보편화됨
 - ▶ OECD 국가의 약 3분의 2가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세금 환급 또는 면제를 적용함

- ▶ 저공해 차량 구매 또는 소유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은 고소득 국가에서 여전히 일반적이지만, 이전과 달리 기존 제도의 세제 혜택을 도입하거나 확대한 관할권은 거의 없음
 - ▶ OECD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거의 모든 OECD 국가가 차량 구매,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차량 관련 세금 제도 설계 시 환경 영향(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연비)을 고려함
- ▣ 지난 3년 동안 새로운 추세에 따라 몇몇 고소득 국가는 형평성 및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세제 혜택을 제한하거나 대상을 개선함
- ▶ 스웨덴은 저공해 차량 구매자에게 최대 7만크로나⁹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공해 차량은 소유 첫 3년 동안 추가 자동차세를 부담하던 구매 차량에 대한 기후 보너스 제도를 폐지함
 - ▶ 아이슬란드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전기차를 포함한 신차에 대해 5%의 최저 소비세율을 설정하고 소유 차량세를 두 배로 올림
 - ▶ 영국은 2025년부터 전기 자동차에 자동차 소비세 부과를 발표함
 -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적격 신차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공제 7,500달러⁹⁹⁾(소득 자격 상한), 이전에 소유한 청정 차량에 대한 새로운 소득세 공제, 적격 상용 청정 차량에 대한 새로운 공제를 포함하여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포함함
- ▣ 다수의 중간소득 국가와 신규 고소득 국가는 주로 수입 관세와 소비세를 통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시행하거나 강화함
- ▶ 중국은 전기차 구매 세금 면제를 2023년 말까지 연장함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차량 배기가스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함
 - ▶ 모리셔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에 대한 수입세 및 소비세를 폐지하고 태국은 해당 세금을 인하함
 - ▶ 모리셔스와 태국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마이너스 소비세 제도를 도입함

98) 2024년 8월 2일 기준 환율 약 896만원

99) 2024년 8월 8일 기준 환율 약 1,032만원

- ▶ 르완다는 전기차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 2021년부터 전기차 수입에 관세를 면제했던 튀니지는 2022년에 전기차 충전 장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함
- ▣ 소수의 국가에서는 도로 이용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 ▶ 덴마크는 2025년부터 트럭에 대해 CO₂ 배출량에 따라 차등화된 킬로미터 단위의 도로 이용 요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 네덜란드도 2030년까지 전기차와 화석 연료 차량 모두에 대해 시간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주행 거리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세를 도입하고 기존의 모든 통행료를 대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 일부 고소득 국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동차 세율을 낮추기도 함
 - ▶ 체코는 수송용 연료 소비세 인하와 함께 12톤 이하의 승용차, 버스, 트럭에 대한 도로세를 폐지하고 12톤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EU에서 허용하는 최소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함
 - ▶ 일본은 2023년으로 예정된 자동차 환경 성능 부담금 인상을 미이행함
- ▣ 2022년 항공 관련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변화가 없었음
 - ▶ 영국은 국내선 여행에 대한 새로운 감면율을 도입하고 초장거리 항공편에 대한 감면율을 인상하는 등 항공 여객세 제도를 변경함
 - ▶ 네덜란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승객 1인당 항공세를 7.95유로¹⁰⁰⁾에서 28.58유로¹⁰¹⁾로 거의 4배 인상함

100) 2024년 8월 8일 기준 환율 약 1만 1,966원

101) 2024년 8월 8일 기준 환율 약 4만 3,018원

라 기타 환경 관련 과세 기준

- ▣ 플라스틱 포장재와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은 2022년에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임
 - ▶ OECD 플라스틱 정책 인벤토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개국 중 45개국은 일회용 쇼핑백의 사용 금지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31개국은 기타 일회용 품목의 사용 금지나 세금을 부과함
 - ▶ 콜롬비아와 스페인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 1킬로그램당 0.42유로¹⁰²⁾ 및 0.45유로¹⁰³⁾의 세금을 부과함
 - ▶ EU의 플라스틱 부과금과는 별개로 벨기에에는 포장재 부과금 기반을 확대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보다 제한적인 정의를 채택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 몰디브는 비닐봉지당 약 0.12유로¹⁰⁴⁾, 필리핀은 생산 또는 수입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1킬로그램당 1.70유로¹⁰⁵⁾의 새로운 플라스틱 세제를 도입함
 - ▶ 남아공은 비닐봉지에 적용하는 세율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함
 - ▶ 이탈리아는 설탕 및 플라스틱 세금 시행을 1년 더 연기함
 - ▶ 이스라엘은 2021년 말에 도입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2023년 초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함

102) 2024년 8월 7일 환율 631원

103) 2024년 8월 7일 환율 676원

104) 2024년 8월 7일 환율 1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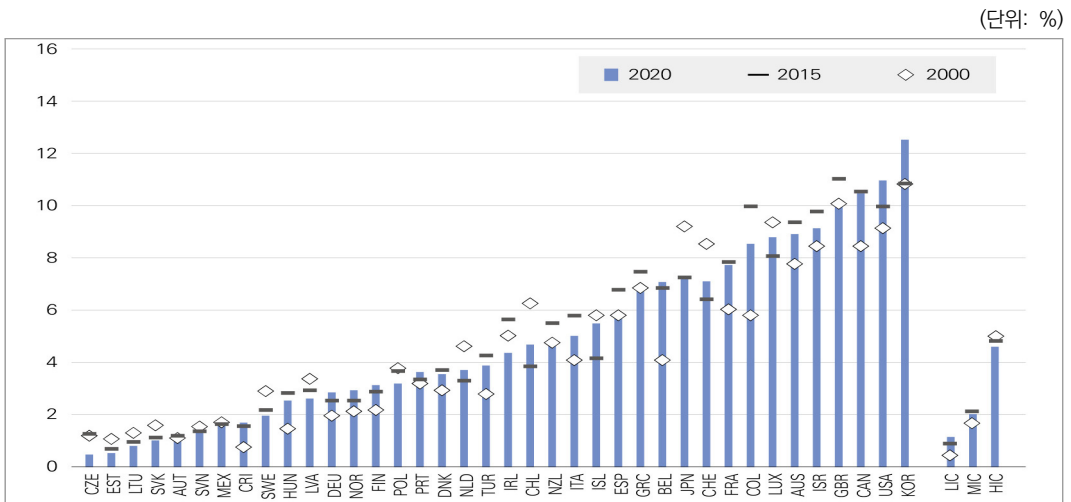
105) 2024년 8월 7일 환율 2,556원

5 재산세(Tax on property)

가 재산세 세수 비중 동향

- ▣ 2020년 OECD 38개국 중 31개국의 재산세는 총세수의 10% 미만을 차지하는데, 다른 세수에 비해 대부분 국가의 재산세 수입 비중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 저·중·고소득 국가의 재산세는 각각 총세수의 평균 1.3%, 2.3%, 5.3%를 차지함
 - ▶ 한국의 재산세 세수는 총세수의 14.2%인 데에 반하여, 체코와 에스토니아는 총세수의 0.6%에 불과하여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임
 - ▶ 지난 20년 동안 OECD 38개국 중 23개국은 총세수 대비 재산세 수입이 증가했으며, 특히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는 재산세 수입이 각 0.8%p와 0.3%p의 비율로 증가함
 - ▶ 동유럽 국가는 일반적으로 총세수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 반하여, 앵글로색슨 국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편임

[그림 1-III-5] 총세수 대비 재산세 수입 비율



나 ▶ 재산세 증세 및 감세 개정 동향

- ▣ 재산세 세수 증대를 위해 다수의 국가는 재산세율 최고 구간을 인상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등 부동산을 주요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인, 법인에 대한 세금 인상을 목표로 함
 - ▶ 세수 증대를 위해 재산세 개혁에 나선 국가가 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세수 증대와 주택 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특히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
 - ▶ 그리스는 2022년 재산세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율 구조 변경, 시장 기반 부동산 가치를 활용한 과세 기준 재설정 등 종합적인 재산세 개혁을 도입함
 - ▶ 아일랜드는 12개월 동안 30일 미만 거주한 주택에 대해 지역 재산세율의 3배를 부과되는 빈집세(Vacant Home Tax)를 도입함
 - ▶ 싱가포르의 연간 총임대료 추정치 기준 연간 가치가 30,000싱가포르달러¹⁰⁶⁾ 이상인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누진 재산세율을 연간 가치의 4~16%에서 6~32%로 인상하여 2024년 시행 예정이며,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누진세율 10~20%에서 12~36%로 인상함
 - ▶ 칠레는 부동산 최고세율을 0.275%에서 0.425%로 인상하였으며, 이는 시장 가치 약 150만달러¹⁰⁷⁾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적용됨
 - ▶ 캐나다는 주거용 부동산의 매입 및 양도 시 노바스코샤주 비거주자에 5%의 세금을 부과하고, 2022~2023 과세연도부터 서스캐처원주와 앨버타주 교육재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재산세를 인상함

- ▣ 일부 정부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은 가계와 기업 지원을 위해 일시적인 재산세 감면 정책을 도입함
 - ▶ 재산세 감면 조치는 주택 매입 지원을 목적으로 주로 한시적 거래세 면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106) 2024년 7월 30일 환율 기준 약 3,091만원

107) 2024년 7월 30일 환율 기준 약 20억 7,800만원

- ▣ 2022년 재산세제 개혁 건수는 2021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순자산(net wealth)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이 더욱 보편화됨
 - ▶ 순자산에 대한 세금(칠레, 콜롬비아, 스페인), 유휴 부동산(아일랜드), 암호화폐 거래 및 이익(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자사주 매입(미국, 캐나다) 등 새로운 재산세 도입이 증가함
 - ▶ 동일 기간 내 고효율 세수 증대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정기 세금을 인상하는 국가가 증가함
 - ▶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로 시행되던 유산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개정은 최근 몇 년간 비교적 적게 활용됨

〈표 1-III-10〉 각국의 재산세 정책 변화

구분	세율 인상 및 과세 기준 확대		세율 인하 및 과세 기준 축소	
	2021년	2022년 및 이후	2021년	2022년 및 이후
정기 부동산세	아일랜드, 캐나다	캐나다, 칠레,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	바베이도스, 캐나다, 영국
동산 및 부동산 거래세	아르헨티나, 독일,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저지섬, 네덜란드, 포르투갈, 튀니지, 미국	몰타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정기 순 재산세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스페인, 노르웨이	-	아르헨티나
유산세, 상속세, 증여세	영국	네덜란드, 칠레	앙골라	그리스

주: 1. 한시적 세금 조치 2. 새로운 세금 3. 개정 발표 4. 2022년 도입되는 개정 사항을 의미함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p. 67

- ▣ OECD 대다수의 국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표준 확대와 과세표준 축소 조치를 모두 도입하는 경향을 두루 보이고 있음
 - ▶ 칠레와 네덜란드는 세수 증대와 공평성 증진을 목표로 2022년 2월 이후 해지된 생명보험 계약에서 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과세 기준 확대함
 - ▶ 네덜란드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30,480달러¹⁰⁸⁾로 4배 가까이 낮췄는데, 자금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되면 적용됨

108) 2024년 8월 7일 환율 약 4,196만원

- ▶ 그리스는 증여 당시 해외에 소재하고 최소 10년 연속 해외 거주한 그리스 국민이 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수혜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연장함
 - ▶ 앙골라는 2022년부터 상속 및 증여세율을 가족 구성원의 경우 10%에서 0.5%로, 비(非)가족 구성원의 경우 15%에서 1%로 인하함
- ▣ 세수 증대를 위해 순 자산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 기반 확대, 한계세율 재도입 등의 조치를 입법하고 해당 내용을 발표함
- ▶ 노르웨이는 순 자산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부유세 과세 기반을 확대함
 - ▶ 콜롬비아는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순 자산세를 도입하였고 2023년에는 0.5%와 1%의 한계세율로 약 64만 2,000달러¹⁰⁹⁾ 이상의 순자산에 적용되는 순 자산세를 영구적으로 재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함
 - 순 자산세 기준을 계산할 때 주 거주지의 가치 약 10만 7,000달러¹¹⁰⁾ 한도로 공제되며, 이와 관련한 개정 사항은 특히 고액 자산가의 자본 수익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 칠레는 세수 증대와 누진성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요트, 자동차, 헬리콥터 등 특정 사치품에 대해 연간 2%의 순 자산세를 영구적으로 도입함
 - ▶ 노르웨이는 2023년 순 자산 170만크로네¹¹¹⁾에서 2천만크로네¹¹²⁾ 사이의 최고세율을 0.95%에서 2021년에는 0.85%였던 세율을 1%로 인상하여 부유세의 누진성을 계속 높임
 - 또한 순 자산세 과세 기준을 확대하여 주식과 상업용 부동산, 고가 1주택 및 2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고 운영 자산의 평가액도 하향 조정함
 - ▶ 스페인은 에너지 위기와 지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과세연도에 고액 순 자산가에 대한 일시적 연대세(Solidarity tax)를 도입하여, 순자산이 300만유로¹¹³⁾이상인 경우 1.7%에서 3.5%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체계를 도입함

109) 2024년 8월 2일 환율 약 8억 8,236만원

110) 2024년 8월 7일 환율 약 1억 4,726만원

111) 2024년 8월 7일 환율 약 2억 1,469만원

112) 2024년 8월 7일 환율 약 25억 2,520만원

113) 2024년 8월 7일 환율 약 45억 609만원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복미

1 미국

가 청정수소생산세액공제 지침(안) 발표

[조세동향 24-01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3년 12월 22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Clean Hydrogen Production Tax Incentives)¹¹⁴⁾ 지침(guidance)을 발표함¹¹⁵⁾¹¹⁶⁾¹¹⁷⁾¹¹⁸⁾
- ▣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는 미국 내 적격생산시설에서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적격 청정수소 1kg당 최대 3달러를 적용함
 - ▶ ‘적격생산시설(qualified clean hydrogen production facility)’이란 2033년 1월 1일 이전 착공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세액공제는 동 시설을 가동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함

114) 26 U.S.C. §45V

115) THE WHITE HOUSE, “Treasury Sets Out Proposed Rules for Transformative Clean Hydrogen Incentives,” 2023. 12. 22., <https://www.whitehouse.gov/cleanenergy/clean-energy-updates/2023/12/22/treasury-sets-out-proposed-rules-for-transformative-clean-hydrogen-incentives/>, 검색일자: 2024. 1. 18.

116)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RS Release Guidance on Hydrogen Production Credit to Drive American Innovation and Strengthen Energy Security,” 2023. 12. 22.,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010>, 검색일자: 2024. 1. 18.

117) IRS, “Treasury, IRS issue guidance on the tax credit for the production of clean hydrogen,” 2023. 12. 22.,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issue-guidance-on-the-tax-credit-for-the-production-of-clean-hydrogen>, 검색일자: 2024. 1. 18.

118) IBFD, “Treasury Department and IRS Propose Clean Hydrogen Production Tax Regulations,” 2023. 12.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8_us_2.html, 검색일자: 2024. 1. 18.

- ▶ ‘적격청정수소(qualified clean hydrogen)’란 수소 1kg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이하인 공정에서 생산된 수소를 의미함
- ▶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에 따라 측정함
 -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GREET 모델¹¹⁹⁾에 따라 결정함
- ▶ 수소 1kg당 세액공제액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짐

〈표 2-1-1〉 온실가스배출량별 청정수소생산세액공제

온실가스배출량	청정수소생산세액공제
4 ~ 2.5kg CO ₂	\$0.60 / kg of H ₂
2.5 ~ 1.5kg CO ₂	\$0.75 / kg of H ₂
1.5 ~ 0.45kg CO ₂	\$1.00 / kg of H ₂
0.45 ~ 0kg CO ₂	\$3.00 / kg of H ₂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야 함
 - ▶ 수소생산업체는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의 구매를 입증할 수 있음

나 디지털자산 보고 관련 과도적(transitional) 지침 발표

[조세동향 24-01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1월 16일,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 보고 관련 과도적(transitional) 지침을 발표함¹²⁰⁾¹²¹⁾

119) GREET 모델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모델임(Department of Energy, Clean Hydrogen Production Tax Credit (45V) Resources, 2023. 12. 19., <https://www.energy.gov/articles/clean-hydrogen-production-tax-credit-45v-resourcesm>, 검색일자: 2024. 1. 18.)

120) IRS, “Treasury and IRS announce that businesses do not have to report certain transactions involving digital assets until regulations are issued,” 2024. 1. 16.,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and-irs-announce-that-businesses-do-not-have-to-report-certain->

- ▶ 재무부와 국세청은 디지털자산 보고에 대한 세부규정을 발표할 계획임
- ▣ 디지털자산 보고 관련 세부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과도적 지침에 따라 납세자는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 미국은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자산 관련 특정 거래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
 - 사업거래와 관련하여 1만달러¹²²⁾를 초과하여 현금성 자산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자는 Form 8300¹²³⁾을 작성하여 15일 이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마약, 테러 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강화함
 - ▶ 세부지침이 제정되기 전까지 보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현금성 자산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없음

다 '간략 안내문 이니셔티브(Simple Notice Initiative)' 진행상황 발표

[조세동향 24-02호]

- ▣ 미국 국세청은 2024년 1월 23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국세청 혁신과제 중 하나인 '간략 안내문 이니셔티브(Simple Notice Initiative)' 진행상황을 발표함¹²⁴⁾¹²⁵⁾
 - ▶ '간략 안내문 이니셔티브'는 국세청이 매년 발송하는 약 1억 7천만 건의 안내문을 간소하고 명확하게 재설계하는 프로젝트임

transactions-involving-digital-assets-until-regulations-are-issued, 검색일자: 2024. 1. 18.

121) Bloomberg, "IRS Issues Crypto Reporting Receipts Transitional Guidance (1)," 2024. 1. 18.,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BNA%200000018d1412d1eaa7fdbc5313530001?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4. 1. 18.

122) 2024년 2월 7일 원화 환산 시 약 1,323만원임

123)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124) IRS, "IRS launches Simple Notice Initiative redesign effort," 2024. 1. 23., <https://www.irs.gov/newsroom/irs-launches-simple-notice-initiative-redesign-effort>, 검색일자: 2024. 2. 27.

125) IBFD, "IRS to Use IRA Funding to Simplify and Clarify Notices Sent to Taxpayer," 2024. 1.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25_us_1.html, 검색일자: 2024. 1. 18.

- 국세청은 먼저 개인납세자 대상 안내문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고 이후 사업체 대상 안내문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임

- ▶ 최근 국세청은 안내문 5071C를 재설계하여 대상 납세자에게 시범 발송함

- 기존 7페이지의 안내문을 2페이지로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꼴, 아이콘 등을 개선하고 QR코드를 이용하여 상세지침을 제공함

- 그 결과 전화상담은 16% 감소하고 온라인 옵션 이용자는 6% 증가함

▣ '간략 안내문 이니셔티브'의 연도별 계획은 아래와 같음

- ▶ (2024년 신고시즌) 국세청은 2023년, 2024년 세금 신고시즌에 맞춰 31개의 안내문을 검토하고 재설계함

- 전투지역에서 복무한 납세자의 세금유예에 대한 안내문, 미제출 신고서의 제출 독려 안내문, 미납세액 잔액과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안내문 등

- ▶ (2025년 신고시즌) 국세청은 개인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일반적인 안내문을 검토하고 재설계할 계획임

- 개인납세자에게 발송되는 통지문 중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약 200개의 안내문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 납세자의 소득·납부세액·소득 및 세액공제 조정에 대한 안내문, 신고내용 오류수정에 대한 안내문, 세금미납 방지를 위한 안내문 등

- ▶ (2026년 신고시즌) 국세청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을 검토하고 재설계할 계획임

라 에너지세액공제 신청 관련 지침 발표

[조세동향 24-02호]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1월 18일, 에너지세액공제(Energy Tax Credits)의 환급 또는 양도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함¹²⁶⁾¹²⁷⁾

126) IRS, "IRS and Treasury reach major milestone implementing key provisions using the IRS Energy Credits Online Elective Pay and Transferability Tool," 2024. 1. 18., <https://www.irs.gov/newsroom/irs-and-treasury-reach-major-milestone-implementing-key-provision>

- 환급 또는 양도하는 경우 동 등록번호를 연간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 2024년 1월 18일 현재, 약 145개 기관이 에너지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40개 지역에 위치한 1,29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등록번호를 요청함
- 1,170개 이상의 프로젝트는 양도를, 110개 이상의 프로젝트는 환급을 선호함

마 2025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4-03호]

- ▣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3월 11일, 약 7조 3,000억달러¹²⁹⁾ 규모의 2025회계연도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대통령예산안¹³⁰⁾을 발표함¹³¹⁾¹³²⁾¹³³⁾
 - ▶ 연방의회가 예산안 심의 권한을 행사하고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음
 - 동 예산안은 2024년 11월에 있을 대선을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예산안을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층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국제조세제도의 개편을 제안함
 - ▶ (법인)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129) 2024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53조 5,400억원임

130) 미국의 연방예산편성과정은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 상하원의 예산결의안 채택 → 상하원의 예산법안 의결 →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되며 매년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됨; 한국은행, 『미국 의회의 「2023 회계연도 예산법안」 의결 내용』, 2022. 12. 28., <http://www.bok.or.kr/portal/bbs/P0002223/view.do?nttId=10074670&menuNo=200082&searchWrd=2023&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 검색일자: 2024. 3. 19.

131) THE WHITE HOUSE,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for Fiscal Year 2025,” 2023. 3. 1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3/11/fact-sheet-the-presidents-budget-for-fiscal-year-2025/>, 검색일자: 2024. 3. 19.

132) THE WHITE HOUSE,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Cuts Taxes for Working Families and Makes Big Corporations and the Wealthy Pay Their Fair Share,” 2023. 3. 1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3/11/fact-sheet-the-presidents-budget-for-fiscal-year-2025/>, 검색일자: 2024. 3. 19.

133) IBFD, “President Biden Proposes Income Tax Hikes for Big Corporations, Middle Class Income Tax Cuts, International Tax Measures in FY 2025 Budget,” 2024. 3.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13_us_3.html, 검색일자: 2024. 3. 19.

-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10억달러¹³⁴⁾ 규모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alternative minimum tax rate)을 15%에서 21%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미국 다국적기업(US multinationals)의 해외소득에 대한 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 (개인) 부자에 대한 증세, 서민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안함
 - 상위 0.01% 억만장자(1억달러¹³⁵⁾ 이상의 자산을 가진 납세자의 소득(income)에 대해 최소 25% 세율로 부과할 것을 제안함
 - 연소득 40만달러¹³⁶⁾ 이상인 고소득자(부부 개별 또는 독신 신고) 및 45만달러¹³⁷⁾ 이상인 고소득자(부부합산 신고)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고소득납세자의 이전사업소득에 대해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¹³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자녀를 양육하는 납세자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확대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하고자 함
- ▶ (국제조세) 국제조세제도의 세제개편을 제안함
 - 주식환매(Stock Back) 세율을 기존 1%에서 4%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피지배외국법인의 과세연도를 미국 대주주의 과세연도와 일치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함
 - 해외발생무형자산소득공제(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deduction, FDII)를 폐지하고자 함
 - 혼성단체(hybrid entities) 매각으로 인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s)를 제한하고자 함

134) 2024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473억원임

135) 2024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48억 3,000만원임

136) 2024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3,940만원임

137) 2024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678만원임

138)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수동적 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별개로 고소득납세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바 IRA에 따라 시행한 신고지원서비스 성과 발표

[조세동향 24-04호]

- ▣ 미국 국세청은 2024년 4월 15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시행한 신고지원서비스의 성과를 발표함¹³⁹⁾¹⁴⁰⁾

 - ▶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기금을 통해 국세청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여 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납세서비스 개선, 납세자 지원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음¹⁴¹⁾
- ▣ 2024년 세금신고 시즌에 개선된 신고지원서비스에는 Direct File 등 무료신고프로그램, 챗봇 등 상담서비스, TAC을 통한 대면서비스, 세금신고기한 자동연장서비스 등이 있음

 - ▶ (무료신고프로그램) 자원봉사자사이트(Volunteer Sites), 다이렉트 신고(Direct File), 무료 신고(Free File) 등 무료신고프로그램을 통해 45만건 이상의 신고서가 국세청으로 접수됨
 - ▶ (상담서비스) 유선상담, 챗봇 상담의 이용건수가 증가함
 - 2023년 5천명의 신규 상담원을 추가 배치한 결과, 2024년 유선상담서비스 수준은 전체 상담 중 15%에 불과했던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88% 이상으로 개선됨
 - 유선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은 2022년 28분, 2023년 4분, 2024년 3분으로 점차 줄어들음
 - 2024년 콜백(callback) 옵션 이용건수는 2023년 180만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0만건으로 전체 유선상담 이용 납세자의 대기시간을 약 140만시간 절약함
 - 2024년 챗봇 이용건수는 2023년 33만건에서 150% 가까이 증가한 83만 2천건임

139) IRS, “IRS delivers strong 2024 tax filing season: expands services for millions of people on phones, in-person and online with expanded funding,” 2024. 4. 15., <https://www.irs.gov/newsroom/irs-delivers-strong-2024-tax-filing-season-expands-services-for-millions-of-people-on-phones-in-person-and-online-with-expanded-funding>, 검색일자: 2024. 4. 19.

140) Bloomberg, “Treasury Hits Goal of 100,000 Taxpayers Using E-File Pilot (1),” 2024. 4. 15.,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BF965B8000000?#cite>, 검색일자: 2024. 4. 19.

141) IRS, “IRS announces sweeping effort to restore fairness to tax system with Inflation Reduction Act funding; new compliance efforts focused on increasing scrutiny on high-income, partnerships, corporations and promoters abusing tax rules on the books,” 2023. 9. 8., <https://www.irs.gov/newsroom/irs-announces-sweeping-effort-to-restore-fairness-to-tax-system-with-inflation-reduction-act-funding-new-compliance-efforts>, 검색일자: 2024. 4. 19.

- ▶ (대면지원서비스) 평일 저녁 및 토요일에 대면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납세자지원센터(TAC)는 2023년 47만 4천명에서 37% 증가한 64만 8천명에게 대면서비스를 제공함
 - 전국 242개의 TAC는 평일 저녁시간대에 11,00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통해 납세자에게 추가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 70개 이상의 TAC는 토요일에도 대면서비스를 제공함
- ▶ (신고기한 자동연장서비스) 1,900만명의 납세자가 신고기한 자동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추정함
 - 단, 납부 의무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세금고지서의 전액 또는 최소금액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함

사 ▶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규정 발표

[조세동향 24-05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5월 3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New Clean Vehicle Credit)의 최종규정을 발표함¹⁴²⁾¹⁴³⁾
 - ▶ 최종규정은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핵심 광물의 함량을 계산하는 테스트 규칙을 제공하고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의 부품사용을 제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실사를 의무화함
 - ▶ ‘추적된 적격 부가가치 테스트(traced qualifying value add test)’를 통해 핵심 광물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
 - 친환경차 배터리에 포함되는 핵심 광물의 50% 이상은 북미지역에서 채굴, 가공, 재

142) IRS, “IRS releases final guidance for certain clean vehicle credits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2024. 5. 3., <https://www.irs.gov/newsroom/irs-releases-final-guidance-for-certain-clean-vehicle-credits-under-the-inflation-reduction-act>, 검색일자: 2024. 5. 16.

143) IBFD, “IRS and Treasury Issue Final Regulations on Clean Vehicle Credits,” 2024. 5.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07_us_2.html, 검색일자: 2024. 5. 16.

활용되어야 함

- 이 테스트를 통해 제조업체는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핵심 광물의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광물의 양을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추적이 불가능한 광물을 제외하는 전환규칙(transition rule)을 마련함
- ▶ 제조업체는 제조한 친환경차가 세액공제 제한 요건인 해외우려기관의 부품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실사를 수행해야 함
 - 해외우려기관이 제조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를 제한함
 - 해외우려기관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관련된 기관임¹⁴⁴⁾

아 자발적 탄소시장(VCM) 원칙 및 성명 발표

[조세동향 24-06호]

- ▣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5월 24일, ‘자발적 탄소시장¹⁴⁵⁾에의 책임 있는 참여에 관한 새로운 원칙 및 정책 성명(Statement of Policy and new Principles for Responsible Participation in Voluntary Carbon Markets)’을 발표함¹⁴⁶⁾¹⁴⁷⁾
 - ▶ 에너지부, 농무부, 재무부 등이 공동 서명함
- ▣ 탄소배출권의 높은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접근 방식, 이해관계자의 참여방식 등 7가지 원칙을 제시함

144) Bloomberg, “New EV Rules in US May See Fewer Cars Qualify for Tax Credits,” 2023. 12. 12.,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new-ev-rules-in-us-may-see-fewer-cars-qualify-for-tax-credits>, 검색일자: 2024. 5. 24.

145)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s, VCM)이란 기업, NGO, 정부 등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시장으로, 각 배출권은 대기에서 감소되거나 제거된 탄소 1톤에 해당함

146) THE WHITE HOUSE,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Principles for High-Integrity Voluntary Carbon Markets,” 2024. 5. 2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5/28/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ew-principles-for-high-integrity-voluntary-carbon-markets/>, 검색일자: 2024. 6. 12.

147) IBFD, “Biden Administration Issues Fact Sheet on Voluntary Carbon Markets Principles for Transaction of Carbon Credits,” 2024. 6.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0_us_3.html, 검색일자: 2024. 6. 12.

- ▶ 다음의 7가지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시장 참여를 유인하고자 함
 - 탄소배출권과 이를 생성하는 활동은 신뢰할 수 있는 대기의 무결성 기준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탈탄소화를 나타내야 함
 - 탄소 크레딧 생성 활동은 환경 및 사회적 피해를 지양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공동의 이익과 투명하고 포괄적인 이익 공유를 지원해야 함
 - 탄소배출권을 사용하는 기업 구매자는 자체 가치 사슬 내에서 측정 가능한 배출량 감축을 우선시해야 함
 - 탄소배출권 사용자는 구매 및 폐기된 탄소 크레딧의 성격을 공개해야 함
 - 탄소배출권 사용자의 공개 요청(public claims)은 폐기된 탄소배출권의 기후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높은 무결성 기준을 충족하는 탄소배출권에만 의존해야 함
 - 시장 참여자들은 탄소시장 무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해야 함
 - 정책 입안자와 시장 참여자는 효율적인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함

2 캐나다

가 탄소 리베이트 인상

[조세동향 24-03호]

- ▣ 캐나다 재무부는 2024년 2월 14일, '탄소 리베이트(the Canada Carbon Rebate, CCR)' 인상을 발표함¹⁴⁸⁾¹⁴⁹⁾
 - ▶ 탄소 리베이트는 연방지원시스템을 적용받는 지역의 탄소세 수익금을 해당 지역의

148)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announces Canada Carbon Rebate amounts for 2024-25," 2024. 2. 14.,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4/02/government-announces-canada-carbon-rebate-amounts-for-2024-25.html>, 검색일자: 2024. 3. 19.

149) IBFD, "Canada Rebrands Carbon Rebate Payments, Increases Rebate Amounts for 2024," 2024. 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19_ca_1.html, 검색일자: 2024. 3. 19.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함

- 연방정부는 독자적인 탄소가격책정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연방지원시스템을 적용하여 탄소세를 부과함

▶ 탄소 리베이트는 지역별로 다르고 4인 가족 기준 리베이트 금액은 <표 2-I-3>과 같음

<표 2-I-3> 2024~2025 지역별 탄소 리베이트

(단위 : CAD¹⁾)

지역	탄소 리베이트
앨버타(Alberta)	1,800(분기별 450)
매니토바(Manitoba)	1,200(분기별 300)
온타리오(Ontario)	1,120(분기별 280)
서스캐처원(Saskatchewan)	1,504(분기별 376)
뉴 브런즈윅(New Brunswick)	760(분기별 190)
노바스코샤(Nova Scotia)	824(분기별 206)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880(분기별 220)
뉴펀들랜드(Newfoundland)	1,192(분기별 298)
래브라도(Labrador)	1,192(분기별 298)

주: 1) 2024년 4월 3일 현재 1CAD는 994.33원

- ▶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탄소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고 탄소 리베이트는 분기별로 지급됨¹⁵⁰⁾
- ▶ 또한 동 발표를 통해 이전 '기후행동인센티브(the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CAIP)'에서 '탄소 리베이트'로 명칭을 변경함
- ▶ 인상된 탄소 리베이트는 2024년 4월부터 적용함

150) Government of Canada, "Canada Carbon Rebate (CCR)," 2024. 2. 13.,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i-payment.html>, 검색일자: 2024. 3. 19.

나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4-04호]

▣ 캐나다 재무부는 2024년 4월 16일,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 (Budget 2024: Fairness for every generation)을 발표함¹⁵¹⁾

▶ (개인소득세·법인세 및 소비세) 신축 임대주택의 자본비용공제율 인상, 청정에너지투자세액공제 시행안, 중소기업대상 탄소 리베이트, 자본소득세율 인상, 소비세 개정 등을 제안함¹⁵²⁾¹⁵³⁾¹⁵⁴⁾

- 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는 신축건물의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 CCA)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¹⁵⁵⁾
-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 청정수소투자세액공제, 청정기술제조업투자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투자세액공제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 세부사항을 명시함
- 적격 중소기업¹⁵⁶⁾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리베이트(Carbon Rebate)를 제안함
- 자본소득(capital gain)이 연간 25만캐나다달러 이상인 개인을 대상으로 자본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66%로 인상하고자 함
- 교육기관의 학생기숙사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소비세(GST) 경감을 제안함
- 담배의 소비세율 인상과 재고 담배에 대한 세금(the cigarette inventory tax) 부과를 제안함

151) Government of Canada, "Budget 2024: Fairness for every generation," 2024. 4. 16., <http://budget.canada.ca/2024/home-accueil-en.html>, 검색일자: 2024. 4. 19.

152) IBFD, "Canada's Budget 2024 Proposes Canada Carbon Rebate for Small Businesses, Other Green Tax Credit Measures," 2024. 4.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4-18_ca_2%23tns_2024-04-18_ca_2, 검색일자: 2024. 4. 19.

153) IBFD, "Canada's Budget 2024 Proposes Increase in Capital Gains Taxes, Modifications to AMT, Other Tax Measures," 2024. 4.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4-18_ca_3%23tns_2024-04-18_ca_3, 검색일자: 2024. 4. 19.

154) IBFD, "Canada's Budget 2024 Proposes Extending GST Relief to Student Residences, Repealing Sales Tax on Face Masks and Shields, Increasing Tobacco Excise Duty Rate," 2024. 4.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4-18_ca_4%23tns_2024-04-18_ca_4, 검색일자: 2024. 4. 19.

155) 예산안 발표일인 2024년 4월 16일 이후부터 2031년 1월 1일 이전까지 착공하고 2036년 1월 1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인상된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함

156) 세금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캐나다 전역에 499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어야 함

캐나다달러¹⁶⁴)로 인상함

- 언론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일시적으로 늘리고, 대상 언론인 1인당 공제금액 한도는 5만 5,000캐나다달러¹⁶⁵)에서 8만 5,000캐나다달러¹⁶⁶)로 상향함
- 2024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5~30%의 청정기술제조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시행함
- 청정수소 투자와 관련하여 적격 프로젝트 자본비용에 대해 최대 40%까지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
- 15% 광물탐사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함
-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¹⁶⁷) 이상인 다국적기업(MNE)을 대상으로 15%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함

라 「2023년 가을경제보고서이행법」에 따라 사업소득세 제정

[조세동향 24-06호]

- ▣ 캐나다는 2024년 5월 28일, 「2023년 가을경제보고서이행법(Fall Economic Statement Implementation Act, 2023)」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제정함¹⁶⁸)
 - ▶ 민간기업회계기준(ASPE) 및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조치, 친환경 기술 세제 지원, 리튬 개발 세제 지원 등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제정함
 - 특정 기업과 신탁의 순 이자 및 금융 비용 공제를 제한하여 OECD 및 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권고에 부합하도록 함
 - 2개 이상 국가의 소득세법 차이를 악용하여 ‘공제·불산입의 불일치(deduction·

164) 2024년 5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8만원임

165) 2024년 5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88만원임

166) 2024년 5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79만원임

167) 2024년 5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1,107억 6,500만원임

168) IBFD, “Canada Substantively Enacts Business Income Tax Measures in Fall Economic Statement Implementation Act,” 2024. 6.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03_ca_1.html, 검색일자: 2024. 6. 12.

- non-inclusion mismatches)'를 야기하는 국경 간 조세회피 구조에 대해 혼성불일치 규칙(hybrid mismatch rules)을 시행함
- 무공해(zero-emission) 기술 제조업체에 대한 세율 인하의 단계적 폐지 시기를 3년 연장하고 대상 활동을 확대함
 - 탄소 포집·활용·저장 장비와 청정 기술 장비에 대해 환급 가능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함
 - 리튬의 탐사 및 개발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이 캐나다 탐사 비용 및 캐나다 개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함
 - 특정 캐나다 법인, 신탁 및 파트너십의 주식이 지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주식 환매의 순 가치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함
 - 실질적 캐나다 지배 민간기업(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CCPC)으로 불리는 기업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함

II 유럽

1 영국

가 에너지 저감형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 발표

[조세동향 24-01호]

- ▶ 영국은 2024년 1월 11일, 에너지 저감형 자재(Energy-Saving Materials)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0%로 경감하는 조치를 발표함¹⁶⁹⁾
 - ▶ 마을회관(village halls)이나 지역 사회를 위한 유사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과 같이 관련 자선(charitable)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건물에 에너지 저감형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될 예정임
 - ▶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저감형 자재뿐만 아니라 아래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적용됨
 - 수열원열펌프(water-source heat pumps)
 - 일부 에너지 저감형 자재와 국가 전력망(National Grid)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전기 배터리
 - 일부 에너지 저감형 자재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망(grid)으로 내보내지 않고 건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버터(diverter)
 - ▶ 이번 조치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또한 주거용 숙박시설(residential accommodation)에 설치되는 에너지 저감형 자재의 경우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이후에는 5%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로 환원될 예정임

169)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Introduces Regulations on VAT Relief for Energy-Saving Materials," 2024. 1.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15_uk_1.html, 검색일자: 2024. 1. 24.

나 2024년 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4-03호]

- ▣ 영국은 2024년 3월 6일, 2024년 봄 예산안(Spring Budget 2024)을 발표함¹⁷⁰⁾¹⁷¹⁾
 - ▶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영국 비거소자(non-domiciled individuals)¹⁷²⁾의 국외 소득 및 이익이 영국으로 송금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영국 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현행 송금 기반 제도(remittance basis of taxation)를 폐지하고 더 간단한 거주지 기반 제도(residence-based regime)로 대체하는 안이 담김¹⁷³⁾¹⁷⁴⁾
 - 기존 제도하에서는, 10년 연속 영국에 거주하지 않았던 개인은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4년 동안 해외 소득 및 그 4년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동 제도는 2025년 4월 6일부터 더 간단한 거주지 기반 제도로 대체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이 영국 거주자가 된 후 4년간 해외 소득 및 이익에 대해 100% 영국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됨
 - 향후 2년간은 경과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하반기 발표 예정임
 - ▶ (법인소득세) 법인세와 관련하여 발표된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4월 6일부터 직원 소득에 대한 1종 국민보험(Class 1 National Insurance)의 기본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함

170) GOV.UK., “Spring Budget 2024,” 2024. 3. 6., <https://www.gov.uk/government/topical-events/spring-budget-2024>, 검색일자: 2024. 3. 25.

171) IBFD, “United Kingdom - Chancellor's Spring Budget Would Abolish Tax Regime for Non-Domiciled Individuals,” 2024. 3.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06_uk_1.html, 검색일자: 2024. 3. 25.

172) 영국 ‘비거소자(non-domiciled)’란 영국 이외의 곳에 영구적 주소지(domicile)를 둔 영국 거주자(UK resident)를 의미함 (자료: GOV.UK., “Tax on foreign income,” <https://www.gov.uk/tax-foreign-income/non-domiciled-residents>, 검색일자: 2024. 4. 9.)

173) GOV.UK., “Spring Budget 2024: Non-UK domiciled individuals policy summary,” 2024. 3. 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budget-2024-non-uk-domiciled-individuals-policy-summary/spring-budget-2024-non-uk-domiciled-individuals-policy-summary>, 검색일자: 2024. 4. 2.

174) IBFD, “United Kingdom - Spring Budget 2024 in Depth: UK Plans to Abolish Tax Exemptions for Non-Domiciles, Proposes Other PIT Measures,” 2024. 3.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08_uk_1.html, 검색일자: 2024. 4. 2.

- 2024년 4월 6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4종 국민보험(Class 4 National Insurance)의 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함
 -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지출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공제 제도(Full Expensing)를 리스 자산(leased assets)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임
 - 2024년 4월 1일부터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관련 등록을 해야 하는 소득 기준을 8만 5,000파운드¹⁷⁵⁾에서 9만파운드¹⁷⁶⁾로 인상함
 - 비 이코노미석 항공편에 대한 항공여객세(air passenger duty)를 인상함
 - 석유·가스회사 등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에너지이익부담금(energy profits levy)은 2028년 3월까지 적용되는 것에서 2029년 3월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될 예정이나, 시장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역사적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폐지될 수 있음
-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에 대한 28%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24%로 인하함
 - 현재 개인에게 적용되는 아동수당 고소득자 부담금(child benefit higher income charge)은 2026년 4월부터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로 변경될 예정임
 - 새로운 개인저축계좌(ISA)인 '영국 ISA(British ISA)'를 통해 투자자가 연간 최대 5,000파운드¹⁷⁷⁾까지 영국 주식에 저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인 ISA 과세 면제 혜택도 함께 주어짐
- ▶ (기타) 법인 및 개인 소득세 이외의 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류세(fuel duty)는 12개월 동안 현행 수준으로 유지됨
 - 주세(alcohol duty)는 2025년 2월까지 동결됨
 - 2026년 10월부터 베이핑(vaping) 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임
 - 담배세(tobacco duty)는 인상될 예정임

175) 2024년 3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394만원임

176) 2024년 3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5,242만원임

177) 2024년 3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7만원임

- ▶ 지침에 따라 영국 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법인을 두고 있고 지난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서 연매출 7억 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은 필라2 추가세액 등록을 해야 함
 - 필라2 추가세액 등록은 필라2 납부세액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함
 - 202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된 그룹의 첫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함
 - 신고법인은 기본적으로 최종 모기업이나, 최종 모기업은 그룹 내 다른 법인을 신고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필라2 추가세액의 첫 번째 신고서는 아래의 기한 내에 신고되어야 함
 - 필라2 추가세액의 첫 회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되어야 함
 - 필라2 추가세액의 첫 회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종료되는 경우, 그룹의 회계기간 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신고되어야 함

2

아일랜드

가 ▶ 납기연장 조세채무 이자율 0%로 인하

[조세동향 24-02호]

- ▣ 아일랜드는 2024년 2월 5일, 납기연장 조세채무(warehoused tax debt)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3%에서 0%로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함¹⁸³⁾¹⁸⁴⁾

181) IBFD, "United Kingdom - Tax Authority Publishes Information on Registration for Pillar Two Taxes," 2024. 5.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22_uk_1.html, 검색일자: 2024. 5. 31.

182) GOV.UK., "Report Pillar 2 top-up taxes," 2024. 5. 20., <https://www.gov.uk/guidance/report-pillar-2-top-up-taxes>, 검색일자: 2024. 6. 3.

183) IBFD, "Ireland - Ireland Reduces Interest Rate on Warehoused Debt to 0%," 2024. 2.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08_ie_1.html, 검색일자: 2024. 2. 26.

- ▶ 아일랜드는 2021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로 조세채무 납기연장 계획(Tax Debt Warehousing Scheme)을 도입하여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적격 납세자의 세액 납기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저금리(연 3%)로 연장한 바 있음¹⁸⁵⁾
 - 당시 조치로 현재 약 17억유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가 미납 상태에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조세채무 이자율은 연 3%에서 0%로 인하됨
- ▶ 또한 아일랜드 국세청은 기존의 연 3%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사업체의 경우 해당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 아울러 납부에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함
 - 일반적인 연장 기간인 3~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납부 약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납부 중단 및 월 납부액 변경 등 추가적 유연성을 제공함

나 아웃바운드 지급에 대한 방어적 조치에 관한 지침 발표

[조세동향 24-04호]

- ▣ 아일랜드는 2024년 3월 26일, 아웃바운드 지급(outbound payments)에 대한 방어적 조치(defensive measures)에 관한 국세청 전자브리프 제096/24호(eBrief No. 096/24)를 발표함¹⁸⁶⁾¹⁸⁷⁾¹⁸⁸⁾

184) 아일랜드 정부, “Minister McGrath announces significant changes to €1.7 billion Tax Debt Warehousing scheme,” 2024. 2. 5., <https://www.gov.ie/en/press-release/eb94d-minister-mcgrath-announces-interest-rate-reduction-to-0-for-tax-debt-warehousing-scheme/>, 검색일자: 2024. 2. 26.

18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1-08호」

186) Bloomberg Tax, “Ireland Tax Agency Issues Guidance on Defensive Measures for Outbound Payments,” 2024. 4. 15.,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CFMHUUG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d3R0cy80MDQ3YTUwM2NlNzE1MjNmYjA2ODA1YjU5MGZkNTkzYyJdXQ=db430d518a8e0862af0715a2ed6dd5daa944e444&criteria_id=4047a503ce71523fb06805b590fd593c&search32=fQvpy_Dkg18YGmdaslyioA%3D%3DXUVcf-G8iQdv1PeHhWPD0pTrUwMh_fle2t1GEKqUG0HoBFxJLrhriRhL2ulaWS892AofInkGIFMr3s7N2B5SWgeHMOOAeJQDvZmKe4UJMa74EVLxeIavsybRWRsrAveULL1udmY0RlpQfjhFsyZ9STlG6W-Dqqgad7xK_-FKQp0hYZZYUyF11P1Y18USNKPY_SeuijtyTlY1EsB2kCuUCoJXSK86pM60UWPtaNtS9tM%3D, 검색일자: 2024. 4. 22.

- ▶ 이자, 사용료 및 배당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웃바운드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방어적 조치에 대한 지침입
- ▶ 동 조치는 아일랜드 거주자 기업 또는 아일랜드 비거주자 기업의 아일랜드 지점이 특정 지역(specified territory)의 거주자인 특수관계기업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기업의 고정사업장에 지급하는 아웃바운드 지급금에 대해 적용됨
 - 특정 지역(specified territory)이란 EU 조세목적 비협조 관할국 목록에 대한 의사회 결론의 부속서 I(Annex I of the Council conclusions on the revised 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에 등재된 지역(listed territory)¹⁸⁹⁾ 및 소득과 이익에 대하여 영(0) 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는 영세 지역(zero-tax territory)을 의미함
- ▶ 지침에 따라 이자 및 사용료 지급에는 20% 세율로, 배당에는 25% 세율로 원천징수세를 적용함
 - 이자 및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9일 이후 체결된 약정에 대해, 배당 지급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지급에 대해 적용됨

다 광물유류세, 천연가스세, 고체연료탄소세 인상

[조세동향 24-06호]

- ▣ 아일랜드는 2024년 6월 7일, 광물유류세(mineral oil tax), 천연가스세(natural gas tax), 고체연료탄소세(solid fuel carbon tax)를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함¹⁹⁰⁾

187) 아일랜드 국세청, “Outbound payments defensive measures,” 2024. 3.,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income-tax-capital-gains-tax-corporation-tax/part-33/33-05-01.pdf>, 검색일자: 2024. 4. 22.

188)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096/24 - Outbound payments defensive measures guidance,” 2024. 3. 25.,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4/no-096-2024.aspx>, 검색일자: 2024. 4. 22.

189) 2024년 2월 20일, EU는 총 12개 관할권을 조세목적 비협조 관할권으로 지정하였음: 미국령 사모아, 피지, 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앵귤라, 괌, 러시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앤티가바부다, 팔라우, 사모아, 바나우투(European Council, “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2024. 2. 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검색일자: 2024. 4. 30.)

190) IBFD, “Ireland - Revenue Raises Taxes on Mineral Oil, Natural Gas, Solid Fuel Carbon,” 2024. 6.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1_ie_1.html, 검색일자: 2024. 6. 14.

- ▶ 아일랜드 재무부는 특정 연료에 대한 광물유류세를 1톤당 7.5유로¹⁹¹⁾ 인상함
 - 기존의 1톤당 48.5유로¹⁹²⁾에서 56유로¹⁹³⁾로 인상됨
- ▶ 또한 천연가스세 및 고체연료탄소세를 1톤당 7.50유로 인상함
 - 기존의 1톤당 48.5유로에서 56유로로 인상됨
- ▶ 금번 인상안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됨

3 스위스

가 국외 원격근무자의 소득세 과세를 위한 초안 채택

[조세동향 24-03호]

- ▣ 스위스 연방의회(federal council)는 국외에 거주하며 원격으로 일하는 근무자의 소득세 과세를 위한 법안의 초안을 채택함¹⁹⁴⁾
 - ▶ 이중과세협약(Double Tax Convention)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곳에 과세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격근무의 경우 고용주가 거주하는 국가가 아닌 근로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과세권이 이동하게 되어 스위스의 세수 손실을 야기함
 - 이 법안은 스위스의 세수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 ▶ 법안 초안에서는 스위스 고용주에 고용되어 인근 국가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스위스에서 과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고자 함
 - ▶ 인근 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을 말함¹⁹⁵⁾

191) 2024년 6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1,089원임

192) 2024년 6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1,724원임

193) 2024년 6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만 2,816원임

194) Switzerland - Federal Council Creates Domestic Legal Framework to Tax Telework Performed by Cross-Border Commuters (06 Mar 2024), News IBFD (accessed 22 Mar 2024).

195) Switzerland Cabinet Approves Draft Bill on Taxation of Teleworking for Cross-Border Commuters Due to Coronavirus,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switzerland-cabinet-approves-draft-bill-on-taxation-of-teleworking-for-cross-border-commuters-due-to-coronavirus>, 검색일자: 2024. 4. 2.

- ▣ 또한 원격근무자 소득에 대해 스위스가 과세권을 갖도록 프랑스, 이탈리아와 조세조약을 개정한 내용을 내국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음

 - ▶ 스위스는 프랑스와 조세조약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원격근무한 시간이 총근무시간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스위스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함¹⁹⁶⁾
 - ▶ 스위스는 이탈리아와의 조세조약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원격근무한 시간이 총근무시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스위스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함¹⁹⁷⁾
 - ▶ 스위스 과세당국에 따르면 현재 스위스 인근 국가에 거주하는 원격근무자는 총 40만명이고, 프랑스에 22만명, 이탈리아에 9만명이 거주함¹⁹⁸⁾

- ▣ 이 법안은 향후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¹⁹⁹⁾ 조세조약상 소득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준과 스위스 국내법을 일치시키게 됨

나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조세동향 24-05호]

- ▣ 스위스 연방의회(Federal Council)는 2024년 5월 15일, 조세에 관한 국제적 자동 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을 암호화자산(crypto assets)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개시함²⁰⁰⁾

196) France; Switzerland - France and Switzerland Agree on Permanent Tax Regime for Teleworking (23 Dec 2022), News IBFD (accessed 2 Apr 2024)

197) Italy; Switzerland - Italy and Switzerland: Agreement on Taxation of Frontier Workers and Amending Protocol Under Tax Treaty Enter into Force (20 July 2023), News IBFD (accessed 3 Apr 2024)

198) Tax on Telework: New Regulations for Cross-border Commuters, 2024, 3, 1., <https://the-swisstimes.ch/tax-on-telework-new-regulations-for-cross-border-commuters/>, 검색일자: 2024. 4. 2.

199) Switzerland Cross Border Teleworking - Tax Implications, 2024, 3, 17., <https://taxnatives.com/switzerland-cross-border-teleworking-tax-implications/>, 검색일자: 2024. 3. 26.

200) IBFD, "Switzerland - Federal Council Launches Consultation on Extending International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to Crypto Assets," 2024. 5.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6_ch_1.html, 검색일자: 2024. 5. 20.

- ▶ 스위스는 조세 투명성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적 자산과 금융기관에 대한 동등한 세 무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를 시행할 계획임²⁰¹⁾
 - 지난 2022년 10월, OECD는 암호화자산의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인 신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발표하였으며, 2023년 11월 48개국이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음²⁰²⁾
- ▶ 스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CARF를 적용할 계획임
- ▶ 금번 의견수렴은 2024년 9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4 프랑스

가 녹색산업 투자 세액공제 시행

[조세동향 24-03호]

- ▣ 프랑스 재무부는 2024년 3월 11일, 녹색산업 투자 세액공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발표하였고, 제도는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됨²⁰³⁾
 - ▶ 녹색산업 투자 세액공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열 펌프 생산 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함²⁰⁴⁾
 - 기본공제율은 20%이며, 투자 대상의 소재지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지역 등의 경우에는 25%, 「조세일반법」 부록에 열거된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40%임

201) 스위스 연방의회, “Federal Council launches consultation on extending international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to cryptoassets,” 2024. 5. 15.,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101030.html>, 검색일자: 2024. 5. 21.

2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3-11호, 2023

203) IBFD, “Tax Credit for Investments in Green Industry Enters into Force on 14 March 2024,” 2024. 3.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13_fr_1.html, 검색일자: 2024. 3. 26.

204) 프랑스,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244 quater I

- 위 공제율에 중간규모의 기업이 투자한 경우에는 10%p, 소규모 기업이 투자한 경우에는 20%p가 추가됨
- 공제 총액은 기업당 1억 5,000만유로²⁰⁵⁾를 초과할 수 없음
-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투자에 한함
- ▶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월 8일, EU State Aid 규칙에 따라 프랑스의 녹색산업 투자 세액공제가 '그린 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승인함²⁰⁶⁾

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제재 도입 및 국제환급지원규정 개정

[조세동향 24-05호]

- ▣ 프랑스 의회는 2024년 4월 24일,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고자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경과기간 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내용 및 국제 환급 지원에 관한 국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킴²⁰⁷⁾
-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과기간(2023년 10월 1일~2025년 12월 31일) 동안 프랑스에 설립된 수입업체가 수입품의 총수량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를 도입함²⁰⁸⁾²⁰⁹⁾
 - 신고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납세자는 2개월 내에 수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납세자에게 공식 통지함

205) 2024년 4월 2일 원화 환산 시 약 2,176억 9,500만원임

206) IBFD, "State Aid: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French Scheme to Support Investment in Green Industr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1-09_e2_1%23tns_2024-01-09_e2_1, 검색일자: 2024. 3. 26.

207) IBFD, "Parliament Adopts Law That Introduces Sanctions for CBAM Transitional Period, Amends International Recovery Assistance Rules," 2024. 4.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4-23_fr_1.html, 검색일자: 2024. 5. 16.

208) 프랑스 「환경법(Code de l'environnement)」 제L229-71조~제L229-76조

209) IBFD, "France Publishes Reminder on CBAM Transitional Phase," 2023. 12.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14_fr_1%23tns_2023-12-14_fr_1, 검색일자: 2024. 5. 16.

- 공식 통지 후에도 납세자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과세관청은 미신고 배출량 1톤당 10유로²¹⁰⁾ 이상 50유로²¹¹⁾ 이하의 과태료(amende)를 부과함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2023년 4월 도입한 것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를 내용으로 함²¹²⁾
- ▶ 조세 및 관세 환급 신청을 위한 국제 상호 지원에 관한 국내 규정을 개정함
 - EU 환급 지침(2010/24)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EU 회원국 간 교환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랑스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환급 또는 예방 조치 적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단, 원래 정보를 공유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예외적인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5

벨기에

가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개정

[조세동향 24-04호]

- ▣ 벨기에 과세관청은 2024년 4월 9일, EU 지침(2020/285)을 국내법으로 입법하여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함²¹³⁾

210) 2024년 5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4,600원임

211) 2024년 5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3,500원임

2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3-5호, 2023, pp. 24~25

213) Bloomberg Tax, "Belgium Gazettes Law Amending Special VAT Regime for Small Businesses," 2024. 4. 12.,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I4IVUO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ZyY2gvcmVzdWx0cy81Y2E2Y2E4MlWJjZjkwZTUzOTUzZjM1NTFmM2U5NDUzOCJdXQ--baf44b5e8a12195f9d56e264670eb87c5b3bef74&criteria_id=5ca6ca81bcf90e53953f3551f3e94538&search32=0N1gDnIa_riLAQHwV4YZMg%3D%3Dklz_pHsOtLaphFPeuBkawwp07f4y7mMPBRJRGDX2SqDTpfEYIDaHXdtFRyx9a_2MmWMyxdN5Tv1eapfj_z5rJSo0aNtwmNw2jkD4JzmUt2AfV6pTTNmTw8yNpM20y1PVF5yy2vvcvFIKki_oCxRQWPflvxBf14Toiq8D5JtV_0Sx2AGUa2BH1GmKWgkK73PLpgs-290

- ▶ 소규모 기업의 적용 기준을 상세히 하고 소규모 기업이 벨기에 외의 EU 회원국에 설립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규정함
 -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연매출 2만 5,000유로²¹⁴⁾ 이하의 기준은 유지됨
 - EU 역외에 설립된 소규모 기업의 연매출이 10만유로²¹⁵⁾ 이하인 경우에도 제도가 적용됨
 - 특정 납세자가 벨기에 외의 EU 회원국에 설립되어 이 제도를 이용하거나 벨기에에 설립되어 다른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됨
 - 신규 운송 수단을 활용한 배송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 특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6

룩셈부르크

가 임시 부가가치세를 적용 종료 발표

[조세동향 24-01호]

-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3년 12월 27일, 임시 부가가치세율은 2023년까지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기존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고 발표함²¹⁶⁾
 -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던 임시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이 종료되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6%에서 17%, 중간세율은 13%에서 14%, 감면세율은 7%에서 8%로 인상됨²¹⁷⁾

cRmQOx1oK_eSWpYnjEzygqn_i-IRs_c4oyU%3D, 검색일자: 2024. 4. 22.

214)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80만원임

215)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730만원임

216) Portail de la fiscalité indirecte, "Circulaire N 812-1," <https://pfi.public.lu/content/dam/pfi/pdf/legislation/tva/circulaires/812-1-tva-taux-applicables-partir-01012024.pdf>, 검색일자: 2024. 1. 24.

217) IBFD, "Luxembourg VAT Administration Confirms End of Temporary VAT Rate Reduction," 2024. 1.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02_lu_

- ▶ 룩셈부르크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중간·감면세율로 구분됨²¹⁸⁾
 - 표준세율은 재화와 용역에 적용되는 기본 부가가치세율임
 - 중간세율은 알코올 함량이 13% 이하인 포도주,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 미네랄, 광고 인쇄물, 상업용 카탈로그 등에 적용됨
 - 감면세율은 난방, 조명 및 모터 연료 공급에 적합한 액화 또는 기체 상태의 가스, 전기 에너지, 난방용 목재, 식물 및 기타 원예 제품 등에 적용됨

나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4-06호]

-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4년 5월 23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기업에 대해 참여소득면제 포기 선택권을 도입하고 최소 순자산세(l'impôt minimum sur la fortune) 관련 내용을 개정함
 - ▶ 참여소득면제, 즉 배당소득에 대한 50% 과세면제 또는 EU 모자회사지침(2011/96)에 따른 과세면제에 대한 포기 선택권을 도입함
 - 과세면제 요건이 보유 자산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최소 120만유로²¹⁹⁾ 이상인 경우에 포기가 가능하며, 최소 10% 지분율 기준으로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음
 - 기존에는 자동으로 면제되었으나 과세면제 혜택의 포기 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가 유연하게 손실 이월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최소 순자산세가 위헌이라는 2023년 10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²²⁰⁾ 기존의 자산 요건을 삭제하고 대차대조표 총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²²¹⁾

1.html, 검색일자: 2024. 1. 24.

218) IBFD, "7.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lu_s_7.1.%23evat_lu_s_7.1., 검색일자: 2024. 1. 24.

219)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억 7,596만원임

220) IBFD, "Luxembourg Constitutional Court: Minimum Net Worth Tax for Companies Is Unconstitutional," 2023. 11.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1-23_lu_1%23tns_2023-11-23_lu_1, 검색일자: 2024. 6. 4.

221) 순자산세는 0.5%의 세율이 적용되며, 최소 순자산세가 부과됨

〈표 2-11-1〉 룩셈부르크 최소 순자산세 개정안

(단위: 유로)

구분	요건	부과세액	
기존 규정	대차대조표 총액이 35만유로 ¹⁾ 이하	535 ²⁾	
	자산의 90% 이상이 금융자산이고 대차대조표 총액이 35만유로 초과	4,815 ³⁾	
	대차대조표 총액이 3,000만유로 ⁴⁾ 초과	32,100 ⁵⁾	
개정 규정	대차대조표 총액 기준	35만유로 이하	535
		35만유로 초과 200만유로 ⁶⁾ 이하	1,605 ⁷⁾
		200만유로 초과	4,815

- 주: 1)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1,892만원임
 2)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만원임
 3)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14만원임
 4)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4억 9,630만원임
 5)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61만원임
 6)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억 6,526만원임
 7)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8만원임

자료: Chambre des Députés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N°8388,”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47/058/294588.pdf>, 검색일자: 2024. 6. 11.; IBFD, “Luxembourg Constitutional Court: Minimum Net Worth Tax for Companies Is Unconstitutional,” 2023. 11.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1-23_lu_1%23tns_2023-11-23_lu_1, 검색일자: 2024. 6. 4. 내용 저자 정리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원천징수와 관련한 전자신고를 2025 과세연도부터 시행함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에 대해 108유로²²²⁾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소득 요건의 범위를 달리 정함

- Class 1a²²³⁾의 개인은 소득이 1만 3,500유로²²⁴⁾에서 2만 8,499유로²²⁵⁾ 사이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
- Class 2²²⁶⁾의 개인은 소득이 1만 3,500유로에서 6만 4,499유로²²⁷⁾ 사이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나, 이 중 공동과세를 선택한 부부 또는 파트너는 1인이 소

222)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만원임

223) 과세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별했거나 64세 이상인 납세자로, 부양가족과 함께 살거나 부부 공동과세에 따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납세자를 의미함

224)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01만원임

225)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25만원임

226) 납세자가 부부인 경우를 의미함

227)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62만원임

득의 7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득이 3만 4,500유로²²⁸⁾에서 6만 4,499유로²²⁹⁾ 사이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

- ▶ 원천징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2025 과세연도부터 전자신고를 해야 함
 - 성과에 따라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 고용주, 임시 근로 계약자, 연금펀드 및 금융 혜택을 지급하는 특정 단체가 송금하는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액 공제 신고
 - 가사, 육아 및 기타 부양 등을 위해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에만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그 의존 정도에 따라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원천징수를 신고

7 독일

가 제4차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법률초안 발표

[조세동향 24-01호]

- ▣ 독일 정부는 2024년 1월 11일 제4차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법률의 초안을 발표하였음²³⁰⁾
 - ▶ 해당 법안은 불필요한 형식적 관료주의로 인한 시민 및 기업 등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비용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발표된 초안에는 세무행정에 필요한 서류의 보관기한 개편, 일부 세무행정절차의 디지털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현행 상법 및 국세기본법상 회계문서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나, 문서보존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여, 「부가가치세법(UStG)」상 회계문서 보존기한에 대한 조항도 개정 예정
 - 현행 「세무자문법(StBerG)」상 세무 대리인이 비정기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신고할 경우(일시적 세금신고 지원의 경우) 서면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전면 전자신고로 개정

228)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115만원임

229)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62만원임

230)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Mehr Entlastung durch das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V," 2024. 1. 11., https://www.bmj.de/SharedDocs/Meldungen/DE/2024/0111_Statement_BEG_IV.html, 검색일자: 2024. 1. 29.

나 '법인세법 개정안(Growth Opportunities Bill)' 의회 최종승인

[조세동향 24-03호]

- ▣ 독일 의회는 2024년 3월 22일 법인세법 개정안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Bill)」을 최종승인함²³¹⁾

 - ▶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2023년 11월 24일 연방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2024년 2월 21일 양원이 협의하여 법인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고, 이번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것임
 - ▶ 부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7억유로 상당의 감세안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3억유로 상당의 감세안을 담고 있음
 - ▶ 이 법안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함²³²⁾
- ▣ 「성장기회법」은 성장기회, 투자, 혁신, 조세간소화, 조세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법인세법 개정내용으로 1) 그룹 계열사 간 금융거래 시 이자비용 공제제한, 2) 결손금 공제율 인상, 3)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공제율 인상, 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률 인상이 있음
- ▣ (그룹 간 차입거래 이자비용 공제제한)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 대출거래 시 납세자가 실제 사업목적의 대출거래임을 입증하고, 이자율 요건을 만족해야 이자비용의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²³³⁾²³⁴⁾

 - ▶ 납세자는 해외 계열사와 대출거래 시 전체 대출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될 것 (debt capacity test)과 사업목적이 대출거래이고 실제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것 (business purpose test)임을 입증해야 함

231) Germany - Federal Council Approves Compromise on Growth Opportunities Bill (22 Mar 2024), News IBFD (accessed 26 Mar 2024)

232) Germany - Growth Opportunities Bill Enters Into Force (28 Mar 2024), News IBFD (accessed 2 Apr 2024)

233) Bloomberg Tax, "Germany Gazettes Law Implementing Growth Opportunities Act," 2024. 4. 1., 검색일자: 2024. 4. 2.

234) EY, "German Federal Council approves amended Growth Opportunities Act bill on corporate tax reform," <https://taxnews.ey.com/news/2024-0676-german-federal-council-approves-amended-growth-opportunities-act-bill-on-corporate-tax-reform>, 검색일자: 2024. 4. 2.

- ▶ 또한, 그룹이 제3자를 통해 차입을 할 경우의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됨(maximum interest test)
- ▣ (결손금 공제율 인상)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결손금 차기이월공제액이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100만유로 초과금액의 60%까지만 결손금 공제를 허용하던 것에서 70%로 인상함²³⁵⁾
 - ▶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00백만유로를 한도로 2년간 소급공제하거나 기한 없이 결손금의 차기이월공제가 가능하며,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는 결손금의 60%만 공제가 가능함²³⁶⁾
- ▣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공제율 인상) 독립적인 임상시험(Independent Contract Research) 기관에 지급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현재 총비용의 60%를 공제하던 것에서 70%를 공제하도록 공제율을 인상함
 - ▶ 연간 300만유로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함
- ▣ (유형자산 감가상각률 인상)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거나 생산한 이동가능한 고정자산(movable fixed assets)에 대해 정률법(declining balance method)으로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 현행 제도에서는 정률법의 상각방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²³⁷⁾
 - ▶ 이번 개정으로 정률법의 감가상각방법을 허용하나 정액법 상각액의 2배를 한도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상각률은 20%를 초과하면 안 됨

235) 상동

236) A. Perdelwitz,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1.8.1, Country Tax Guides IBFD (accessed 2 Apr 2024)

237) A. Perdelwitz,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1.5.1, Country Tax Guides IBFD (accessed 2 Apr 2024)

8

포르투갈

가 단기 임대 목적 부동산 대상 특별부담금 부과 조례 마련

[조세동향 24-01호]

- ▣ 포르투갈 국세청은 2023년 12월 29일 단기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부동산에 적용되는 특별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조례 Portaria n.º 455-E/2023를 게시함²³⁸⁾239)
 - ▶ 특별부담금은 해당 부동산의 부담금 부과 대상 금액에 대해 15%의 비율로 적용되며,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따라 과세 표준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동산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일수록 부담금 부과 대상 금액이 증가함
 - 부담금 부과 대상 금액 계산을 위한 계수는 조례 내에서 별도로 규정함
 - ▶ 단기 임대사업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 성격을 지님
 - 부동산이 단기 임대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거주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이 늘어나, 거주 목적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임

나 2024년 법인 지방세 세율 발표

[조세동향 24-02호]

- ▣ 포르투갈 국세청은 2024년 2월 7일, 2024년 세액 산출 시 사용되는 2023년 법인 지방세 세율(derrama municipal)을 발표함²⁴⁰⁾

238) IBFD, "Portugal Announces Regulations for Calculation of Extraordinary Contribution for Properties Used in Short-term Rental Business," 2024. 1.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1-10_pt_1, 검색일자: 2024. 1. 25.
 239) Portaria n.º 455-E/2023, <https://files.diariodarepublica.pt/1s/2023/12/25004/0006600075.pdf>, 검색일자: 2024. 1. 25.
 240) IBFD, "Portugal - Tax Authorities Announce Corporate Municipal Surtax Rates for 2023,"

- ▶ 포르투갈의 법인 지방세 세율은 각 시(municipal)별로 상이하며, 국세청의 기본 법인세 세율인 21%에 0.1%p에서 1.5%p 사이의 추가 세율을 더하여 적용함
 -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법인세는 과세 금액의 첫 5만유로까지는 17%의 감면 세율이 적용됨
- ▶ 법인 지방세를 부과하는 시는 전년보다 12곳이 늘어났으나, 최고 세율인 1.5%p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는 2곳이 감소함
 - 총 308개 시 중 92개 시는 법인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129개 시는 최고 세율을 부과함²⁴¹⁾

다 소득세율 인하 및 신규 세금 감면 제도 도입 제안

[조세동향 24-04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4년 4월,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규 계획을 발표함²⁴²⁾
 - ▶ 2024년 3월 10일 실시된 총선에 의해 구성된 새 정부의 의증을 천명한 계획으로 볼 수 있음
- ▣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세율을 인하 및 기타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함
 - ▶ 향후 3년간 법인세 세율 현행 21%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세율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0.5~3% 수준으로 인하함
 - ▶ 최대 1개월분 급여 수준의 성과보너스까지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산정 시 공제함

2024. 2.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2-07_pt_1, 검색일자: 2024. 2. 28.

241) Autoridade Tributária e Aduaneira, "IRC-Taxas de Derrma Municipal Incidentes Sobre o Lucro Tributavel do IRC do Periodo Fiscal de 2023," https://info.portaldasfinancas.gov.pt/pt/informacao_fiscal/legislacao/instrucoes_administrativas/Documents/Oficio_circulad_20264_2024.pdf, 검색일자: 2024. 3. 6.

242) IBFD, "Portugal - New Government Proposes Reduction in CIT, PIT Rates; Introduction of New Tax Reliefs," 2024. 4.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4-17_pt_1, 검색일자: 2024. 4. 22.

- ▶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
 -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지던 단기 임대 활동 관련 규제를 폐지함
 - 35세 이하의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이 구매자의 영구 거주지로 사용될 경우 양도세 및 인지세를 면제함
 -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함
- ▣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수개월 내 확정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9 스웨덴

가 담배 및 니코틴에 대한 세금 조정안 제안

[조세동향 24-04호]

- ▣ 스웨덴 재무부는 2024년 4월 15일, 담배와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무연 담배(Snus)에 대한 세금을 인하할 것을 제안함²⁴³⁾
 - ▶ 담배, 시가, 시가릴로, 파이프용 담배 및 기타 담배에 대한 세금을 9% 인상함
 - ▶ 무연 담배에 대한 세금을 20% 인하함
 - ▶ 「담뱃세법」에 무연 담배와 씹는 담배의 정의를 포함함
 - ▶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 액상 및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한 세율을 재계산함
 - 정부는 담뱃세와 특정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한 세금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에 적용되는 세액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며, 이 수치는 당해연도 6월의 일반 물가 수준과 전년도 6월의 물가수준을 비교하여 계산됨
 - ▶ 개정안은 2024년 1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243) IBFD, “overnment Proposes to Adjust Tax on Tobacco and Nicotine,” 2024. 4.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4-16_se_1.html, 검색일자: 2024. 4. 22.

10 노르웨이

가 2024년 예산 수정안 발표

[조세동향 24-05호]

- ▣ 노르웨이 정부는 2024년 5월 14일, 간접세 조치에 관한 국가 예산 수정안을 발표함²⁴⁴⁾

 - ▶ 중고차 판매 및 미군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을 일부 변경함
 - ▶ 노르웨이의 할당량 규제 해상 운송에 대한 CO₂ 세금을 감면할 것을 제안함

- ▣ (중고차 판매에 관한 매입세액 추징 변경사항) 중고차 판매 시 추징되는 매입세액 계산 시, 공제 당시의 가액이 아닌 판매 시의 시장가액을 고려하도록 제안함

 - ▶ 현재 중고차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차 구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해당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차량 구입 후 48개월 이내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공제된 부가가치세(deducted VAT)는 정해진 공제 방식에 따라 추징(charged back)됨
 - 첫 1년 동안은 매월 1/30씩, 그 이후 3년 동안은 1/50씩 추징됨
 - ▶ 2024년 7월 1일부터 공제된 매입세액에 양도 당시의 차량 가액을 곱한 후 공제 당시의 가액으로 나누어 추징세액을 결정하는 새로운 추징 규정이 제안됨
 - ▶ 따라서 제안된 변경안은 정해진 공제액 대신 시장가액을 사용하도록 제안함

- ▣ (미군을 수용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변경사항) 부가가치세 면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르웨이 부가가치세 규정의 변경을 제안함

 - ▶ 노르웨이는 NATO 회원국으로서 외국 군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NATO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준수하고 있음

244) IBFD, “Revised Budget 2024 in Depth: Changes to Reduced Carbon Tax and VAT Charged back,” 2024. 4. 16., 2024. 5.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5_no_2.html, 검색일자: 2024. 5. 21.

- ▶ 또한 노르웨이는 미군과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 ▶ 노르웨이는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미군 도급업자 및 하청업자가 취득한 물건이 미군의 공식 용도인 경우 직접 면제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 ▣ (EU ETS로 인한 해운업 탄소세 감면 제안) 노르웨이의 할당량 규제 해상 운송에 대한 CO₂ 세금을 감면할 것을 제안함
- ▶ 2024년부터 총톤수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EU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에 포함되며, 점차적으로 배출 할당량을 충족해야 함
 - 해당 의무는 국내 및 국제 해상 운송에 모두 적용됨
 - ▶ 이중과세를 피하고 ETS 역외 선박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노르웨이의 할당량 규제 해상 운송에 대한 CO₂ 세금 감면이 도입될 예정임
 - 당초 매년 소급 환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유동성 문제 등의 이유로 직접 면제를 고려하고 있음
 - 면제를 통해 할당량 규제 대상 기업은 등록된 공급업체로부터 인화된 요율로 연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미등록 공급업체로부터 연료를 구입할 경우 환급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음

나 해외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공제 변경 제안

[조세동향 24-06호]

- ▣ 노르웨이 재무부는 2024년 6월 10일, 해외 연금제도에 납입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 초안을 발표함²⁴⁵⁾
 - ▶ 변경의 목적은 영국과 같이 유럽연합 내부와 외부의 다른 국가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함임
 - ▶ 제안된 변경안은 과세소득 공제 규칙의 적용 범위를 유럽경제지역(EEA)뿐만 아니라

245) IBFD, "Norway Proposes Changes to Tax Deductions for Savings in Foreign Pension Schemes," 2024. 6.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2_no_2.html, 검색일자: 2024. 6. 19.

모든 국가로 확대함

- 현재 이러한 권리는 노르웨이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해외 연금제도에 가입한 이력이 1년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유럽경제지역(EEA) 근로자 및 연금제도에만 적용됨
- ▶ 현행법상 공제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의 급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노르웨이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법안 초안에서도 해당 요건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 또는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노르웨이에서의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전체 과세연도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예정임
 - 이는 노르웨이에서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연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
- ▶ 제안된 변경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납세자는 2024년 8월 12일 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11 덴마크

가 2025년 경유세 인상안 발표

[조세동향 24-04호]

- ▣ 덴마크 정부는 2024년 4월 15일, 녹색전환(green transition)²⁴⁶⁾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의 일환으로 경유에 대한 소비세 인상을 발표함²⁴⁷⁾
 - ▶ 경유세 인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13억크로네²⁴⁸⁾의 추가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업, 지역난방, 해양 자연기금, 기후 적응 등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246) 녹색전환은 에너지·산업·모빌리티 등의 탈탄소화를 지칭하는 덴마크의 환경정책을 의미함

247) IBFD, “Government Increases Excise on Diesel for 2025,” 2024. 4.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4-17_dk_1.html, 검색일자: 2024. 4. 22.

248)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8억원임

- ▣ (경유에 대한 소비세) 2025년 1월 1일부터 경유세가 리터당 50크로네²⁴⁹)씩 인상될 예정임

 - ▶ 소비세 인상은 건설 기계뿐 아니라 도로 운송에 사용되는 경유에도 적용될 예정임
 - ▶ 경유세 인상을 통해 2025년 1억 5,000만크로네²⁵⁰)를 추가로 확보하고, 2030년에는 2억 5,000만크로네²⁵¹)의 추가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CO₂ 배출량 30만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경유 차량 등록세) 경유 차량에 대한 추가 등록세를 2025년 및 202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임

 - ▶ 이를 통해 개인 경유 차량 소유자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휘발유 차량 소유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OECD 행정지침에 따라 「최저한세법」 개정 제안

[조세동향 24-05호]

- ▣ 덴마크 조세부는 2024년 4월 30일, 최저한세 규정에 관한 OECD 행정지침을 이행하고 방어적 조치에 직면한 국가 목록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제안서(Lovforslag no. L 186)」를 의회에 제출함²⁵²)

 - ▶ 이 법안의 목적은 덴마크 「최저한세법」이 OECD 모델 규정과 행정지침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임
 - ▶ 따라서 이 법안은 그룹의 국가별 보고서를 근거로 추가세를 0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최저한세법」의 특별 경과 규정을 그룹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 또한 2023년 12월 OECD 행정지침에 따라 2022년 12월 OECD가 합의한 영구적 감면(세이프하버) 적용을 위한 간소화된 계산 규칙을 마련하도록 제안함

249)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80원임

250)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6억원임

251)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5억원임

252) IBFD, "Denmark Proposes to Amend Minimum Taxation Act to Align with OECD Administrative Guidance," 2024. 5.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06_dk_1.html, 검색일자: 2024. 5. 21.

- ▶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대한 덴마크의 방어적 조치 대상 국가 목록을 수정하여 유럽연합의 비협조적 조세 관할권 목록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함
- ▶ 제안된 법안은 2024년 7월 1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다 산업 전반에 통일된 CO₂세 채택

[조세동향 24-06호]

- ▣ 덴마크 의회는 2024년 6월 4일, EU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ETS) 안팎의 모든 산업체에 통일된 CO₂세를 도입하는 두 가지 법안을 채택함²⁵³⁾
 - ▶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70%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 채택된 법안에 따르면 2030년 CO₂ 배출량에 대한 세금 수준은 EU ETS 외부 기업의 경우 CO₂ 배출량 톤당 750크로네²⁵⁴⁾, EU ETS 내부 기업의 경우 CO₂ 배출량 톤당 375크로네²⁵⁵⁾가 될 것임
 - ▶ 광물학적 공정의 2030년 CO₂ 배출량에 대한 세금 수준은 톤당 125크로네²⁵⁶⁾임
 - ▶ 또한 채택된 법안은 CO₂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업이 포집한 CO₂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곧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

253) IBFD, "Denmark Adopts Industry-Wide Uniform CO₂ Tax," 2024. 6.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06_dk_1.html, 검색일자: 2024. 6. 19.

254) 2024년 6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만 9,212원임

255) 2024년 6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4,606원임

256) 2024년 6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 4,868원임

12 핀란드

가 2025~2028년 재정정책 합의 및 세금 인상안 발표

[조세동향 24-04호]

- ▣ 핀란드 정부는 2024년 4월 16일, 30억유로²⁵⁷⁾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 인상안에 합의함²⁵⁸⁾

 - ▶ 2025~2028년 재정정책에 대한 합의에 초점을 맞춘 이번 협상안은 직접세의 공제 축소 및 소비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음

- ▣ (직접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많은 부분을 축소하고, 과세표준 구간 미조정 등 기타 직접세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 ▶ 2025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득 상위 2개 구간은 조정하지 않기로 합의함
 - ▶ 2027년 1월 1일부터 자발적 연금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함
 - ▶ 특정 가사 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1억유로²⁵⁹⁾ 축소함
 -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 근로세액공제(ansiotulovähennys)를 근로소득공제(työtulovähennys)로 대체함
 - ▶ 2026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문화, 스포츠 및 아동복지를 증진하는 특정 적격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 ▣ (간접세) 표준부가가치세율 및 일부 소비세 인상안 등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 ▶ 표준부가가치세율과 보험료 세율을 현행 24%에서 25.5%로 1.5%p 인상함
 - ▶ 사탕, 초콜릿 등 과자류에는 14%로 감면된 부가가치세율 대신 표준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257) 2024년 4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4,229억원임

258) IBFD, "Government Agrees on Financial Policy for 2025-2028 and Announces Tax Increases," 2024. 4.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4-16_fi_1.html, 검색일자: 2024. 4. 22.

259)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71억원임

- ▶ 담배와 청량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함
- ▶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인상함

나 ▶ 소규모 기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시행 지침 법안 국회 제출

[조세동향 24-05호]

- ▣ 핀란드 정부는 2024년 5월 16일,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 제도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2006/112)을 개정하는 2020년 2월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2020/285/EU)을 내국세법으로 이행하는 법률 제안서 HE 50/2024를 발표함²⁶⁰⁾
 - ▶ 다른 EU 회원국에 설립된 소기업도 유럽연합 내 연간 매출액이 10만유로²⁶¹⁾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선택할 수 있음
 - ▶ 핀란드에 설립된 소기업은 유럽연합 내 연간 매출액이 1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른 EU 회원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음
 - ▶ 소규모 기업가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는 특별제도(chapter 14a of AVL)를 폐지함
 - ▶ 매출액이 1만 5,000유로²⁶²⁾를 초과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록은 회계연도 시작일이 아니라 기준액을 초과하는 날에 개시됨
 - ▶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다 ▶ 미술품 등의 부가가치세율 개정 등에 관한 법률에 서명

[조세동향 24-06호]

- ▣ 핀란드 대통령은 2024년 4월 29일, 부가가치세율에 관한 EU 지침(Directives 2006/112/EC) 및 (EU) 2020/285를 개정하는 2022년 4월 5일 이사회 지침 (EU) 2022/542를 내국세법으로 이행하는 법률 제안서 HE 32/2024에 서명함²⁶³⁾

260)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Implementing Directive on VAT Scheme for Small Businesses to Parliament," 2024. 5.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7_fi_1.html, 검색일자: 2024. 5. 21.

261) 2024년 5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812만원임

262) 2024년 5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21만원임

263) IBFD, "President Signs Law Regarding VAT Treatment of Virtual Events and Amending Marg

- ▶ 새로운 법률은 구매자가 핀란드에 있는 경우 특정 가상이벤트 및 활동에 대한 과세를 도입함
 - 특정 문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10%로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은 온라인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에도 적용됨
 - 그러나 국내법에는 가상이벤트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EU 지침에 따라 미술품 등에 인화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미술품 등에는 핀란드의 마진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핀란드는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에 마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마진제도는 과세 거래자가 예술가 또는 그 법적 승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예술품의 공급에도 적용되며,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이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 새로운 법에 따르면 해당 상품에 인화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마진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마진제도의 혜택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화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13 네덜란드

가 2024년 세금 변경 사항 발표

[조세동향 24-01호]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3년 12월 20일, 2024년의 가장 중요한 세금 변경 사항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발표함²⁶⁴⁾

in Scheme for Works of Art, Collectors' Items and Antiques,” 2024. 6.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7_fi_2.html, 검색일자: 2024. 6. 19.

264)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Tax Figure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2_nl_1.html, 검색일자: 2024. 1. 24.

- ▶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자가 거주 주택 귀속 소득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함²⁶⁵⁾
 - ▶ 기업가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공제 및 인센티브에 대해 발표함²⁶⁶⁾
 -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구간 및 면제 기준 금액 등의 사항에 대해 발표함²⁶⁷⁾
 - ▶ 근로소득세 및 환경세 주요 변경사항의 최종 수치를 발표함²⁶⁸⁾
- ▣ (법인세) 필라2 최저한세 도입 외에도, 은행의 최소 자본 요건에 관한 사항을 발표함
-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EU 지침(2022/2533)에 따라 다국적 및 국내 그룹의 이익에 대해 15%의 실효세율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한세제도(Wet minimumbelasting 2024)를 도입하기로 함²⁶⁹⁾
 - 해당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부터 최초 적용됨
 - ▶ 은행의 부채는 재무상태표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할 수 없는데, 해당 비율을 기존 91%에서 89.4%로 1.6%p 인하함
-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의 기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함
- ▶ 일반, 1946년 이전 출생 퇴직자, 1946년 이후 출생 퇴직자에 각각 다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됨

265)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Corporate Tax Change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Tax Credit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2_nl_2.html, 검색일자: 2024. 1. 24.

266)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Deductions and Incentives for Entrepreneu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2_nl_3.html, 검색일자: 2024. 1. 24.

267)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Gift and Inheritance Tax Rates, Exemption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4%23tns_2023-12-22_nl_4, 검색일자: 2024. 1. 25.

268)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Wage Tax, Environmental Tax Figure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5%23tns_2023-12-22_nl_5, 검색일자: 2024. 1. 24.

269) 네덜란드 상원, “Wet minimumbelasting 2024,” https://www.eerstekamer.nl/wetsvoorstel/36369_wet_minimumbelasting_2024, 검색일자: 2024. 2. 16.

〈표 2-11-2〉 2023~2024년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구분 (나이)	2023년(기준)			2024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일반	~ 37,149유로 이하	36.93	-	~ 75,518유로 이하	36.97	-
	37,149유로 초과 ~	49.5	13,719유로	75,518유로 초과 ~	49.5	27,919유로
1946년 이전 출생 퇴직자	~ 38,703유로 이하	19.03	-	~ 40,021유로 이하	19.07	-
	37,149유로 초과 ~	49.5	7,365유로	40,021유로 초과 ~	36.97	7,632유로
				75,518유로 초과	49.5	20,755유로
1946년 이후 출생 퇴직자	~ 37,149유로 이하	19.03	-	~ 38,098유로 이하	19.07	-
	37,149유로 초과 ~	49.5	7,069유로	38,098유로 초과 ~	36.97	7,265유로
				75,518유로 초과 ~	49.5	21,099유로

자료: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Corporate Tax Change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Tax Credit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2%23tns_2023-12-22_nl_2, 검색일자: 2024. 1. 25.

- ▣ (자가 거주 주택 귀속 소득)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귀속 소득은 WOZ value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2024년의 경우 이 비율은 7만 5,000유로²⁷⁰⁾ 이상 131만유로²⁷¹⁾ 이하인 경우 0.35%임

 - ▶ WOZ value는 「부동산가치평가법(Wet Waardering Onroerende Zaken, WOZ)」에 따라 평가된 부동산 가치를 의미함
 - ▶ 귀속 소득이 131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2.35%가 적용됨
- ▣ (기업가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공제 및 인센티브) 기업가 및 자영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투자공제의 최종 수치를 발표함

 - ▶ (소규모 투자공제) 기업가 및 자영업자는 회계연도에 사업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규모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수치를 발표함

270)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890만원임

271)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억 220만원임

〈표 2-11-3〉 네덜란드 소규모 투자공제(kleinschaligheidsinvesteringsaftrek)

연간 총투자액	공제액
~ 2,800유로 이하	-
2,800유로 초과 ~ 67,765유로 이하	투자 소득의 28%
67,765유로 초과 ~ 129,194 이하	19,535유로
129,194유로 초과 ~ 387,580 이하	19,535유로 ~ 129,194유로 초과 투자소득의 7.56%
387,580유로 초과	0

자료: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Deductions and Incentives for Entrepreneu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static/tns_2023-12-22_nl_3%23tns_2023-12-22_nl_3, 검색일자: 2024. 1. 25.

- ▶ (환경투자 공제) 최소 2,500유로²⁷²⁾ 이상을 환경 보호를 위한 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최대 5,000만유로²⁷³⁾의 투자 금액을 한도로 환경투자 소득공제(milieu-investeringsaftrek)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유형에 따라 45%, 36% 또는 27%의 공제율이 적용됨
 - ▶ (에너지 투자 공제) 최소 2,500유로²⁷⁴⁾ 이상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최대 1억 4,900만유로²⁷⁵⁾의 투자 금액을 한도로 에너지 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0%의 공제율이 적용됨
 -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공제) 혁신적인 IT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연구 개발에 연간 500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기존 14,202유로²⁷⁶⁾에서 15,551유로²⁷⁷⁾로 1,349유로²⁷⁸⁾ 인상함
- ▣ (상속세 및 증여세) 확정된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면제 기준 금액을 발표하였으며,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나 취득자산 가액 기준 및 면제 기준금액은 전년 대비 소폭 완화됨
- ▶ (세율) 취득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2024년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발표함

272)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3만원임

273)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26억원임

274)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3만원임

275)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64억 2,995만원임

276)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64만원임

277)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60만원임

278)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6만원임

- 네덜란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로 누진과세되며, 각각의 관계 및 자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됨

〈표 2-11-4〉 네덜란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취득자산 가액	Group I (파트너/자녀)	Group IA (손자녀)	Group II (기타)
~ 152,368유로 이하	10%	18%	30%
152,368유로 초과 ~	20%	36%	40%

자료: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Gift and Inheritance Tax Rates, Exemption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4%23tns_2023-12-22_nl_4, 검색일자: 2024. 1. 25.

- ▶ (면제 기준 금액) 증여세 및 상속세의 부과 대상별로 공제 한도를 조정하였으며, 면제 기준액은 다음과 같음

-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6,633유로²⁷⁹⁾가 공제 가능하며, 18~40세 사이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에게 31,813²⁸⁰⁾유로가 공제 가능하며, 기타 일반 증여의 경우 2,658²⁸¹⁾유로를 공제할 수 있음
- 파트너에게 상속하는 경우 795,156유로,²⁸²⁾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25,187유로,²⁸³⁾ 독립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아동 등의 경우 75,546유로,²⁸⁴⁾ 부모는 59,643유로²⁸⁵⁾ 공제 가능하며,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2,658유로²⁸⁶⁾ 공제 가능함

- ▣ (근로소득세 및 환경세) 고용 비용 규정 및 회사 차량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변경 사항을 발표하고, 항공세 및 CO₂ 세금 등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함

- ▶ (고용 비용 규정) 2024년 업무 관련 비용 제도(werkkostenregeling)²⁸⁷⁾에 따라 적

279)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64만원임

280)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24만원임

281)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6만원임

282)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5,585만원임

283)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61만원임

284)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81만원임

285)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69만원임

286)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6만원임

287) 업무 관련 비용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총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과세 고용 비

용되는 비과세 비용 보상 비율을 40만유로²⁸⁸)까지는 기존 3%에서 1.1%p 감소한 1.9%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18%를 적용하기로 발표함

▶ (회사 차량) 회사 차량에 관한 현물혜택의 최종 수치를 발표하였으며, 2023년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 회사 차량의 사적 사용의 경우 현물 보상으로 간주되어 시장 가치에 따라 평가되어 과세되는데, 이때 과세기준은 일반차량의 경우 카탈로그 가격의 22%이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첫 3만유로²⁸⁹)까지는 카탈로그 가격의 16%임

▶ (항공세) 2024년부터 네덜란드 공항은 항공 운송회사로부터 승객 1인당 기존 26.43유로²⁹⁰)에서 2.62유로 인상된 29.05유로²⁹¹)의 항공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만 2세 미만의 어린이와 네덜란드 공항에서 중간 기착하는 환승 승객에게는 면제가 적용됨

▶ (CO₂ 세금) CO₂ 환산 배출량이 면제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CO₂ 환산 톤당 기존 55.94유로²⁹²)에서 18.23유로 인상된 74.17유로²⁹³)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EU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해당 세금이 면제됨

나 외국인 근로자 세금혜택제도에 대한 급여세 개정 법령 발표

[조세동향 24-01호]

▣ 2023년 12월 29일,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30% 롤링 제도에 관한 급여세 개정 법령을 발표함²⁹⁴)

▶ 30% 롤링 제도는 네덜란드에서 일하기 위해 해외에서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는 급여의 3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네덜란드에서 임시로 근무하는 기업 또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외국인 임원 및 기타

용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288)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8,095만원임

289)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58만원임

290) 2024년 2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7,912원임

291)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만 2,178원임

292) 2024년 2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만 242원임

293)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만 7,699원임

294) News IBFD, "State Secretary for Finance Clarifies Wage Tax Corrections for Expat Regime," 2023. 12.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9_nl_3.html, 검색일자: 2024. 1. 24.

종업원과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사는 네덜란드에서 거의 구할 수 없는 특정 노하우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의 최대 30%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외국인의 연환산 급여가 최소 과세대상 급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임
- 대학 및 지식 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자 및 연구원은 이 급여 요건에서 면제됨

▣ 개정되는 내용은 30% 롤링 적용에 대한 판결 결정의 수정 또는 철회에 대한 조항이며, 변경된 조항에 따라 조사관의 제도 적용에 대한 결정 및 검토 기간 동안, 30% 롤링에 관한 설명(clarification)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됨

- ▶ 30% 롤링을 적용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조사관에게 30% 롤링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기존에는 결정에 따른 사항을 급여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²⁹⁵⁾
- ▶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개정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세 신고 시 30% 롤링을 적용할 수 있음
 - 신청한 기간 동안 롤링이 최종 승인되지 않은 경우, 세금 신고 기한이 만료된 후 제출된 근로소득세 신고서에 대해서는 정정 메시지를 제출하여 정정하여야 함
- ▶ 고용주는 조사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30% 롤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세금 신고 기간이 만료된 기간, 특히 결정에 따라 30% 롤링 자격이 있는 기간의 근로소득세 신고서에 대해서는 정정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이전에 발표된 결정이 새로운 결정으로 수정된 경우, 신고 기간이 만료된 임금 기간에 대해서도 정정 메시지를 사용하여 해당 임금 기간에 30% 롤링을 적용할 수 있음

다 Box 3 과세 정비 법안 개정안 및 2023년 최종 간주소득률 발표

[조세동향 24-02호]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4년 1월 25일, 현행 저축 및 투자소득 과세제도인 Box 3 소득 과세 제도를 개편하는 법안 초안의 수정안과 2023년 최종 간주소득률을 발표함²⁹⁶⁾

295) 네덜란드 정부, “Staatscourant van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https://zoek.officiële bekendmakingen.nl/stcrt-2023-32721.html>, 검색일자: 2024. 2. 16.

296) News IBFD, “Netherlands Amends Draft Bill Overhauling Box 3 Taxation, Changes Treat

- ▶ 개정안은 2023년 9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된 입법 초안의 공개 협의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두 번째 주택(Second Home), 손실보상 및 부동산 평가에 대한 변경사항을 포함함
 - ▶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2024년 여름까지 법안 초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두 번째 주택) 별장과 같은 두 번째 주택을 Box 3의 기타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할 예정임
- ▶ 당초에는 주택 가치가 상승한 경우 간주수익률을 적용하여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할 것임을 발표함²⁹⁷⁾
 - ▶ 납세자의 주 거주지는 Box 1의 근로 및 주거 소득으로 과세됨
- ▣ (손실 보상) 법안 초안에서는 납세자가 Box 3 손실을 미래 및 과거 Box 3 이익과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비용과 복잡성 문제를 이유로 손실환급 규정을 삭제함
- ▣ (부동산 및 특정 주식의 평가) 개정 법안을 통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동산가치평가법(Wet Waardering Onroerende Zake, WOZ)」을 채택하고 다른 범주에 대해서는 해당 날짜의 공정시장가치를 활용할 것을 발표함
- ▶ 법안 초안에서는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과 가족 기업 및 창업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 (외환손익 및 향유권) 외환손익과 향유권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함
- ▶ 법안 초안과 달리 외화표시 은행 계좌의 외환손익은 Box 3에서 과세대상이 됨
 - ▶ 미래 배당금 및 이자 흐름과 같은 향유권(genotsrechten)과 관련된 남용 위험을 완

ment of Second Home, Loss Set Off,” 2024. 1.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29_nl_1.html, 검색일자: 2024. 2.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26_nl_2.html, 검색일자: 2024. 2. 27.
 297) Blueclue, “When do you pay taxes on your second home?,” <https://en.blueclue.nl/news/when-do-you-pay-taxes-on-your-second-home--120/>, 검색일자: 2024. 2. 27.

화하기 위해, 권리의 취득 가격은 더 이상 원래 제안대로 취득연도에 한 번에 공제되지 않고 납세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기간에 걸쳐 분산하여 공제될 것임을 발표함

▣ (간주수익률) 저축 및 투자소득 과세에 사용되는 세 가지 자산 유형²⁹⁸⁾ 중 두 가지인 저축 및 부채에 대한 2023년 최종 간주수익률을 발표함²⁹⁹⁾

▶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적용되는 간주수익률은 저축의 경우 0.92%이고 부채의 경우 2.57%임

- Box 3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으로 저축으로 인한 투자수익 등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은 간주수익률로 계산되다가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됨

- 2023년 잠정 세금 평가의 목적상 설정된 간주수익률은 저축의 경우 0.36%, 부채의 경우 2.57%였음

▶ 확정된 수익률은 2023년 개인 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Box 3 세금을 계산하는데 사용됨

- 2022년 최종 간주수익률은 저축의 경우 0.00%, 부채의 경우 2.28%였음

라 국가별 공개 보고(EU Public CbCR) 지침에 관한 시행령 공포

[조세동향 24-03호]

▣ 네덜란드는 2024년 3월 1일, 특정 사업 및 지점의 소득세 정보 공개에 관한 EU 회계 지침(Accounting Directive: 2013/34/EU)의 개정 지침(2021/2101)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함³⁰⁰⁾

298) 간주수익률이 적용되는 세 가지 자산 유형은 저축, 부채 및 기타자산이며, 기타자산에 대한 2024년 간주수익률은 5.88%로 해당 발표 전 이미 확정된 바가 있음

299) News IBFD, "Netherlands Presents Definitive 2023 Deemed Returns for Savings and Debts in Box 3," 2024. 1.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26_nl_2.html, 검색일자: 2024. 2. 27.

300) IBFD, "Netherlands Gazettes Implementation Decree on 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Directive," 2024. 3.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01_nl_1.html, 검색일자: 2024. 3. 25.

- ▶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적격 다국적기업이 특정 소득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 ▶ 공개 보고의 첫 회계연도는 2024년 6월 22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임
- ▣ (대상 법인) 의무 공개 대상 법인은 과거 연속적인 2개의 회계연도의 총연결 매출이 7억 5,000만유로³⁰¹⁾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기업임
- ▶ 의무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기업은 매년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에 대한 별도의 이익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함
 - ▶ 그룹에 속하지 않은 매출 7억 5,000만유로 이상의 독립기업도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됨
 - ▶ EU 회원국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최종 모회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중간규모 및 대규모 종속기업의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그룹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EU 회원국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네덜란드 지점의 경우, 순매출액이 1,200만유로³⁰²⁾ 이상이면 그룹 전체의 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 (대상 정보) 국가별 보고서에는 총수익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수익 및 종업원 수 등 관련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함
- ▶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는 EU 회원국별로, 그리고 EU 비협조 관할국(EU 블랙리스트 및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별로 보고해야 함
 - ▶ 나머지 관할국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합산하여 공개 가능함

마 세금인상 철회 및 이자공제 규정 완화 선언문 발표

[조세동향 24-05호]

- ▣ 네덜란드 4개 정당은 2024년 5월 16일 현재 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임기를 뒷받침할 원칙과 주요 정책을 명시하는 26페이지 분량의 선언문(hoofdlijnenakkoord)을 발표함³⁰³⁾

301) 2024년 3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884억원임

302) 2024년 3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4억원임

303) IBFD, "Aspiring Coalition Government Manifesto Reverses Tax Increases, Relaxes Interest Deductibility Rules," 2024. 5.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7_nl_1.html, 검색일자: 2024. 5. 21.

- ▶ 순이자비용 공제한도 규정을 완화하여, 공제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p 상향함
- ▶ 2025년부터 상장기업 자사주 (재)매입에 대한 배당금 원천세 부과 계획을 철회함
- ▶ 중소기업 이익 면제율을 12.7%에서 12.03%로 축소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철회함
- ▶ 중간 소득층을 위한 세 번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도입함
- ▶ Box 2 소득의 최고세율 인상을 33%에서 31%로 일부 역전함
- ▶ Box 3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부분적으로 취소함
- ▶ 30% 롤링 제도의 추가 제한 또는 폐지 가능성을 검토함
- ▶ 도박세를 기존 30.5%에서 37.8%로 7.3%p 인상함
-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함
- ▶ 에너지 세금 인상계획을 철회함

14 그리스

가 기후회복세(Climate Resilience Tax) 시행

[조세동향 24-01호]

- ▣ 그리스 국세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호텔 등 객실 이용에 대한 기후회복세(Climate Resilience Tax) 부과를 발표함³⁰⁴⁾
 - ▶ 그리스 정부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호텔 객실 등 사용 관련 기후회복세(Climate Resilience Tax) 부과를 발표함
 - ▶ 숙박시설을 이용한 객실 소비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되는 해당 세금은 각 숙박시설의 공식적인 분류 등급에 따라 일일 사용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며 기간별로 다르게 부과될 예정임

304) IBFD, "Greece Establishes Rates for Levy of Climate Resilience Tax on Rooms, Apartments," 2024. 1.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08_gr_1.html, 검색일자:2024. 1. 17.

- 이는 숙박세(Accommodaion tax)를 한 단계 강화한 세금³⁰⁵⁾으로 관광객이 머무는 숙소에서 직접 지불하여야 함
- 단, 무료 숙박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후회복세 면제

〈표 2-11-5〉 그리스 기후회복세 부과액

일자	시설	세금	
3~10월 일일 기후회복세 (Climate Resilience Tax per day)	호텔	1~2성급 EUR 1.50 (약 2,100원)	
		3성급 EUR 3.00 (약 4,300원)	
		4성급 EUR 7.00 (약 10,000원)	
		5성급 EUR 10.00 (약 14,300원)	
	단기 임대를 위한 객실이나 아파트 (Furnished rooms or apartments for short-term lease)		EUR 1.50 (약 2,100원)
	단기 임대 부동산 (Properties offered through short-term leasing)		EUR 1.50 (약 2,100원) (80㎡ 초과 EUR 10.00 약 14,300원)
11~2월 일일 기후회복세 (Climate Resilience Tax per day)	호텔	1~2성급 EUR 0.50 (약 720원)	
		3성급 EUR 1.50 (약 2,100원)	
		4성급 EUR 3.00 (약 4,300원)	
		5성급 EUR 4.00 (약 5,700원)	
	단기 임대를 위한 객실이나 아파트 (Furnished rooms or apartments for short-term lease)		EUR 0.50 (약 720원)
	단기 임대 부동산 (Properties offered through short-term leasing)		EUR 0.50 (약 720원) (80㎡ 초과 EUR 4.00 약 5,700원)

주: 2024년 2월 1일자 환율 기준.

자료: IBFD, "Greece Establishes Rates for Levy of Climate Resilience Tax on Rooms, Apartments," 2024. 1.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08_gr_1.html, 검색일자: 2024. 1. 17. 참고로 저자 작성

305) 기존 숙박세를 부과되지 않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기 임대는 기후회복세 부과 대상이 됨

15 오스트리아

가 2024년 세법 개정안(Abgabenänderungsgesetz 2024) 발표

[조세동향 24-06호]

- ▶ 오스트리아 정부는 EU의 부가가치세 지침 Council Directive(EU) 2020/285를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국경 간 면제 옵션 도입 예정임을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함
 - 면제 신청 조건은 사업체의 EU 전체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기준 10만유로³⁰⁶⁾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 매출 또한 1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오스트리아 외의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도 적용될 예정임³⁰⁷⁾
- ▶ 그 외 자선단체 식품 기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도입 및 소기업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 제도 한도를 3만 5,000유로³⁰⁸⁾에서 4만 2,000유로³⁰⁹⁾로 인상할 예정임

16 스페인

가 횡재세 연장 등 세금조치 발표

[조세동향 24-01호]

- ▣ 스페인 정부는 2024년 12월, 다양한 세금조치를 발표함³¹⁰⁾

306) 2024년 6월 14일 환율 기준 약 1억 4,800만원임

307) The Parliament of Austria, Abgabenänderungsgesetz 2024 - AbgÄG 2024 (338/ME), <https://www.parlament.gv.at/gegenstand/XXVII/ME/338>, 검색일자: 2024. 6. 14.

308) 2024년 6월 17일 환율 기준 약 5,175만원임

309) 2024년 6월 17일 환율 기준 약 6,210만원임

310) IBFD, "Government Extends Windfall Tax on Energy Companies, Banks to 2024; Announces Progressive Phase-out of VAT Reduced Rates, Other Tax Measures," 2023. 12.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9_es_1%23tns_2023-12-29_es_1, 검색일자: 2024. 1. 18.

▶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함임

▣ 동 발표에는 횡재세의 연장, 소득세의 세제혜택제도 연장, 부가가치세 및 전기세의 인하된 세율 단계적 조정, 부유세의 무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김

▶ (횡재세) 횡재세(windfall tax)를 2024년까지 연장함

- 스페인은 2022년 12월, 에너지회사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임시 횡재세를 제정함
- 에너지회사의 경우 순 매출액의 1.2%, 금융기관의 경우 순 이자소득 및 순 수수료의 4.8%를 횡재세로 부과함

▶ (소득세)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는 개인의 주택 건설작업에 대한 공제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함

- 스페인은 2021년 10월, 동 주택 건설작업에 대해 연간 최대 5,000유로³¹¹⁾의 개인 소득세 공제제도를 임시로 도입함

▶ (부가가치세 및 전기세) 식품 및 에너지 등 특정 필수품목에 적용해온 부가가치세 및 전기세 세율 인하를 2024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함

-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한 천연가스의 공급, 수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024년 3월 31일까지 10%로 인상함
- 기본식품(기존 4%→인하 0%)과 오일 및 파스타 제품(기존 10%→인하 5%)의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21%에서 5%로 인하한 천연가스 및 연탄과 딸감용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의 공급, 수입 등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은 2024년 6월 30일까지 10%로 인상함
- 한시적으로 21%에서 5%로 인하한 전기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024년 한 해 동안 10%로 인상함
- 한시적으로 11%에서 0.5%로 인하한 전기세율은 2024년 3월 31일까지 2.5%, 2024년 6월 30일까지 3.8%로 인상함

311) 2024년 2월 7일 원화 환산 시 약 714만원임

- ▶ (부유세) 고액자산가에 대한 연대부유세(Solidarity Wealth Tax)를 무기한 연장함
 - 부유세는 300만유로³¹²⁾를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함

나 DAC 7 채택

[조세동향 24-02호]

- ▣ 스페인은 2024년 1월 30일, DAC 7을 채택하는 법령을 승인함³¹³⁾³¹⁴⁾
 - ▶ 동 법령은 유럽연합의 조세행정협력지침인 DAC 7을 이행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2024년 2월 1일 발효됨
 - ▶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예외자³¹⁵⁾를 제외하고 디지털플랫폼 운영자는 사용자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함
 - ▶ 또한 동 법안에 따라 OECD 모델 규칙에 따른 정보 자동 교환을 위해 「다자간 금융 정보 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을 이행해야 함
 - 세무당국은 다자간 협정을 통해 EU 회원국 또는 파트너 국가³¹⁶⁾와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임

312) 2024년 2월 7일 원화 환산 시 약 42억 8,640만원임

313) Bloomberg, "Spain Adopts Information Reporting Rules for Digital Platforms," 2024. 2. 26.,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4BC1BMS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l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ZyY2gvcmlvZdWx0cy81YTc1NzUzMWE4MzFjZDQ5ZGJjN2MyMDg3YjYwMjEzNyJdXQ-6cfe8cad0ba9cd308cd3d0bf2ef712e3ab8c5825&criteria_id=5a757531a831cd49dbc7c2087b602137&search32=d-Rtlyaq_lzBrCwvutWRuA%3D%3D2RvM_BfCbcwkJeF9CGHmfwt2iAo4s6zrQCWRFAYujyMRB83YP0DavHBGJzk_2G7p_4fp9KU0KEw9TPJwS_8dq_cr3FyBAVG4C2zi6lPsshzAcIsGmV-dKqg0P6-bRFAfiCW-bCL_F2xWSLI6B1alB1uNTwPvQZAKcOZLtCtSTFv1v_TPGyJAmYhq021tn_NuE5Zy3ZwHwHcLcxOrsFrhoX_hUtdMbhW840UZgvJNEafEzAoP8f-idXe1Y4otoMGU_4O4AeTqiVk1HJC6-WWAjET8aAMdc4oH2yavQfH2yYv4GU-ZroHxdyl_zjFPrfNUYzb18fNO7pG5a-LEMPjJw%3D%3D, 검색일자: 2024. 2. 27.

314) IBFD, "Government Approves DAC7 Regulations Covering Due Diligence, Reporting Obligations of Digital Platforms," 2024. 2. 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2-02_es_2%23tns_2024-02-02_es_2, 검색일자: 2024. 2. 27.

315) 국가기관, 상장기업, 비정기판매자(연간 총 2,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30건 미만의 상품판매거래를 수행하는 자)

316) 스페인과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또는 기타 법적 수단을 체결한 관할권을 의미함

다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시행 법안 승인

[조세동향 24-06호]

- ▣ 스페인은 2024년 6월 4일,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를 시행하는 법안을 승인함³¹⁷⁾³¹⁸⁾
 - ▶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회계연도의 순 매출액이 연간 7억 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MNE) 그룹 또는 대규모 국내 그룹에 15%의 최저 실효세율을 부과하도록 국내법으로 규정함
 - ▶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경우 보완세(Impuesto complementario)³¹⁹⁾를 징수함
 - 보완세는 2022년 발효된 최저 법인세율인 15%와 양립할 수 있음³²⁰⁾
 - DMTT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자회사의 소득을 얻는 경우 1차 보완세(Impuesto complementario primario)³²¹⁾를 모회사에 부과함
 - 스페인에 기반을 둔 MNE 그룹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얻는 경우 2차 보완세(Impuesto complementario secundario)³²²⁾를 스페인 내 자회사에 부과함

317) La Moncloa, “Referencia del Consejo de Ministros,” 2024. 6. 4., <https://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ferencias/Paginas/2024/20240604-referencia-rueda-de-prensa-ministros.aspx#empresas>, 검색일자: 2024. 6. 12.

318) IBFD, “Council of Ministers Approves Bill Implementing Minimum Taxation Directive (Pillar Two),” 2024. 6.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0_es_1.html, 검색일자: 2024. 6. 12.

319) 적격소재국 추가세(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

320) 보완세는 조정된 회계 이익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는 지침에 의해 설정된 매개변수로 계산되며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지만 법인세는 스페인의 과세기준에 따라 결정됨

321) IIR(income inclusion rule)

322) UTPR(undertaxed profits rule)

17 이탈리아

가 에너지 절약기업의 투자금액 세액공제 인상

[조세동향 24-03호]

- ▣ 이탈리아는 2024년 3월 2일 에너지절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기업의 투자금액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안(Law Decree No. 19/2024)을 승인함³²³⁾

 - ▶ 현재 에너지절약기업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에너지절약을 많이 할수록 세액공제율을 높이도록 개정할 것임

- ▣ 이탈리아 거주기업 또는 이탈리아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기업이 202~2025년 중 신규로 구입한 적격 유·무형 자산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함

 - ▶ 적격유형자산은 시설, 컴퓨터 시스템 또는 센서로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계, 재료 및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생산을 하기 위한 설비, 금속 및 기타재료의 플라스틱 변형기계 등 각종 기계 및 장비 등을 포함함³²⁴⁾
 - ▶ 적격무형자산은 3D설계, 모델링과 같은 제품 설계, 시뮬레이션, 실험 등 품질 보증 및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함³²⁵⁾

-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액공제율은 에너지 절약정도 및 투자금액에 따라 상이함(〈표 2-II-6〉 참조)

 - ▶ 현행 규정에서는 생산시설에서 3%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생산과정에서 5%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5%, 15%, 35%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323) Italy - Italy Introduces Tax Credit for Investments Achieving Energy Savings (05 Mar. 2024), News IBFD (accessed 27 Mar 2024).

324) 적격유형자산은 Annex A of Law 232/2016에 명시되어 있음, <https://www.agenziaentrate.gov.it/portale/documents/20143/2254661/Allegato+A+della+legge+232+del+2016.pdf/b752d9a1-2886-2473-075d-d68f9598cf90>, 검색일자: 2024. 4. 4.

325) 적격무형자산은 Annex B of Law 232/2016에 명시되어 있음, <https://www.agenziaentrate.gov.it/portale/documents/20143/2254661/Allegato+B+della+legge+232+del+2016.pdf/759945e3-1d03-eb36-3b3a-d3572c9c4284>, 검색일자: 2024. 4. 4.

- 투자금액 250만유로까지는 35%, 250만유로 초과 1,000만유로 이하는 15%, 1,000만유로 초과 5,000만유로 이하까지는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시설에서 6%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생산과정에서 1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우 10%, 20%, 40%의 인상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투자금액 250만유로까지는 40%, 250만유로 초과 1,000만유로 이하는 20%, 1,000만유로 초과 5,000만유로 이하까지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 또한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우(생산시설에서 10% 이상의 에너지 절약, 생산과정에서 15% 이상 에너지를 절약) 15%, 25%, 45%의 인상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투자금액 250만유로까지는 45%, 250만유로 초과 1,000만유로 이하는 25%, 1,000만유로 초과 5,000만유로 이하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표 2-11-6〉 이탈리아 에너지절약기업 세액공제율

구분	현행규정	개정된 내용	
세액공제 요건	- 생산시설에서 3% 이상 - 생산과정에서 5% 이상	- 생산시설에서 6% 이상 - 생산과정에서 10% 이상	- 생산시설에서 10% 이상 - 생산과정에서 15% 이상
~250만유로 이하	20%	40%	45%
250만유로 초과 ~1천만유로 이하	10%	20%	25%
1천만유로 초과 ~5천만유로 이하	5%	10%	15%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됨

나 단순화된 물류구역(ZLS)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도입

[조세동향 24-05호]

▣ 이탈리아는 2024년 5월 7일, 단순화된 물류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령 제60/2024호를 발표함³²⁶⁾

326) IBFD, "Italy Introduces Tax Credit for Investments in Simplified Logistics Zones," 2024. 5.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5_it_1.html,

- ▶ 2024년 5월 8일부터 2024년 11월 15일 기간 동안 단순화된 물류구역(Zone Logistiche Semplificate, ZLS)에서 신규사업에 필요한 적격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함
 - 지역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의 투자세액공제를 ZLS로 확대 적용하는 것임³²⁷⁾
- ▶ 적격자산이란 ZLS 내에 위치한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토지 및 적격사업용 부동산을 의미함
- ▶ 법령 제60/2024호는 2024년 5월 8일 발효되고 공포 후 60일 이내 의회에서 법률로 전환될 예정임

검색일자: 2024. 5. 16.

327) Presidenza del Consiglio dei Ministri, Festa dei Lavoratori del Primo maggio, il videomessaggio del Presidente Meloni, 2024. 5. 1., <https://www.governo.it/it/articolo/festa-dei-lavoratori-del-primo-maggio-il-videomessaggio-del-presidente-meloni/25550>, 검색일자: 2024. 5. 27.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 일본

가 2024년 세금 개혁 법률 및 규정 공포

[조세동향 24-04호]

- ▣ 일본 정부는 2024년 3월 28일 의회에서 2024년 세금 개혁 패키지 법안이 통과된 후, 2024년 세금 개혁법과 관련된 정부 규정 및 장관 규칙을 2024년 3월 30일 관보에 공포함³²⁸⁾
- ▣ 「법인세법」상 주요 개정 사항은 인재촉진세제의 조정, 전략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이노베이션박스세제 창설, 교제비의 손금불산입제도 제외조치 확대 등이 있음³²⁹⁾

 - ▶ 인재촉진세제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증가비와 여성 육아 지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함
 - ▶ 전략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이노베이션박스세제를 도입하여 전략 분야에 대한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무형자산에 대해 국내 투자를 장려함
 - 전략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철강, 친환경 화학,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반도체(마이크로·아날로그 반도체) 등 5개 분야 관련 법인에 대해 판매 수량에 따라 세액 공제를 실시함
 - 이노베이션박스세제는 무형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내국법인

328) IBFD, “Japan Promulgates 2024 Tax Reform Laws and Regulati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4-02_jp_1.html, 2024. 4. 2., 검색일자: 2024. 4. 22.

329) 墨田区錦糸町の会計事務所, “超速報! 令和6年度(2024年度) 税制改正大綱を徹底解説!,” <https://ampersand-tax.jp/%E8%B6%85%E9%80%9F%E5%A0%B1%E4%BB%A4%E5%92%8C%EF%BC%96%E5%B9%B4%E5%BA%A62024%E5%B9%B4%E5%BA%A6%E7%A8%8E%E5%88%B6%E6%94%B9%E6%AD%A3%E5%A4%A7%E7%B6%B1%E3%82%92%E5%BE%B9%E5%BA%95%E8%A7%A3%E8%AA%AC/>, 2023. 12. 15., 검색일자: 2024. 4. 29.

등이 특정 특허(특허권,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양도·대출을 실시한 경우,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정의 과세 소득의 30%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임

- 교제비손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교제비 등에서 제외되는 5,000엔 이하 음식비 범위에 대해, 금액 기준을 1인당 5,000엔 이하에서 10,000엔 이하로 높임

▣ 「소비세법」상 플랫폼 과세를 도입하여 해외 판매자가 아닌 중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와 일본 소비자 사이의 국가 간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책임을 지게 함

- ▶ 국외 사업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 역무 중,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매개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소비세 납부 의무를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

▣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하여 2023년에 발표된 추가 OECD 지침을 일본의 「글로벌 최저한세법」에 반영함

- ▶ 관련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산입규칙(IIR)을 재검토하며 외국 자회사 등이 소재지 국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국내 최저한추가세액(QDMTT)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재지 국가에서의 소득산입규칙(IIR)의 적용이 면제되는 세이프하버의 도입 및 정보신고제도 제공사항의 재검토 등이 해당됨

2 중국

가 중국 내 상장회사 스톡옵션 행사 관련 개인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조세동향 24-05호]

- ▶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장회사가 개인에게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hares)의 보상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스톡옵션 수령일로부터 최대 36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음

- 단, 납세자가 36개월 이내 사직하는 경우 퇴사일 이전까지 납부 의무 세금을 전액 납부할 의무가 있음
-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이 행사되었지만 개인 소득세가 전액 미납된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가능함

3

홍콩

가 ▶ 홍콩 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거래 이익 세율 5% 제한

[조세동향 24-04호]

- ▣ 홍콩 정부는 현지 특허 시스템을 통한 더 많은 특허 출원을 장려하고 최초 부여 특허 시스템(Original grant patent, OGP)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2025년 예산 내 특허박스(Patent Box) 혜택인 지식재산권 거래 이익세율 감면 도입을 포함하여 입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4월 10일 입법 상정 예정임
- ▶ 홍콩 내 일반적인 이윤에 부과되는 세율인 16.5%에 비해 지식재산권(IP) 거래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은 비교적 낮은 5%로 설정될 예정
- ▶ 해당 특허박스 혜택을 위해서는 홍콩 내 법적 보호를 위한 홍콩 내 특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최초 부여 특허 시스템(OGP) 또는 단기 특허(Short term patent, STP)에 대한 신청 또는 허가가 있어야 함
- 단기 특허의 경우 승인 후 추가 실질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4 싱가포르

가 2024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4-02호]

- ▣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 원칙에 따른 글로벌 최소 법인세 체계 국제표준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함³³⁰⁾

 - ▶ 2025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 모회사가 있는 연간 연결 수익 7억 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MNE, Multinational Enterprise)의 해외 이익에 적용되는 소득에 최소 유효세율 15%를 적용할 예정임

- ▣ 연구개발(R&D) 활동 지원을 위한 법인세 환급형 투자 세액공제(Refundable Investment Credit, RIC) 제도 도입³³¹⁾

 - ▶ 일정 조건을 충족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미납액 상계를 위해 최대 10년 동안 적격 지출의 최대 50%에 대해 환급형 투자 세액공제(RIC) 신청 가능함
 - ▶ 미사용 환급액은 수령조건 충족일로부터 4년 이내에 현금으로 회사에 환급신청 가능
 - ▶ 지원 조건이 되는 적격 프로젝트 및 적격 지출은 고부가가치로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시는 아래와 같음
 - ▶ ① 새로운 생산 역량 투자, ② 디지털·전문 서비스 또는 생산망 관리 분야 범위 확장이나 신설, ③ 본사 사업 또는 우수 센터의 확장이나 설립, ④ 상거래 회사의 설립이나 규모 확장, ⑤ 연구 및 기술 개발, ⑥ 탈탄소화 목표 및 솔루션 구현

330) IBFD, "Singapore Budget 2024: Highlights of Corporate and Individual Tax Proposals," 2024. 2.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2-16_sg_1%23tns_2024-02-16_sg_1, 검색일자: 2024. 3. 5.

331) IBFD, "Budget 2024 In Depth: Minister for Finance Proposes Implementation of Income Inclusion Rule, Domestic Top-Up Tax," 2024. 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2-23_sg_2, 검색일자: 2024. 3. 5.

- ▣ 2025년 1월 1일부터 주거용 부동산의 연간 가액(Annual value) 증가를 반영한 재산세 과세표준 조정³³²⁾
 - ▶ 2년간 싱가포르의 주거용 부동산의 연간 가액 증가를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율 과세표준 범위가 조정될 예정임

〈표 2-III-1〉 부동산 변동가액을 반영한 싱가포르의 재산세 과세표준

(단위: %, 싱가포르달러)

세율	기존	개정(2025년 1월 1일부터)
0	0에서 8,000 미만	0에서 12,000 미만
4	8,000 이상 30,000 미만	12,000 이상 40,000 미만
6	30,000 이상 40,000 미만	40,000 이상 50,000 미만
10	40,000 이상 55,000 미만	50,000 이상 75,000 미만
14	55,000 이상 70,000 미만	75,000 이상 85,000 미만
20	70,000 이상 85,000 미만	85,000 이상 100,000 미만
26	85,000 이상 100,000 미만	100,000 이상 140,000 미만
32	100,000 이상	140,000 이상

자료: IBFD, "Budget 2024 In Depth: Minister of Finance Proposes to Adjust Property Tax Rates Annual Value Bands, Stamp Duty on Immovable Property, CPF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23_sg_5.html, 2023. 2. 23., 검색일자: 2023. 2. 29., 참고로 저자 작성

- ▣ 주거용 부동산 대체 구입자 및 주택 개발업체를 위한 추가 구매자 인지세(Additional Buyer's Stamp Duty, ABSD) 환급 제도 개정 시행³³³⁾
 - ▶ 2024년 2월 16일부터 주택 개발업체가 주거용 부동산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개발 주택을 90% 이상 판매한 경우,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 감면액 회수율이 판매 비율에 따라 1~10%까지 낮아질 예정임

332) IBFD, "Budget 2024 In Depth: Minister of Finance Proposes to Adjust Property Tax Rates Annual Value Bands, Stamp Duty on Immovable Property, CPF Rates," 2024. 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23_sg_5.html, 검색일자: 2024. 3. 5.

333) IBFD, "Budget 2024 In Depth: Minister of Finance Proposes to Adjust Property Tax Rates Annual Value Bands, Stamp Duty on Immovable Property, CPF Rates," 2024. 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23_sg_5.html, 검색일자: 2024. 3. 5.

- 주택 개발업체에 부과되는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 40% 중 35%는 감면 신청 대상으로, 5년 이내 개발된 주택을 모두 판매하지 못할 시 이자와 함께 전액 회수되는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주택 판매를 지원하고자 함
- ▶ 55세 이상 미혼 납세자는 첫 번째 보유 주택을 대체한 두 번째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두 번째 주택 취득에 대한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첫 번째 소유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것
 - 원래 보유하는 주택보다 대체 취득 주택의 가치가 낮아야 함
 - 첫 번째 소유 주택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무서 환급 신청서 제출
- ▶ 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 구입 시 부과되는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는 20%로, 기혼자의 두 번째 주택 대체 구매에 대한 환급 제도를 노령 미혼자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임

5

인도

가 미납 세금 납부 면제 발표

[조세동향 24-02호]

- ▶ 인도의 중앙직접세위원회(CBDT)는 소득세, 재산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납 세금 청구의 면제 또는 소멸에 관한 명령을 발표함³³⁴⁾
- ▶ 2009~2010년 과세연도까지의 미납분은 2만 5,000인도루피³³⁵⁾까지, 2010~2011 과세연도부터 2014~2015 과세연도까지의 미납분은 1만인도루피³³⁶⁾까지 납부 의무가 소멸됨

334) IBFD, "Tax Authority Issues Guidelines for Extinguishment of Outstanding Tax Demands," 2024. 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23_in_1.html, 검색일자: 2024. 2. 29.

335) 2024년 3월 6일 원화 환산 시 약 40만원임

336) 2024년 3월 6일 원화 환산 시 약 1만 6,100원임

- ▶ 해당 명령은 연합 예산 2024의 임시 안에 따른 조치이며 소규모, 미검증, 분쟁의 여지가 있는 과거 미납세액들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 생긴 정직한 납세자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후 연도 결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³³⁷⁾
- ▶ 명령에 따르면 면제된 청구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면제 후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는 부과되지 않음
- ▶ 단, 납세자는 면제분에 대해 공제·환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형사소송 등 소송으로부터 납세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음

나 ▶ 전기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승인

[조세동향 24-03호]

- ▶ 인도 상공부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회사가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의 승인을 발표함³³⁸⁾
- ▶ 해당 관세 인하는 인도를 EV 제조 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승인된 계획의 일환임
- ▶ 발표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일정액의 투자를 실행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현지화를 달성해야 함
- ▶ 해당 관세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 회사는 인도에 최소 5억달러³³⁹⁾를 투자해야 하며, 회사가 인도에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3년 이내에 EV의 상업 생산을 시작해야 함
 - 그리고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제조사는 3년차까지 25%, 5년차까지 50%의 국산화 수준을 달성해야 함

337) [Economictimes.indiatimes.com](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wealth/tax/taxpayers-check-itr-portal-now-pending-tax-demand-up-to-rs-1-lakh-per-individual-waived-by-govt-final/articleshow/107814699.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Taxpayers, check ITR portal NOW: Pending tax demand of up to Rs 1 lakh per individual waived by govt," 2024. 2. 29.,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wealth/tax/taxpayers-check-itr-portal-now-pending-tax-demand-up-to-rs-1-lakh-per-individual-waived-by-govt-final/articleshow/107814699.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검색일자 : 2024. 2. 29.

338) IBFD, "India Approves Lower Import Duty for Certain Electric Vehicl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20_in_1.html, 2024.3.20. 검색일자 : 2024. 3. 27.

339) 2024년 3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6,741억원임

- ▶ 관세 인하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8억달러³⁴⁰⁾를 투자한 경우, 취득원가가 3만 5,000달러³⁴¹⁾ 이상인 수입 차량에 대해 5년간 연간 8,000대를 한도로 1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
- ▶ 즉, 5년간 연간 8,000대 한도로 최대 4만대의 전기차를 수입할 수 있으며, 연간 수입이 8,000대 미만인 경우 한도에 미달하는 수입 수량은 이월됨
- ▶ 기업의 투자 약속은 국내 생산 가치 기준 및 최소 투자 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은행 보증이 필요함

6

인도네시아

가 ▶ 전기자동차 판매에 대한 VAT 인센티브 확대

[조세동향 24-02호]

- ▣ 인도네시아 정부는 4륜 배터리 전기차 및 버스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센티브를 2024년 12월까지 연장함³⁴²⁾
 - ▶ 기존 부가가치세 규정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센티브를 규정하였음
- ▣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은 국내 제조 부품의 비중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5% 면제 또는 10% 면제로 구분됨
 - ▶ 현지에서 제조된 부품이 20~40%인 전기 배터리로 구동하는 버스를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5%를 면제함
 - ▶ 현지에서 제조된 부품이 40% 이상인 4륜 배터리 구동 전기자동차 및 버스를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10%를 면제함

340) 2024년 3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1조 786억원임

341) 2024년 3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4,700만원임

342) IBFD, "Indonesia Extends VAT Incentive on Sale of Electric Vehicles," 2024. 2.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26_id_2.html, 검색일자: 2024. 2. 29.

7

뉴질랜드

가 OECD 이전가격 접근법 미채택 결정

[조세동향 24-02호]

-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3년 2월 23일 온라인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로 물품 반입 시 OECD의 새로운 이전가격 접근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³⁴³⁾³⁴⁴⁾
 - ▶ 특정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접근법을 단순화하는 OECD의 Amount B는 회원국에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 OECD의 이전가격 접근법의 도입으로 현재의 규칙이나 관행이 변경되는 내용은 없어, 자체 규칙에 근거한 이전가격 처리를 유지하고자 함
 - 소규모 외국인 소유 도매 유통업체에 대한 기존 단순화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됨

나 도박세, GST 및 소득세 관련 규정 일부 개정

[조세동향 24-03호]

-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4년 3월 14일, 역외 도박세(Offshore Game Duty)를 도입하고 GST 및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수정 문서 20호인 ‘Annual Rates for 2023-24, Multinational Tax, and Remedial Matters’를 발표함³⁴⁵⁾³⁴⁶⁾

343) Bloomberg Tax, “New Zealand Opts Out of OECD Transfer Pricing Approach,” 2024. 2. 27.,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new-zealand-opts-out-of-oecd-transfer-pricing-approach>, 검색일자: 2024. 2. 28.

344) Inland Revenue(New Zealand), “OECD/G20 Inclusive Framework Two-Pillars Solution,” <https://www.ird.govt.nz/international-tax/business/inclusive-framework-two-pillars-solution>, 검색일자: 2024. 2. 28.

345) New Zealand Legislation, “Amendment Paper No.20 - Taxation (Annual Rates for 2023-24, Multinational Tax, and Remedial Matters) Bill,” <https://www.legislation.govt.nz/sop/government/2024/0020/latest/whole.html#LMS939611>, 검색일자: 2024. 3. 26.

346) IBFD, “New Zealand - Government Proposes Amendments to 2023-24 Tax Bill to Introduce Offshore Gaming Duty and Amend GST and Income Tax Legislation,” 2024. 3.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3-18_nz_1, 검색일자: 2024. 3. 26.

- ▣ 1971년 「도박세법」을 개정하여 역외도박세를 부과하고, GST 플랫폼 경제규정과 관련하여 1985년 GST법에 경과조치를 도입함

 - ▶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스포츠 및 레이싱 베팅과 같은 원격 도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일반적인 GST 원격서비스 규정과 동일하게 12%의 세율로 역외도박세가 적용됨
 - ▶ GST 플랫폼 경제규정 발효일 이전 체결된 단기 체류 또는 방문 숙박 시설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함
 - 2024년 4월 1일 규정 시행 전 GST 가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숙소 예약을 하였으나, 공급이 그 이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해소를 위한 규정임

- ▣ 조세조약 원천 규칙에서 제외된 ‘기술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개념을 ‘기술 및 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확대함

 - ▶ 뉴질랜드와 관련성이 미약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뉴질랜드의 과세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 본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소득 연도에 적용됨

- ▣ 거래 주식을 시장 가치 이하로 처분한 자의 소득을 처분 당시의 주식 시장 가치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함

 - ▶ 주식의 처분 대상자가 특수관계인이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함
 - ▶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세대상 소득, 비과세 소득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함
 - ▶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식 처분부터 적용됨

다 2024년 외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펀드 공시 면제 규정 발표

[조세동향 24-04호]

-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4년 4월 2일, 외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 펀드(Foreign Investment Fund, FIF) 공시 면제 관련 규정을 개정한 SL 2024/17을 발표함³⁴⁷⁾

- ▶ 소득 연도 중 언제라도 외국 기업에 대한 지배권 또는 이자 소득이나 FIF 귀속 이자를 보유한 사람은 해당 지분을 공시해야 함
- ▶ 이때 국제조세규칙 관리상 공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외국 회사에 대한 소득 지분 수준과 그 소득 지분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본 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 ▣ 2024년 FIF 공시 면제 내용은 2023년과 거의 유사하나, 비거주자 또는 전환 거주자와 관련 일부 공시 의무 요건이 삭제됨
 - ▶ 거주자가 회사에 대해 10% 미만의 이자 소득을 보유하며, 그 금액이 5만뉴질랜드달러 이하거나 FIF 귀속 이자가 아닌 경우 공시 의무가 없음
 - ▶ 25인 이상의 주주를 등록한 거주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공시 의무가 면제됨
 - 그 외국 법인이 조약국 내에 법인화되어 있거나 조세 목적상 거주자로 편입되어 있으며, 직접 소득 이자가 10% 미만인 FIF 귀속 이자에 대해 공정배당률 또는 비교가치 계산법을 사용함
 - ▶ 25인 이상의 주주가 등록된 거주 법인일 경우 아래의 요건이 충족될 때 공시가 면제되나, FIF 귀속 이자가 보유 또는 상장된 관할권에 따라 분할된 모든 투자에 대해 연말 뉴질랜드달러 시장 가치를 공개해야 함
 - 국외 포트폴리오 투자 기업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는 직접 소득 이자가 10% 미만인 FIF 귀속 이자에 대해 공정배당률 또는 비교가치 계산법을 사용함
 - ▶ 또한 2024년 공시 면제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전환 거주자가 외국 기업 및 FIF에 보유한 지분을 공시해야 하는 요건이 삭제됨³⁴⁸⁾

라 농업 분야 배출권 거래제 참여 철회

[조세동향 24-06호]

- ▣ 뉴질랜드 농업부 및 기후변화부 장관은 2024년 6월 11일 농업, 동물 가공업자 및 비료 회사들의 배출권 거래제 참여 철회를 발표함³⁴⁹⁾

347) Inland Revenue, "Vol. 36, No. 3: TIB - April 2024,"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tib/volume-36---2024/tib-vol36-no3>, 검색일자: 2024. 4. 22.

348) IBFD, "New Zealand - Inland Revenue Announces International Tax Disclosure Exemptions for 2024," 2024. 4.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4-12_nz_1, 검색일자: 2024. 4. 22.

- ▶ 배출권 거래제 참여 철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법 개정안」을 2024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 비농업 활동과 관련한 동물 가공업 및 비료 회사의 배출량은 계속해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게 됨
- ▶ 1차 산업 부문 및 농장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와 농업 부문 간의 기초 부문 기후 행동 파트너십으로 설립되었던 정부기관인 ‘He Waka Eke Noa’는 6월 11일 해체됨
 - 부과금 부과 기관 및 목축 부문 단체와 직접 협력하여 생물성 메탄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아울러 메탄 백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사육 방식, 메탄 및 아산화질소 억제제와 같은 농업 연구 및 개발 비용에 더 투자하여 농장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생산을 보호할 계획임

마 2024년 예산안 관련 과세 조치 왕실 승인

[조세동향 24-06호]

- ▣ 뉴질랜드 왕실은 2024년 5월 31일,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무부가 제출한 과세 조치 법안을 승인함³⁴⁹⁾
 - ▶ 개인소득세 과세 표준의 5개 소득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소득 상한액이 확대되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됨³⁵¹⁾
 - ▶ 변경된 소득 구간별 금액은 <표 2-III-2>와 같으며, 세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됨

349) Beehive.gov.nz, “Agriculture to come out of the ETS,” 2024. 6. 11., <https://www.beehive.govt.nz/release/agriculture-come-out-ets>, 검색일자: 2024. 6. 17.

350) IBFD, “New Zealand - Parliament Passes Taxation (Budget Measures) Bill on Budget 2024-25,” 2024. 6.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6-03_nz_1, 검색일자: 2024. 6. 17.

351) Budget24, “Tax Relief,” <https://budget.govt.nz/budget/2024/at-a-glance/tax-relief.htm>, 검색일자: 2024. 6. 17.

〈표 2-III-2〉 뉴질랜드 개인소득세 소득 구간 변경안

(단위: 뉴질랜드달러, %)

구분	기존	변경	세율
1	0~14,000 ¹⁾	0~15,600 ²⁾	10.5
2	14,001~48,000 ³⁾	15,601~53,500 ⁴⁾	17.5
3	48,001~70,000 ⁵⁾	53,501~78,100 ⁶⁾	30
4	70,001~180,000 ⁷⁾	78,101~180,000 ⁸⁾	33
5	108,001~	동일	39

- 주: 1)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0원~1,189만원임
 2)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0원~1,325만원임
 3)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89만~4,075만원임
 4)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25만~4,542만원임
 5)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75만~5,943만원임
 6)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542만~6,631만원임
 7)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43만~1억 5,282만원임
 8)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30만~1억 5,282만원임

자료: Budget24, "Tax Relief," <https://budget.govt.nz/budget/2024/at-a-glance/tax-relief.htm>, 검색 일자: 2024. 6. 17.

▣ 2024년 7월 31일부터 개인소득세 관련 공제액 및 공제 기준액 등을 인상함에 따라 공제 혜택의 규모가 확대됨

- ▶ 1인 가구 세액 공제의 소득 상한액을 4만 8,000뉴질랜드달러³⁵²⁾에서 7만뉴질랜드달러³⁵³⁾로 인상함
 - 이에 따라 기존 4만 4,000뉴질랜드달러³⁵⁴⁾ 이상부터 적용되던 1뉴질랜드달러³⁵⁵⁾ 당 13센트³⁵⁶⁾의 감면율 역시 6만 6,000뉴질랜드달러³⁵⁷⁾ 이상부터로 기준액이 인상됨
- ▶ 근로소득공제(In-Work Tax Credit) 기본 요율을 주당 25뉴질랜드달러씩 인상함
- ▶ 최소 가족 세액 공제(Minimum Family Tax Credit) 적용 소득 상한액을 세후 3만 5,316뉴질랜드달러³⁵⁸⁾로 인상함

352)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75만원임
 353)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36만원임
 354)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43만원임
 355)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9원임
 356)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0원임
 357)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03만원임
 358)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98만원임

- ▾ 2024년 7월 1일부터 가족 지원 세액공제(Family Boost Tax Credit)를 도입하여 유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ECE) 비용의 최대 25%를 환급함
 - ▶ 본 공제는 20시간 ECE 요건과 함께 사회 개발의 보육 보조금을 고려한 후 적용됨
 - ▶ 최대 공제 금액은 분기당 975뉴질랜드달러³⁵⁹⁾이며, 연소득 14만뉴질랜드달러³⁶⁰⁾ 이상인 가구는 공제 금액이 감소하고 18만뉴질랜드달러³⁶¹⁾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됨

8 호주

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변경

[조세동향 24-02호]

- ▾ 호주 재무부는 2024년 1월 생활비 경감을 위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변경 조치를 발표함³⁶²⁾
 - ▶ 기존 19%와 32.5% 세율이 적용되던 두 번째 및 세 번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6%와 30%로 인하함
 - ▶ 또한 과세표준 구간 내 최대 금액인 세 번째 구간은 12만 호주달러에서 13만 5,000 호주달러, 네 번째 구간은 18만호주달러에서 19만 호주달러로 인상함
 - 이에 따라 45%의 최고 세율은 19만호주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부터 적용됨

359)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4만원임

360)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886만원임

361)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5,282만원임

362) The Treasury(Australia), "Tax cuts to help with the cost of living," <https://treasury.gov.au/tax-cuts>, 검색일자: 2024. 2. 28.

〈표 2-III-3〉 호주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변경안

(단위: 호주달러, %)

구분	기존(2023~2024)		변경(2024~2025)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	18,200 이하	0	18,200 이하	0
2	18,201~45,000	19	18,201~45,000	16
3	45,001~120,000	32.5	45,001~135,000	30
4	120,001~180,000	37	135,001~190,000	37
5	180,000 초과	45	190,000 초과	45

자료: The Treasury(Australia), "Tax cuts to help with the cost of living," <https://treasury.gov.au/tax-cuts>, 검색일자: 2024. 2. 28.

▶ 본 조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나 복리후생세 행정 관련 변경사항 발표

[조세동향 24-05호]

▣ 호주 국세청은 2024년 3월 20일, 온라인 성명을 통해 복리후생세(Fringe Benefit Tax)와 관련한 행정 변경 사항을 발표함³⁶³⁾³⁶⁴⁾

▶ 복리후생세와 관련하여 여행일지나 직원 진술서와 같은 증빙이 고용주에게 요구될 때, 국세청장이 입법 문서를 통해 대체 문서 또는 기록의 종류를 명시하는 경우 기존 기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

-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록을 함께 검토할 때 해당 기록들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담고 있다면 대체 기록 요건을 충족함
- 전자 또는 서면 양식으로 보관된 고용계약서, 급여기록, 직무설명, 고용주와 직원 간 서신(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호텔 영수증, 회의 프로그램 및 개인의 여행 영수증 등 다양한 유형의 문서가 포함됨³⁶⁵⁾)

363) Australian Taxation Office, "Changes to fringe benefits tax record keeping(updated 2024. 3. 20.)," <https://www.ato.gov.au/about-ato/new-legislation/in-detail/businesses/proposed-changes-to-fringe-benefits-tax-record-keeping>, 검색일자: 2024. 3. 26.

364) Australian Taxation Office, Whats new in FBT, "Upcoming Law Changes: Changes to FBT record keeping," (updated 2024. 3. 20.), <https://www.ato.gov.au/forms-and-instructions/fringe-benefits-tax-return-2024-instructions/whats-new-in-fbt>, 검색일자: 2024. 3. 26.

- ▶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주가 신고 시 대체 기록을 사용하더라도 「복리 후생세법」에 따라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는 변경되지 않음

다 2024/25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4-05호]

- ▣ 호주 재무부는 2024년 5월 14일, 2024/25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함³⁶⁶⁾
 - ▶ 각 공고의 효력 발생일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시행 법률에 대한 왕실 동의일 이후 첫 번째 소득 연도부터임³⁶⁷⁾
- ▣ 법인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즉시 자산 공제(instant asset write-off)를 연장하고, 콘텐츠 관련 공제 요건을 완화함
 - ▶ 연간 총매출액이 1,000만호주달러³⁶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2만호주달러³⁶⁹⁾ 미만의 적격 사업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즉시 자산 공제 혜택을 2025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함
 - 즉시 공제가 어려운 2만호주달러 이상의 자산은 중소기업 간이감가상각액에 포함되어 첫 번째 소득연도에는 15%, 그 이후에는 매년 30%의 수준으로 감가상각이 허용됨
 - ▶ 콘텐츠 제작자의 세금 환급(tax offset) 시 적용되던 콘텐츠 재생시간 요건 및 적격 생산 지출의 20% 상한 요건을 모두 폐지함

365) Australian Taxation Office, “Fringe benefits tax alternative record keeping - Types of alternative records,” (updated 2024. 3. 25.),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hiring-and-paying-your-workers/fringe-benefits-tax/fbt-registration-lodgment-payment-and-reporting/record-keeping-for-fbt/fringe-benefits-tax-alternative-record-keeping>, 검색일자: 2024. 3. 26.

366) Australia Taxation Office, “Budget 2024-25: Budget Measures,” https://budget.gov.au/content/bp2/download/bp2_2024-25.pdf, 검색일자: 2024. 5. 21.

367) IBFD, “Australia - Federal Budget 2024/25: Government to Continue Small Business Instant Asset Write-Offs, Proceed with Individual Tax Cuts, Broaden Capital Gains Tax on Foreign Residents,” 2024. 5.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5-14_a_u_1, 검색일자: 2024. 5. 24.

368)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0억원임

369)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11만원임

- ▣ 2024년 7월 1월 입법이 완료 예정인 개인 소득세 관련 감면 조치를 시행함
 - ▶ 메디케어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저세율을 적용받는 독신, 가족, 노인 및 연금 수급자의 소득 기준 상한액을 <표 2-III-4>와 같이 인상함

<표 2-III-4> 메디케어 부담금 완화 대상 소득 기준액 변경

(단위: 호주달러, %)

구분		2023/24	2024/25
일반	독신	24,276 ¹⁾	26,000 ²⁾
	가족	40,939 ³⁾	43,846 ⁴⁾
노인/ 연금수급자	독신	38,365 ⁵⁾	41,089 ⁶⁾
	가족	53,406 ⁷⁾	57,198 ⁸⁾
부양자녀		3,760 ⁹⁾	4,027 ¹⁰⁾

- 주: 1)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98만원임
 2)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54만원임
 3)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07만원임
 4)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70만원임
 5)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74만원임
 6)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21만원임
 7)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836만원임
 8)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179만원임
 9)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1만원임
 10)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5만원임

자료: Australia Taxation Office, "Budget 2024-25: Budget Measures," https://budget.gov.au/content/bp2/download/bp2_2024-25.pdf, p.12, 검색일자: 2024. 5. 21. 내용 저자 정리

- ▶ 세율 인하 및 과세 표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개인소득세 부담을 완화함
 - 19%의 세율이 적용되던 구간은 16%로, 32.5%의 세율이 적용되던 구간은 30%로 세율을 인하함
 - 37%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상한액은 12만호주달러³⁷⁰⁾에서 13만 5,000호주달러³⁷¹⁾로, 45% 세율이 적용되는 상한액은 18만호주달러³⁷²⁾에서 19만호주달러³⁷³⁾로 인상함

370)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866만원임
 371)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222만원임
 372)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296만원임
 373)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201만원임

- ▣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로열티를 저평가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마련함
 - ▶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유형을 확대함
 - 또한 2,000만호주달러³⁷⁴⁾를 초과하는 주식 및 기타 이익을 처분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거래 전 호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요구됨
 - ▶ 2026년 7월 1일부터 전 세계 매출액이 연간 10억호주달러³⁷⁵⁾ 이상인 납세자가 로열티 지분을 잘못 분류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페널티로 해당 납세자에 대해 로열티 원천징수세를 적용함

374)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1억원임

375)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053억원임

IV 국제기구

1 OECD

가 필라1 Amount A 관련 성명서 발표 및 필라2 행정지침 발간

[조세동향 24-01호]

- ▣ OECD는 2023년 12월 18일, 필라1 Amount A의 다자조약 최종안 기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필라2와 관련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발간함³⁷⁶⁾
 - ▶ 필라1 Amount A와 관련하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4년 6월 말까지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3월 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해결책을 도모하고 다자조약의 최종안을 마무리할 것을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함³⁷⁷⁾
 - 디지털서비스세 및 기타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필라1 Amount A와 관련한 이견을 해결하고자 함
 - ▶ 필라2와 관련하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세 번째 행정지침을 발간하였고,³⁷⁸⁾ 행정지침의 내용은 2024년에 발간될 개정 주석서에 반영될 예정임³⁷⁹⁾
 - 행정지침은 경과 CbCR 세이프하버(Transitional Country-by-Country Reporting

376) EY, “OECD/G20 Inclusive Framework releases additional Administrative Guidance on Pillar Two GloBE Rules and update on Pillar One Amount A timeline,” 2023. 12. 22.,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g20-inclusive-framework-releases-additional-administrative-0, 검색일자: 2024. 1. 24.

377) OECD, “Update to Pillar One timeline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https://www.oecd.org/tax/beps/update-pillar-one-timeline-beps-inclusive-framework-december-2023.pdf>, 검색일자: 2024. 1. 24.

378) 필라2 행정지침은 2023년 2월 및 7월에 발간된 바 있음

379)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December 2023,” <https://www.oecd.org/tax/beps/administrative-guidance-global-anti-base-erosion-rules-pillar-two-december-2023.pdf>, 검색일자: 2024. 1. 24.

Safe Harbour), GloBE 규칙의 적용 및 혼합 피지배외국법인(CFC) 조세의 배분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나 글로벌최저한세 및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 보고서 발간

[조세동향 24-01호]

- ▣ OECD는 2024년 1월 9일, 글로벌최저한세 및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관련한 보고서(working paper)를 발간함³⁸⁰⁾
 - ▶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통합 데이터를 기초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에 글로벌최저한세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보고서는 글로벌최저한세가 저율과세되는 이익의 약 80%를 경감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짓고, 이는 저율과세되는 이익의 비율이 전 세계 이익의 36%에서 약 7%로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함
 - ▶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는 네 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이익 이전(profit shifting)에 대한 유인을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됨
 -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이 이익 이전을 줄이고 과세를 강화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저율과세되는 이익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 법인세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됨
 - 투자 및 다국적기업 그룹의 활동의 배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할국 간 세율 차이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다 필라1 Amount B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4-02호]

- ▣ OECD는 2024년 2월 19일, 필라1 Amount B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TPG)에 반영함³⁸¹⁾

380) OECD, "The Global Minimum Tax and the taxation of MNE profit," <https://www.oecd.org/publications/the-global-minimum-tax-and-the-taxation-of-mne-profit-9a815d6b-en.htm>, 검색일자: 2024. 1. 24.

- ▶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필라1 Amount B에 대해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³⁸²⁾
 - 필라1 Amount B 보고서는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Baseline Market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 접근법에 대한 내용임
 - 각 관할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적격 기준 유통업체에 대한 Amount B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³⁸³⁾
- ▶ 보고서의 내용은 OECD 이전가격지침 제4장의 부록에 반영됨

라 BEPS Action 6 제6차 상호검토 결과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4-03호]

- ▣ OECD는 2024년 3월 20일, BEPS Action 6의 조약혜택 남용(treaty shopping) 방지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이행과 관련하여 제6차 상호검토(peer review) 결과보고서를 발표함³⁸⁴⁾
 - ▶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회원국은 조세조약 남

381)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Release of Amount B report to simplify transfer pricing rules and conforming changes to the Commentary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2024. 2. 19., https://www.oecd.org/tax/beps/release-of-report-on-amount-b-relating-to-the-simplification-of-transfer-pricing-rules-and-conforming-changes-to-the-commentary-of-the-oecd-model-tax-convention.htm?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2-02-24&utm_content=Read%20mor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4. 2. 27.

382) OECD, "Pillar One - Amount B," <https://www.oecd.org/tax/beps/pillar-one-amount-b-21ea168b-en.htm>, 검색일자: 2024. 2. 29.

383) 필라1 Amount B의 시행은, 2025년 1월 이후 국가별로 도입 여부를 선택하는 1단계, 필라1 Amount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로 구분되며, 발표된 합의안은 1단계의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임(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보도참고)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이전가격지침 반영," 2024. 2. 2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6180#pressRelease>, 검색일자: 2024. 2. 29.)

384) OECD, "Steady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BEPS Action 6 minimum standard: latest peer review results," https://www.oecd.org/tax/beps/steady-progress-in-the-implementation-of-the-beps-action-6-minimum-standard-latest-peer-review-results.htm?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1-03-24&utm_content=Read%20mor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4. 3. 26.

용 방지와 관련한 Action 6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평가한 상호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함

-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이 체결한 약 1,360개의 협정은 최소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는 2022년과 비교하여 약 30%가 증가한 것임

▶ BEPS Action 6의 최소기준 이행 평가 기준을 일부 수정한 '수정 상호검토 문서'도 함께 발표함³⁸⁵⁾

마 필라2 통합 주석서 및 사례」 발간

[조세동향 24-05호]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4년 4월 25일, 지난 2022년 모델 규정과 함께 발간된 주석서 및 사례에, 이후 새롭게 합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필라2 통합 주석서(Consolidated Commentary) 및 사례(Examples)」를 발간함

▶ 통합 주석서의 각 내용에 합의된 행정지침(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부록에 경과 CbCR(Country-by-Country Reporting) 세이프하버, 영구적 세이프하버,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세이프하버, 경과 UTPR(U-ndertaxed Payments Rule) 세이프하버를 추가함³⁸⁶⁾

▶ 통합 사례는 모델 규정의 각 장별로 필요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추가함³⁸⁷⁾

385) OECD, "BEPS Action 6 on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https://www.oecd.org/tax/beps/beps-action-6-peer-review-documents-2024.pdf>, 검색일자: 2024. 3. 26.

386)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Consolidated Commentary to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2023)," <https://www.oecd.org/tax/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consolidated-commentary-to-the-global-anti-base-erosion-model-b849f926-en.htm>, 검색일자: 2024. 5. 3.

387)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Examples," <https://www.oecd.org/tax/beps/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globe-rules-pillar-two-examples.pdf>, 검색일자: 2024. 5. 3.

바 「2024 조세협력 진행보고서」 발간

[조세동향 24-06호]

- ▣ OECD는 2024년 5월 24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2024 조세협력 진행보고서(2024 Progress Report on Tax Co-operation)」를 발간함³⁸⁸⁾
 - ▶ 보고서는 법인세와 관련한 국제조세협력으로서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칙, 법인세 이외의 문제로 과세당국의 정보 활용, 나아가 개발도상국과 관련한 국제조세협력 쟁점을 다룸³⁸⁹⁾
 - 제1장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각 과세당국의 국제조세협력을 지원하고자 「2023 조세협력 진행보고서」가 제안하였던 7가지 원칙³⁹⁰⁾이 GloBE 규칙의 행정절차, 분쟁해결, 이중조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룸
 - 제2장은 법인세 이외의 쟁점으로 과세당국의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수익적 소유권, 실시간 정보 흐름을 다룸
 - 제3장은 개발도상국의 글로벌최저한세 쟁점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디지털화 문제로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STTR), 과세당국의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룸
 - ▶ G7 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서 G7은 국제조세협력과 관련하여 OECD 진행보고서 발간을 환영하며 아래의 입장을 표명함³⁹¹⁾
 - 두 개의 필라 이행이 최우선 과제이며,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에 2024년 6월 30일까지 필라1 다자간 협약에 서명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함

388) IBFD, “OECD Releases 2024 Progress Report as G7 Leaders Discuss End-June Deadline for Pillar One Multilateral Convention,” 2024. 5.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28_o2_2.html, 검색일자: 2024. 6. 4.

389) OECD, “2024 Progress Report on Tax Co-operation for the 21st Century,” <https://www.oecd.org/tax/2024-progress-report-on-tax-co-operation-for-the-21st-century-24adfedfen.htm>, 검색일자: 2024. 6. 4.

390) 7가지 원칙은 ① 원스톱 신고, ② 완전한 디지털 소통, ③ 납세자 참여를 통한 중앙 프로젝트 관리, ④ 공통 및 통합된 위험 평가, ⑤ 식별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 조사 및 조치, ⑥ 조기에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⑦ 이중 의무 배제임

391) G7 Italia, “G7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Communiqué,” <https://www.g7italy.it/wp-content/uploads/Stresa-Communique-25-May-2024.pdf>, 검색일자: 2024. 6. 4.

- 2027년 또는 늦어도 2028년까지 첫 정보 교환을 목표로 하여 관련 관할국의 가상 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함
-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조세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 UN 임시위원회의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 초안」을 위한 논의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조세체계를 지원해야 하며 합의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함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4년 제1호

2024년 7월 29일 인쇄

2024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현대아트컴

ISSN 3058-205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 044-414-2114(代), www.kipf.re.kr



9 773058 205000
ISSN 3058-2059